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집필진

- 이 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 김연주 변호사(난민인권센터)
- 김지림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신고운 변호사(프로보노지원센터)

발간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또한, 회원들이 보다 손쉽게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4월 프로보노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프로보노 포럼,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 봉사활동 수행,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및 각 분야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난민의 인권은 국제인권의 영역에서는 전통적인 주제로서, '어떠한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이며, 난민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즉, 난민인권에 관한 고민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법제도가 마련되었고, 제주도 난민사태와 같은 다수의 난민인정신청자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면서, '가짜 난민'이라는 표현 등 난민에 대한 혐오가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회 프로보노지원센터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난민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법률지원에 관하여 쉽게 펼쳐볼 수 있는 문턱이 낮은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4월부터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에 착수 하였습니다.

난민사건은 그 사건의 특성상 난민인정 신청의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소송과 같이 법원을 통한 절차 이외에도 난민의 정착에 관한 다방면의 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TF팀은 난민사건의 일선에서 실무를 진행해왔던 5인의 변호사가 주축이 되었으며, 수차례의 회의와 집필, 수정과정을 거쳐 2018년 10월 본 매뉴얼이 완성되었습니다.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은 난민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겪게 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신청 절차와 난민의 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정보까지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및 관련 공익단체에게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의 제작을 위해 지난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력해주신 TF팀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본 매뉴얼을 통하여 난민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많은 회원 및 관련 단체 활동가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서울지방법변호사회는 회원 여러분의 공익활동이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변호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과 함께 공감하며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서울지방법변호사회 회장 **이찬희**

CONTENTS

제1장 난민협약과 난민법	1
1. 난민협약과 난민법	3
가. 난민협약의 개관	3
나. 한국 난민제도의 시작과 난민법	4
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의 관계	5
2. 난민요건	6
가.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국으로 돌아가면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돌아갈 수가 없을 것	8
나. 위해는 박해에 해당할 것	10
다. 박해는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사유와 관련이 있을 것	17
라. 박해에 대한 두려움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것	23
 제2장 신청에 관한 조력 I - 1차 신청단계	 31
1. 난민인정 신청 5조(일반)	33
가. 난민인정 신청	33
나. 난민인정 심사	40
다. 면접조사	42
라. 난민인정 심사 결정	48
2. 난민인정 신청 6조(공항)	53
가. 개관	53
나. 구조적 문제점	54
다. 공항 난민인정 신청 절차	55
라. 공항 난민인정신청자의 처우	58
마. 공항 난민신청자 조력 방법	61

제3장 신청에 관한 조력Ⅱ - 이의신청단계 ----- 63

1. 개관 -----	65
2. 구조적 문제점 -----	65
3. 이의신청 심의 절차 -----	66
가. 이의신청서 작성 -----	66
나. 난민위원회의 비공개 심의 -----	67
다. 법무부장관의 결정 및 통지 -----	68
라. 불복방법 -----	68
4. 이의신청 중인 난민인정신청자의 처우 -----	68
5. 이의신청단계 조력방법 -----	69
가. 의견서 및 입증자료 제출, 난민신청자 또는 전문가의 진술 -----	69
나. 불확정한 위원회 개최 시기를 고려한 신속한 제출의 필요성 -----	70

제4장 소송에 관한 조력 - 난민소송 ----- 71

1. 본안전 요건 -----	73
가. 요건 -----	73
나. 주요쟁점(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	73
2. 본안 요건(난민요건 네 가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 -----	75
가. 절차적 위법 사유(주요쟁점: 난민면접조사절차) -----	75
나. 실체적 위법 사유 -----	77
3. 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 및 관련 문제 -----	94
4. 입증자료 -----	95
가. 당사자신문(또는 원고진술서) -----	95
나. 증인신문(또는 제3자진술서) -----	95
다. 기타 서증 -----	96
라. 사실조회 신청 -----	97

5. 통역	99
6. 장소	99

제5장 체류, 퇴거, 구금에 관한 조력 101

1. 난민신청자의 체류	103
가. 난민신청자의 체류	103
나.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	104
2.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와 구금	108
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108
나. 난민신청자에 대한 장기보호(구금)의 문제	110
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구금)명령 취소소송 사례	111
3.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은 난민신청자의 조력	114
가. 면회	114
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16
다.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117
라. 보호일시해제 청구	119
마. 처우에 대한 청원 및 진정 등	121

제6장 비호신청자(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의 처우에 관한 조력 123

1. 도입	125
2. 난민의 체류 등	125
가. 체류자격	125
나. 각종 증명서	126
다. 가족결합	128
라. 생계비	129

마.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	130
바. 귀화 -----	131
3. 난민의 노동 -----	132
가. 취업 범위 -----	132
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및 사전 고용계약 요부 -----	132
4. 난민의 사회보장 -----	134
가. 상호보증의 예외 -----	134
나. 사회 보험 -----	134
다. 공공부조 -----	137
라. 사회복지서비스 -----	139
5. 난민의 교육 -----	141

별첨 ----- 143

1. 난민신청 의견서 -----	145
2.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 의견서 -----	154
3.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장 -----	160
4.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준비서면 -----	167
5. 난민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장 -----	177
6. 보호일시해제청구 의견서 -----	185

제1장

난민협약과 난민법

제1장

난민협약과 난민법

1 난민협약과 난민법

가. 난민협약의 개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른바 ‘난민협약(The 1951 Refugee Convention)’, 이하 ‘『난민협약』’이라 합니다]은 1951. 7. 28.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54. 4. 22. 발효된 국제인권협약입니다.¹⁾ 『난민협약』의 전문은 “체약국은, 국제연합헌장과 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세계인권선언이 인간은 차별 없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난민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난민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의 가능한 한 광범위한 행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였음을 고려하여 (중략)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난민협약』은 국제사회에서 ‘누가 보호되어야 할 난민인지’에 관한 난민의 정의(Definition)를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난민의 법적 지위와 처우에 관련된 문제에서 국가의 의무를 규율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난민신청자, 난민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합니다. 위 난민의 정의(Definition)를 규정한 『난민협약』 제1조 A. (2)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이하 2.에서 설명할 ‘난민요건’이 도출되며, 이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난민협약』이 규정하는 난민입니다.

1) 한편, 『난민협약』은 1951년 이전에 발생한 난민에게만 적용되고 있어서,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1967년 1월 31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난민협약』의 시간제한을 철폐하였습니다.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규정한 『난민협약』 외에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소위 ICCP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이라 합니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소위 CAT;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하 ‘『고문방지협약』’이라 합니다) 역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관습법으로서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이미 강행규범적 지위를 확고히 인정받고 있어, 이 같은 규범들은 모두 난민보호의 국제적 규범체계를 이루고, 난민보호의 국제법적 근거가 됩니다.²⁾

나. 한국 난민제도의 시작과 난민법

(1) 한국 난민제도의 개시(1994년)

한국은 1992. 12. 3. 가장 대표적인 국제인권협약인 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 『난민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가입하여 난민을 보호할 의무를 질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하였습니다. 한국은 1993. 12. 10. 『출입국관리법』, 1994. 6. 3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난민인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난민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의 『입관법』에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여 운용한 예를 본뜬 것입니다.

(2) 난민법의 제정 및 시행(2013년)

여러 시민단체들의 오랜 준비와 활동을 바탕으로 국회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난민법』은 국제법인 『난민협약』의 국내이행법률로서 제정된 법으로서, 2012. 12. 10. 제정되어 2

2)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다른 국제인권규범도 모두 ‘국민’이 아닌 ‘사람’을 주체로 보고 있어 모두 난민보호의 국제법적 근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난민보호에 관한 지역국제규범들도 존재합니다. 지역국제규범에는 아프리카통일기구(OAU) 협약(1969), 난민에 대한 카타헤나 선언(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1984) 등이 있습니다.

013.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서 ‘국경관리’, ‘체류관리’와 같은 법익에 초점을 두었던 종전의 『출입국관리법』 내에 소수의 난민인정절차가 삽입되었던 것과 달리, 난민인정절차 및 처우에 관하여 아시아에서 최초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한국의 난민제도는 대내외적으로 큰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의 관계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헌법 제6조3)’인 『난민협약』(그리고 자유권규약, 『고문방지협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국제관습법인 강제송환금지원칙)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난민협약』은 그 자체로 법률로서의 효력이 있지만, 『난민협약』을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협약에 규정된 내용 및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한국의 법체제 안에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난민법』은 종전의 『출입국관리법』에 일부 조항을 삽입하였던 것과 달리, 『난민협약』을 더욱 잘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이행 법률의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난민법』은 『난민협약』의 본질적 내용(예컨대 ‘난민요건’)을 수정할 수 없고, 절차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국내법 체계에 부합하게 구체화할 뿐이며, 이에 『난민법』을 개정하게 되더라도 『난민협약』의 난민보호의 본질적 내용을 후퇴시키는 형태로 개정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⁴⁾

3)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고려할 경우, 체약국은 신법으로도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위 협약 제26조, 제27조).

2 난민요건

난민요건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으로 국적국에 돌아가면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돌아갈 수 없을 것	위해는 박해에 해당할 것		『난민협약』상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두려움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것
	심각한 인권 침해	국적국의 보호부재	
		‘박해’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민족,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것	

난민신청자가 난민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상담, 신청, 소송, 처우와 관련된 옹호 등 난민지원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난민요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난민요건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입니다. 물론 『난민협약』의 난민 정의와 『난민법』의 난민요건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난민협약』과 『난민법』의 난민 정의를 종합할 때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누적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국으로 돌아가면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돌아갈 수가 없을 것, 둘째 피해는 박해에 해당할 것, 셋째 박해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민족,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것, 넷째 『난민협약』상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두려움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래에서는 위 네 가지 요건을 해석론의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판례가 현실적으로 위 난민요건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 소송에 관한 조력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Q 『난민협약』상 난민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A 『난민협약』은 조약이기 때문에 한국이 비준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해석을 해야 합니다. 위 비엔나 협약 제31조 및 제32조는 조약을 해석할 때 문리적인 해석, 문맥적인 해석, 그리고 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난민협약』의 목적과 취지인 ‘미래지향적이고 대체적(代替的) 인권보호’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위 비엔나 협약 제33조는 조약의 정본이 두 개 이상

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다수의 정보는 모두 동일한 권위가 있으며 조약의 용어는 각 정보상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추정하되, 그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의미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난민요건을 해석할 때 영어본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인 불어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난민의 정의를 설명하는 중요한 참고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의 이해, 2014.

정인섭·황필규,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경인문화사, 2011.

황필규, 난민협약상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0.

김종철, 난민관련 한국 법규정과 판례의 비판적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15.

이일, 난민인정요건과 최근판례의 동향, 공항만실태, 2017 난민법률지원교육, 대한변호사협회, 2017.

유엔난민기구,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2014.

James C. Hathaway and Michelle Poster, The Law of Refugee Status, Cambridge, 2014.

Guy S. Goodwin-Gill and Jane McAdam,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Law, Oxford, 2007.

Andreas Zimmermann,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its 1967 Protocol: A Commentary, Oxford, 2011.

가.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국으로 돌아가면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돌아갈 수가 없을 것

(1)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일 것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국적국을 벗어나 외국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난민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국적국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난민이 아니라 국내 실항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요건은 실제로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2) 국적국으로 돌아가면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돌아갈 수가 없을 것

어떤 외국인이 난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이 사람이 국적국에 돌아가면 위해를 당할 두려움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가”라는 점입니다. 보통 난민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과거에 난(위해)을 당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난민은 ‘국적국에 돌아가면 난(위해)을 당할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누가 난민인지 파악을 할 때 미래지향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국적국에 돌아가면 위해를 당할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에 위해를 받아 국적국을 떠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난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위해를 받아 국적국을 떠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소위 ‘현지 체재 중 난민’도 『난민협약』이나 『난민법』상의 난민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지 체재 중 난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신과 무관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와 자신의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객관적 사정변경의 예는 외국에 있는 동안 정적에 의해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내전이 발생하여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 될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주관적 사정변경의 예는 개종을 인정하지 않는 국적국 출신자가 외국에 있는 동안 개종하거나, 피난국에 체류하면서 정치의식이 생겨 반정부활동을 하게 되어 국적국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객관적 사정변경으로 인한 현지 체재 중 난민이 『난민협약』에서 인정하는 난민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주관적 사정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선의를 요구하거나 국제국에서 가졌던 확산 내지 경향의 연장선일 것을 요구하거나, 신빙성이나 박해의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관적 사정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정변경과 다르게 다를 것은 아닙니다. 주관적 사정변경에 의한 현지 체재 중 난민이라고 하더라도 돌아가면 위해를 당하는 것은 객관적 사정변경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며, 『난민협약』 제1조 F5)는 그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는 제한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어 배제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보다 덜 심각한 행위인 주관적 사정변경을 일으키는 행위를 가지고는 난민인정에서 배제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보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인권보호라는 『난민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Q 과거에 위해를 받은 사실이 미래에 위해를 받을 것이라는 판단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요?

A 돌아가면 위해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일을 예측하는 것이므로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위와 같은 판단을 할 때 잠재적인 박해자가 난민신청자를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체재 중 난민이 아니라면 난민신청자가 과거에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를 가장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난민 정의에서 박해는 미래지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박해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과거에 박해 받은 경험이 없어도 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과거에 받은 박해가 미래에 받을 박해를 판단할 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에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 미래에도 박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박해를 받은 사실은 미래에 받을 박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박해를 받은 사람이 미래에도 박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난민신청자가 아

5) 난민협약 제1조

- F.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간주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a) 평화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규정하는 국제문서에 정하여진 그러한 범죄를 범한 자.
 - (b)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
 - (c)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행한 자.

나라 그러한 판단을 하는 피난국 정부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Q 다중국적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난민협약』의 취지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국제사회에서 보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해의 위험이 있는 국적국 외의 다른 국적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난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여러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국적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가 국민에게 통상 부여하는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난민으로 인정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나. 위해는 박해에 해당할 것

돌아가면 국적국에서 받게 될 위해는 박해에 해당해야 하는데, 위해가 박해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위해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둘째는 위해가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비국가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1) 위해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할 것

박해가 이렇게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할 때 그 인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그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을 때 심각하다고 봐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① 인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되, ② 심각한 침해인지 여부는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내지 안전에 대한 침해와 같이 전형적인 박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는 권리의 제한 가능성과 제한의 차별성, 비례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③ 사소한

침해들이 누적되어 심각한 침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면서, ④ 개인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려해야 할 인권의 범위는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함

심각한 인권침해, 즉 박해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살펴봐야 하는 인권의 범위는 『난민협약』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한 인권 전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난민신청자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우선 『세계인권선언』의 어느 규정과 관련이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생명과 신체의 자유 내지 안전에 대한 권리(『세계인권선언』 제3조) 그리고 위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권리(제5조, 제9조) 등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는 박해로 보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면 사형에 처할 위험이나 명예살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자의적으로 구금을 당하는 경우, 여성 할례나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강제 낙태나 강제 불임수술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는 경우 등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신체와 안전에 대한 권리 외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인권들이 침해된 경우에도 심각한 인권침해로서 박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 결혼이나 근대적 형태의 노예제라고 할 수 있는 성착취 내지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의 경우에는 노예상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세계인권선언』 제4조)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법적인 근거 없이 혹은 법에 근거가 있지만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적법 절차에 관한 권리(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박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거나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법률 때문에 국적국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성적인 정체성을 숨겨야 하는 경우에는 사생활의 자유(제12조)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박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미안마나 북한과 같이 자기 나라를 떠난 것을 이유로 기소를 당하는 경우나 자기 나라로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국이나 출국의 자유(제13조)에 대한 침해로 박해를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적을 박탈하는 것은 국적에 관한 권리(제15조) 침해로 박해가 될 수 있습니다. 중

교 내지 인종 간의 결혼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혼인에 관한 권리(제16조) 침해로 박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교회만 다니도록 하거나,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에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종교 행사의 자유를 금지한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제18조)에 대한 침해로서 박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할 권리를 형해화하여 생계를 유지할 모든 수단을 박탈한 경우 또는 통제경제 시스템이 작동되는 국가에서 고용될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일할 권리(제23조) 자체에 대한 침해로 박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계를 완전히 박탈한 경우에는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제25조) 침해로 박해가 될 수 있고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제26조)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체적 위하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과 무관하게 초등교육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 침해로 박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집단으로부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자신의 문화를 개발하고 그 문화에 따라 살 권리(제27조)를 부인당하는 경우 문화적인 권리(제27조) 침해로 박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심각한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석적, 종합적, 개별적 접근이 모두 필요함

1) 인권침해 정도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

관련된 인권이 제한이 가능한 권리가거나 침해가 정당화되는 상황일 경우, 그러한 권리 제한과 침해가 차별적인지,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필요성이나 비례성의 원칙에 따르고 있는지 분석적으로 살펴본 후에 평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의적 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세계인권선언』 제9조)는 비상상황에서는 제한이 가능하지만 그 때에도 그러한 제한이 차별적이거나 혹은 비례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박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법에 근거가 있는 기소와 처벌이지만 비례적이지 않고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법 절차에 관한 권리(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침해로 박해가 될 수 있습니다. 출국과 관련한 법을 어긴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제재가 차별적이거나 비례성을 갖지 못한 경우에는 출국의 자유(제13조) 침해로 박해가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제19조)는 비상상황에서 제한이 가능하지만, 그 역시 차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2) 누적적인 효과를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

개별적으로는 심각한 침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누적적으로 혹은 다른 권리에 대한 침해와 연결되어 심각한 침해가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할 권리(『세계인권선언』 제23조)와 관련해서 보통 일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권리 침해와 중첩되는 경우, 누적적인 평가를 통하여 박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하는 권리는 생존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인간 존엄성(제1조)의 불가결한 부분이므로,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어떤 일을 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비하하기 위해 일할 권리를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박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받을 권리(제26조)를 부인당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제25조) 누적적인 평가를 했을 때 심각한 침해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박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비폭력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표현(제19조)하는 사람에 대해 심각한 형벌을 부과(제11조 등)하는 것은 박해가 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의 취약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접근

마지막으로 박해는 순전히 객관적으로만 접근할 수 없고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엔난민기구 국제 보호에 관한 지침 제8호 제15항에서도 난민아동의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직면할 수 있는 위해가 성인과 비슷하거나 동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이 그러한 위해를 경험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성인에게는 박해의 수준에 못 미치는 행동이나 위협이더라도, 아동의 경우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가 될 수 있다. 미성숙, 취약성, 발달되지 않은 대응기제, 의존성 뿐만 아니라 발달 단계의 편차와 억제된 능력은 아동이 위해를 경험하고 두려워하는 모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볼 때 건강한 성인에게는 박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난민신청자 개인의 사회심리적인 취약성을 고려할 때 개별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심각한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정도의 영향이지만 침해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박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위해의 경우 국가의 보호가 부재할 것

(가) 국적국의 보호 의사 또는 능력의 부재

국가가 위해의 주체일 경우에는 국적국의 보호 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박해가 됩니다. 문제는 비국가행위자가 위해를 하는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비국가행위자도 박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인권 보호라는 『난민협약』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난민 정의에서 말하는 박해의 경우 비국가행위자도 박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난민협약』의 목적과 취지가 대체적(代替的)인 보호이므로 비국가행위자의 위해의 경우에는 국적국이 보호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비국가행위자의 위해가 박해가 되기 위해서는 국적국이 그러한 위해로부터 해당인을 보호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나) 대안적 국내 피신의 부재

국가보호의 부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소위 대안적(代案的) 국내 피신 내지 대안적 국내 보호의 문제입니다. 국적국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박해를 받을 실제적인 위험이 있으나 국적국 내 다른 곳에서는 박해로부터 안전하다면, 즉 대안적인 국내 피신이 가능하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대체적인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조건에서 대안적인 국내 피신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논의의 전제는 박해가 지역적으로 일부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박해가 국적국 전체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국내 피신을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국적국의 대안적인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난민신청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대안적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원래의 지역에서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박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박해로부터도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대안적 지역은 어떤 박해로부터도 보호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대안적 지역에서 박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아야 하고 일정한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세

가지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접근성과 관련하여, 물리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합법적으로 대안적 지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접근과 관련해서는 그 주변에 물리적 충돌 상황이라든지, 지뢰가 있다든지, 박해자가 신분증을 검사한다든지, 원래 박해를 당했던 지역을 지나가야 하는 등 난민신청자가 그 지역까지 가기 위해서 물리적인 위험이나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 지역은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차와 3차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일부 지역에서 박해를 받는 쿠르드인들이 이라크 북부로 가기 위해서는 터키 정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터키 정부가 실제로 그 발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호주연방법원은 난민신청자가 그 대안적 지역에 법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인 박해로부터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원래의 박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박해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박해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을 해야 합니다. 박해의 주체가 비국가행위자인 경우에는 국가가 대안적인 지역에서는 보호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서 난민신청자가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안적인 지역에서는 원래의 박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난민협약』상 새로운 박해나 기타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아래의 세 번째 조건과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대안적인 장소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박해가 예상되는 곳을 대안적인 장소로 판단하여 난민신청자를 송환하는 것은 『난민협약』 제33조 1 등이 규정한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직접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안적인 지역이라고 주장되는 곳에서 박해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즉, 『난민협약』 제33조 1은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돌아갈 때 직면하게 되는 것이 박해나 생명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그 밖의 인권침해라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난민협약』 제33조 1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상관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난민협약』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난민신청자를 함부로 송환할 수 없습니다. 『난민협약』 제33조 1 등을 위반하지 않고 난민신청자를 송환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접근방법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엔난민기구의 합리성 판단에 기반을 둔 접근입니다. 그 장소가 난민신청자가 국제적인 보호 대신에 택할 합리적인 대안이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캐나다 연방 법원은 외국에서 피난처를 찾기 전에 국적국의 다른 지역에서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하였고, 합리성의 기준을 낮추는 것은 난민 정의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엔난민기구는 대안적 국내 피신에 관한 국제보호 지침 제29항에서 “만약 신청인이 생계를 유지하거나 주거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거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불충분한 상황이라면 그 지역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인권의 관점에서 어떤 개인이 경제적 궁핍이나 최저생계 수준 이하의 생활을 견여야 하는 지역으로 이주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하여 합리성 판단에 기반을 둔 접근이 인권보장에 관한 질문과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시간 가이드라인이 주장하는 보호에 기반을 둔 접근입니다. 대안적인 장소에서 난민신청자가 『난민협약』상 난민에게 인정되는 제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민협약』상의 난민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난민협약』 자체가 자신의 터전을 떠난 사람이 타지에서 정착하여 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적 장소에서 보호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난민협약』상의 권리 보장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적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우선 합리성 판단에 기반한 접근은 ‘합리적’ 내지 ‘지나치게 가혹’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판단을 하는 기관의 주관적인 태도에 너무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난민협약』의 목적과 취지가 인권보호임을 고려할 때 대안적인 국내 보호 장소는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에 기반을 둔 접근이 기본적으로는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의 대체성 역시 『난민협약』의 목적과 취지이므로 『난민협약』 제2조 이하의 권리를 대안적인 장소에서 누릴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피난국에서 누릴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국적국에서 누리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Q 비국가행위자가 피해를 한 경우 반드시 국적국을 떠나기 전에 국적국으로부터 보호를 구했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국적국에 대한 보호요청을 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고 무의미할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 보호라는 『난민협약』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난민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국적국의 보호할 능력과 보호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적국을 떠나기 전에 당국의 보호를 요청했고 그것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면 피난국이 국적국의 보호 능력과 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박해는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사유와 관련이 있을 것

(1) 국적 또는 민족,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가) 국적 또는 민족

『난민법』은 관련 부분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난민협약』 제1조 A(2)의 nationality/nationalité를 ‘국적’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nationality라는 말은 일상에서뿐 아니라 법률 영역에서도 국적(citizenship)의 의미뿐 아니라 민족(ethnicity)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유엔난민기구 난민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과 지침』(이하 ‘편람’)이라 합니다) 제74항에서도 nationality는 시민권(citizen)의 의미뿐 아니라 민족적(ethnic) 또는 언어적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인종’이라는 용어와 그 의미가 중첩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난민협약』상 관련 규정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로 번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인종

‘인종’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피부색이나 얼굴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기준으로 구별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박해의 사유로서의 인종의 개념은 『난민협약』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관련 국제인권규범인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1항에 따라 “좁은 의미의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인종과 관련해서 주로 문제가 되지만, 다른 박해 사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소위 인종청소를 목적으로 내전과 같은 무력충돌이 발생한 상황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겪는 인권침해 이상의 침해를 당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판례나 학자에 따라서는 내전이 가져온 일반적인 위험 이상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협약』은 박해와 『난민협약』상의 사유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것만을 요구할 뿐, 박해를 받을 사람이 도드라지거나 지목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박해가 협약상 사유와 연결이 된다면 족하다는 것이 『난민협약』의 태도라고 봐야 합니다.

(다) 종교

종교의 의미에 대해서도 『난민협약』뿐 아니라 다른 국제인권규범에도 일반적인 정의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권보호라는 『난민협약』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가능한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의 개념에 접근을 할 때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측면과 그렇지 않은 측면, 종교적인 신념을 표현하는 측면과 그렇지 않은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신념의 소유 측면을 고려할 때에도 전통적인 종교적 신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유신론적인 신념 및 비유신론적인 신념 심지어 무신론적인 신념도 종교적 신념으로 봐야 합니다. 신념의 표현 측면을 고려할 때에도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종교의식(儀式), 신학교를 세우는 것을 포함한 종교 교육, 포교활동 등도 종교적 신념의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종교적인 사유로 인한 박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박해의 주체가 난민신청자의 개종 사실이나 종교적 신념을 모르는 경우에도 종교로 인한 박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국적국에서 자신의 종교를 숨기고 살면 박해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박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난민협약』

의 목적과 취지가 인권보호에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종교를 숨길 의무를 인정하는 위와 같은 해석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라) 정치적 견해

정치적 견해와 관련한 여러 쟁점들이 있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박해를 정치적인 박해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권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일반논평과 개인청원에 대한 결정 등을 통해서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자유권 규약』 제18조 1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유엔난민기구 역시 편람 제170항과 종교에 기반한 난민인정 신청에 관한 국제보호 지침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난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견해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논의가 되는 주제이지만, 엄밀히 보면 박해 사유 전반과 관련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소위 ‘전가된 정치적인 견해’로 인한 박해의 인정 여부입니다. 인권보호라는 『난민협약』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난민신청자가 문제가 되는 정치적인 신념을 갖지 않고 있거나 박해자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정치적인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박해자가 난민신청자가 일정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박해를 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로 봐야 합니다. 둘째는 정치적인 견해로 인한 기소(와 처벌)를 정치적인 박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동기로 범죄를 저질러 국제국의 일반적인 형사규범에 따라 기소되고 처벌되는 경우에는 정치적인 견해로 인한 박해라고 할 수 없지만, 기소 내지 처벌이 자의적이거나 인권에 반하는 경우, 비례적이지 않거나 단순히 정치적인 견해를 이유로 괴롭히고자 하는 명분에 불과한 경우에는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 말 자체의 모호성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집단은 ‘한 사회의 특정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 사회집단」이라는 것은 개념적 모호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적 모호성 자체가 난민보호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왜냐하면 『난민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생긴 난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21세기의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보호가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난민을 포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권보호라는 『난민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을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의 의미를 인종, 종교, 국적 또는 민족, 정치적 견해를 제외한 기타 사유라는 식으로 애매하고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다른 박해 사유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민협약』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되 문맥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논의가 있지만 유엔난민기구는 아래 두 가지 집단 중에 어느 한 집단에 속하는 경우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① 생래적이어서 변경이 불가능한 특질로 묶여지는 집단이거나 변경이 가능하지만 인권과 존엄성에 핵심적이거나 역사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도록 요구할 수 없는 특질로 묶여지는 집단, ② 외부에서 보았을 때 사회 전체에서 그 집단을 구별하여 인식하도록 할 공통점이 있는 집단. 외국의 판례는 ‘카스트’, 지주 계급과 같이 계속해서 낙인의 효과를 가져오는 ‘과거의 사회적 지위’, 젠더에 기반한 박해의 경우 여성 등을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으로 인정한 바 있고, 우리 판례도 형사취수제(兄死娶嫂制)의 피해자인 여성, 경쟁 부족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은 족장 지위 승계자, 성소수자 등을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관련성

『난민협약』상 난민 정의에서 박해와 박해의 사유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표현인 ‘를 이유로’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난민협약』상의 박해의 사유들이 박해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박해의 사유가 박해자의 의도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즉 박해자가 『난민협약』상의 사유 때문에 박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물론 박해자에게 그런 의도가 있다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해자의 동기나 의도를 입증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그러한 관련성을 입증할 것을 난민신청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난민협약』의 목적과 취지가 박해자의 의도를 밝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의도를 가진 박해자를 처벌하고 그러한 박해를 예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사유로 인권침해를 받을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박해자의 박해 의도가 협약상의 사유에서 기인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해와 박해의 사유 사이에만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인데, 그 관련성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협약상의 다섯 가지 사유가 박해의 유일한 이유일 필요까지는 없어도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중에는 박해의 본질적인 또는 핵심적인 원인이 협약상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박해의 여러 원인들 중에 협약상의 사유가 하나 이상 들어가 있으면 족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문제로 협약상의 사유와 박해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간접적인 관련성으로도 족한지 하는 쟁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일정한 주술적인 행동을 거부하고, 그러한 거부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는 경우 난민신청자의 종교와 박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직접적인 관련성만을 인정할 경우에는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권보호라는 『난민협약』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성은 가능한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박해의 여러 원인들 중에 협약상의 사유가 하나 이상 들어가 있으면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족하며, 『난민협약』 사유와 박해 사이에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박해는 『난민협약』상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Q 국적국에서 범죄자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그것을 이유로 난민이 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기소(prosecution)는 박해(persecution)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독재 정부가 반정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해서 범죄자로 처벌하거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간통죄를 범한 여성에 대해 투석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기소 내지 처벌이 박해가 될 수 있습니다.

Q 위해와 『난민협약』상의 사유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보호부재와 사이에 관련성으로 충분한가요?

A 예를 들어 어느 파키스탄 출신의 난민신청자가 국적국에 돌아가면 테러리스트의 위해를 받는다고 하면서 난민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파키스탄에 돌아가면 테러리스트의 위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러한 위해는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견해로 인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난민협약』상의 다른 사유와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높은 위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 난민신청자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하여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 난민신청자가 받을 박해와 『난민협약』상의 사유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앞에서 박해를 설명할 때 박해는 심각한 인권침해인데, 그것은 반드시 국가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비국가행위자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국적국이 난민신청자를 보호할 수 없거나 보호를 하지 않는 이유가 『난민협약』상의 사유를 이유로 한 것이라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소위 전쟁 난민은 난민이 될 수 없나요?

A 전쟁으로 인한 난민의 경우에는 난민이 될 수 없다는 근거 없는 도그마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쟁에서는 그 나라 사람들이 동일한 위해를 받기 때문에 전쟁을 피해 온 난민신청자에게 도드라지는 위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2. 다. (나)에서 설명했습니다. 『난민협약』은 다섯 가지의 사유를 이유로 한 박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쟁을 피해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전쟁에서 받는 박해가 종교, 정치적 의견 등 『난민협약』이 규정한 사유를 이유로 한 것이라면 난민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쟁이 종교 및 정치적인 갈등을 이유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 난민은 『난민협약』이 정의하고 있는 난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 박해에 대한 두려움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것

『난민협약』상 ‘well-founded fear’를 『난민법』에서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번역하였지만 ‘충분한’으로 옮길 때 마치 ‘충분히 입증을 해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근거 있는 두려움’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두려움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것인지는 난민신청자가 국적국에 돌아갔을 때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관한 문제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고, 이는 박해를 받을 가능성을 어떤 정도로 입증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물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1) 두려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박해 가능성에 대한 입증 정도

국적국에 돌아갔을 때 받을 박해의 가능성에 대해 『유엔난민기구 편람』 제42항은 ‘합리적인 정도’로 표현을 하였고, 미국 대법원은 1987년 유명한 Cardoza-Fonseca판결에서 “합리적인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박해가 발생할 개연성까지 있을 필요는 없고 합리적인 가능성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캐나다도 이에 영향을 받아 단순한 가능성보다는 높아야 하지만 합리적인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고 하였고, 호주는 박해에 대한 “실제적인 가능성(real chance)”이 있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입증 정도를 이렇게 낮게 보는 이유는 난민이 특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즉 난민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구하기 힘들고, 난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는 물리적·언어적·문화적으로 증거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난민인정이라는 것이 미래의 박해 위험을 예측하는 판단이고, 잘못 판단할 때 초래될 결과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입증 정도는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치환될 수 있는데, 난민사건의 입증을 위해서는 판단자가 진실이라고 판단하는 데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나 합리적인 의심 없는 상태 혹은 개연성이 있다고 믿는 상태까지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Cardoza-Fonseca의 판결에 따르면, “박해를 당할 가능성이 10% 이상”이라는 확신만 들면, 난민신청자의 박해에 대한 우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봐야 하고, 합리적인 정도의 입증기준을 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난민이 국적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입증 방식에 관한 것인데, 이 역시 난민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난민사건에 대한 입증 방식은 다음에서 살펴볼 신빙성과 관련됩니다.

(2) 입증 방식의 특수성과 신빙성 판단

(가) 입증 방식의 특수성

신빙성은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믿을 만하거나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난민의 취약성으로 인해 입증 방식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증 방식의 특수성이란,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을 가지고는 주장 자체를 입증할 수는 없지만, 난민사건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민신청자의 진술을 증거로 볼 때 그 증거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입니다. 결국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을 때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 진술만을 가지고 난민 정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나) 신빙성 판단이 필요한 상황

모든 난민사건에서 신빙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난민신청자라는 ‘사람’이 믿을 만하지 않더라도, 난민신청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을 하지 않았어도, 심지어는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에 근거해서 난민신청자에게 『난민협약』상의 사유로 박해를 받을 실제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이 입증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때의 입증의 정도(확신의 정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해가 발생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이 들 정도면 족합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유엔난민기구 편람』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난민신청자에게 자신이 난민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게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어서,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거나 거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

우가 많을 것입니다.

(다) 신빙성 판단의 대상

신빙성 판단의 대상은 난민신청자의 진술 중 주변적인 내용이 아니라 난민 정의에 핵심적인 부분 내지 난민 정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진술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신빙성 판단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난민신청자를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없거나 심지어 그가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정부기관을 속였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바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난민 정의와 무관하거나 부수적인 진술의 불일치를 가지고 쉽사리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신빙성 판단의 대상을 진술이 아니라 사람인 난민신청자 자체에 두어서도 안 되지만, 난민신청자의 진술 중에서 난민 정의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아니라 난민 정의의 핵심적인 부분 이외의 진술, 특히 난민신청자의 출국, 입국, 체류와 관련된 진술 등을 대상으로 신빙성을 판단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국적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출국하였는지, 입국하기 전에 소위 안전한 제3국에 체류하다가 왔는지, 합법적으로 입국했는지 불법적으로 입국했는지, 경제적인 목적으로 입국을 했는지, 입국한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쉽게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적인 입국과 안전한 제3국 경유, 합법적인 출국, 지연된 난민인정 신청, 경제적인 입국 목적 등이 박해의 실제적인 가능성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국과 체류나 출국 등에 관한 것으로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난민 정의의 핵심 요소와 관계없는 것, 특히 입국 동기에 경제적인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과 관련해 캐나다연방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민을 하려고 하는 욕망이나 국적국에서의 박해에 대한 우려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박해의 우려가 있는 곳을 떠나기 위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이민을 택하는 것은 매우 만족스러운 해결방법으로 보인다. 이민을 시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는 약한 근거라고 생각된다.”

(라) 신빙성 판단의 기준

난민신청자 자체가 아니라 난민신청자의 진술 중 난민 정의와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을 가지고 신빙성을 판단한다고 할 경우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 내지 자료는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유엔난민기구는 과거 신빙성 판단 기준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그럴듯한지(plausible) 여부입니다. 둘째는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든 그 진술 사이에 모순이 없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신빙성 판단의 기준으로 앞의 세 가지에 더해 난민신청자의 태도를 추가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술의 그럴듯함이나 난민신청자의 '태도'를 신빙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듯함과 태도를 가지고 누구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단을 하는 자와 판단을 받는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화적인 배경에 있어야 하는데, 난민들은 많은 경우 피난국과는 너무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뒤에서 살펴볼 난민의 사회심리적인 취약성까지 고려하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절차를 밟는 동안 피난국에서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행동이나 태도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유엔난민기구도 "태도를 신빙성 판단의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태도는 미더움을 나타내고, 다른 태도는 미덥지 못함을 나타낸다는 가정에 기초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앉고 서고 하는지, 초조해하는지, 질문을 받을 때의 안색은 어떤지, 말하는 속도는 어떤지 하는 것이 진실과 거짓을 보여준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여 '태도'를 신빙성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입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빙성을 평가할 때 다음의 다섯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① 진술이 내적으로 일관되고 외적으로 부합하고 그럴듯한가? ② 그렇지 않다면 그 일관되지 않고 부합하지 않고 그럴듯하지 않은 진술은 난민정의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것인가? ③ 그렇다면 그러한 비일관성과 불일치는 사소한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대체적(大體的)인 일관성과 부합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④ 그렇지 않다면, 비일관성과 불일치를 야기하는 난민신청자의 사회심리적인 취약성 때문에 발생한 왜곡요소가 있었는가? ⑤ 이것도 없었다면 난민신청자가 진술을 한 절차

에서 최소한의 적법절차원칙이 지켜졌는가?

Q 신빙성 판단과 관련해서 난민의 진술을 왜곡시키는 요소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난민신청자의 사회심리적 취약성이고, 두 번째는 난민 인정절차에서의 적법절차 부재입니다. 신빙성 판단과 관련해서는 난민들이 놓여있는 상황의 특수성, 특히 난민신청자 개개인이 처한 사회심리적인 취약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다음에 세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진술의 그럴듯함'과 관련해서는 진술의 구체성이 중요한데,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국적국에서 잔혹한 박해를 당했거나, 특히 성적인 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그러한 경험들을 자신의 기억에서 지우려고 하는 기제가 작동하므로, 박해에 대해 오히려 덜 자세하고 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진술의 일관성과 관련해서는 역시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우리는 기억을 계속 재구성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트라우마를 경험해 기억을 억누르고, 사회심리적 취약성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난민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 피난국에 막 도착해서 한 진술이 사실에 가장 가까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권위주의 국가에서 온 난민들은 처음에 출입국을 포함한 정부 당국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자신이 출입국에서 한 말이 국적국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난민인정절차가 진행되면서 진술이 더 구체화되고 불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염두에 두고 신빙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진술의 사실 부합성과 관련해서는 난민신청자가 자신이 피신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난민신청자가 겪은 박해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사건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국적국 정황과 관련해서 조사나 보고가 안 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 적법절차 부재로 인한 왜곡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언어로 난민인정신청서를 기재하지 못하게 한 경우나 부적절한 통역인을 통해 의사소통을 한 경우나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나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가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경우나 명백히 모순되는 진술을 해명할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난민신청자가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적법절차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왜곡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법절차의 요구는 난민신청자가

진술 하는 과정뿐 아니라 신빙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부정적인 평가는 난민신청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알려줘야 하되,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말이 아닌 분명한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해야 하고, 난민신청자에게 해명과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러한 해명과 반박이 신빙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합니다.

Q 난민 정의에 해당해도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난민협약』 제1조 F에서는 난민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난민으로 보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난민협약』 제1조 F는 일정한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고 그들을 난민으로 보호를 한다면 난민제도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에 둔 중요한 규정으로 이러한 내용은 이미 『세계인권선언』 제14조 제2항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조 F는 세 범주의 범죄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위 세 범주에 해당하는 범죄자인지에 관한 증거는 명백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난민협약』 제1조 F에서 말하는 세 범주의 범죄자는 첫째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둘째 “피난국에 입국하기 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이고 셋째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입니다. ‘평화에 반하는 범죄’는 불법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전쟁범죄’는 민간인을 폭격하거나 금지된 무기를 사용하는 등 전쟁 중에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고,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의 원수 등이 국제법적인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실제

법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규정을 봐야 하는데, 그 규정 제7조에 따르면 관련 범죄의 유형을 11개로 나열을 하면서 살해나 고문뿐 아니라 강간 등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되려면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한 경우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난국에 입국하기 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취지는 난민제도를 범죄인 인도(extradition)를 피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해당 행위가 국적국과 피난국 모두에서 범죄로 처벌되는 것이어야 하며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에 해당하는 범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Q 난민으로 인정되어도 추방을 당할 수 있나요?

A 『난민협약』 제33조를 보면 제1항에서 난민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로 두 가지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첫째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이고, 둘째는 특히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된 자입니다. 첫 번째 사유에 관해서는 단순히 국가공동체에 대해 위험한 사람을 추방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특히 중대한 범죄’(particularly serious crime이라고 해서 이중적인 조건을 달았음)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중에서 국가공동체에 대해 위험한 사람을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중대한 범죄는 보통 살해, 강간, 방화, 특수강도 등으로 보기 때문에 특히 중대한 범죄는 이것들보다 더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제1조 F의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 등에 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유인 “국가에 안보에 심각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는 단순히 난민이 어느 불법적인 그룹에 속해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람의 존재나 행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영

토나 시민에 대한 무장 공격이나 헌법기관의 파괴와 같은) 한국에 가장 근본적인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실체적인 위해를 줄 실질적인 가능성이 공정한 절차에 근거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난민협약』 제33조 2항의 추방 가능 조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비준한 『고문방지협약』 및 『자유권 규약』 또는 국제관습법인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의해서, 어떠한 경우이든 그 사람을 고문이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당할 곳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2장

신청에 관한 조력 I - 1차 신청단계

제2장

신청에 관한 조력 I - 1차 신청단계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이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국 또는 상륙하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체류한 기간에 상관없이 난민인정 신청이 가능하며, 출입국항에서도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난민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6조].

1 난민인정 신청 5조(일반)

가. 난민인정 신청

(1) 난민인정신청서 작성

난민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여권과 사진 1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권의 경우 생명과 신체의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여권 등을 소지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난민인정신청서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국문), 제2호(영문)로 서식이 공개되어 있고, 각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이하 ‘출입국·외국인청 등’이라 합니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난민인정신청서는 수기로 또는 컴퓨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처리 및 제공목적(목적 외 사용 금지) 5. 15. 20

난민인정신청서

※ 법무부 장관 제1차(2차) 난민 재심사는 공화국 출신에 한하여, 재심사신청 후 14(15)일 이내

1. 인적사항	
1-1) 성(姓)	1-2) 이름
1-3) 다른 이름 (한 성명, 종교적 위명, 가명, 별)	
1-4) 생년월일(년/월/일)	1-5) 성 [] 여 [] 남
1-6) 국적	1-7) 직업
1-8) 출생지(국가, 시, 도, 리)를 이름 별칭구역을 상세히 기재)	
1-9) 자라에서 온 주소지(국가, 시, 도, 리)를 이름 별칭구역을 상세히 기재)	
1-10) 종교 및 종파	1-11) 민족
1-12) 모국어 및 구사 언어 [] 모국어: [] 한국어 [] 영어 [] 불어 [] 기타:	
2. 한국 입국사항	
2-1) 입국일(연/월/일)	2-2) 입국장소
2-3) 한국 입국시 입국 가를 받았나요? [] 예 [] 아니오 '예'면 경우 2-4) - 2-6)를 작성하십시오.	
2-4) 여권번호 또는 신분증번호	2-5) 사증 종류
[] 여권번호: [] 신분증번호:	2-6) 사증상 세관인
2-7) 2-4)와 온 편지사항의 여권 을 제시하고 입국하 나요? [] 예 [] 아니오 '아니오'면 경우 2-8) - 2-11)를 작성하십시오.	
2-8) 여권상 성(姓)	2-9) 여권상 이름
2-10) 여권상 생년월일(연/월/일)	2-11) 여권상 국적
3. 한국 내 체류사항	
3-1) 현재 체류지력	3-2) 체류기간 만료일(연/월/일)
3-3) 과거 및 현재 다음의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표기하십시오. [] 불법체류 [] 한국 입입국 [] 위조·변조 여권 사용 [] 형사법 위반 [] 기타	

[난민인정신청서 1면-인적사항]

14. 난민인정 신청사실

난민적 형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14-1) 아래 난민인정 신청 사유 중 적가 해당하는 사항에 표기하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 인종: [] 종교: [] 국적: [] 정치적 의견: []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14-2) 허 또는 허의 가 , 친구, 동료가 무관한 지문 또는 박해를 받았나요?
[] 예 [] 아니오
'예'라면 현재, 누가, , 누구로부터, ,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자세히 "시오.

14-3) 허는 국하면 무관한 지문이나 박해를 받았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예 [] 아니오
'예'라면 누구로부터, , 어떤 처분을 받았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세히 "시오.

[난민인정신청서 7면-난민인정신청사항]

난민인정신청서는 ① 인적사항, ② 한국 입국사항, ③ 한국 내 체류사항, ④ 국적(시민권) 및 영주권, ⑤ 혼인사항, ⑥ 가족사항, ⑦ 학력사항, ⑧ 경력사항, ⑨ 군복무 사항, ⑩ 거주사항, ⑪ 여권사항, ⑫ 한국 사증사항, ⑬ 자국 출입국사항, ⑭ 난민인정 신청사항, ⑮ 난민인정 신청 사유, ⑯ 서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난민인정 신청사항과 난민인정 신청 사유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과거 박해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 경과, 발생 시점과 장소, 박해주체, 원인 및 이유(정치활동을 했다면 어떤 조직에서 얼마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관련 인물 및 사실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과 정보 등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민인정 신청 사유의 기재는 분량의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성자(번역이 된 경우 번역을 한 번역인의 서명도 포함)의 서명 및 작성일자를 기입합니다. 작성일자는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짜로 기입합니다. 번역인이 있는 경우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합니다.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난민법』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5조 제3항, 제4항).

Q 난민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난민인정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① 난민인정신청서(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도 가능)
- ② 여권(다만, 생명과 신체의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여권 등을 소지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유서로 대신함.)
- ③ 컬러사진 1매(3.5cm×4.5cm) 등

Q 접수처에 난민인정신청서 번역본이 비치되어 있나요?

A 법무부에 따르면 총 6개 언어(한글, 영어, 중국어, 불어, 아랍어, 우르드어)로 마련한 신청서 양식을 구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비치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필요 시 해당 언어로 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사무소

난민인정신청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보통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제출합니다.

Q 관할 사무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관할의 제한이 없어 어떠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접수 거부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이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난민심사 진행 중에 연락처나 체류지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난민심사 관련 사실조사 및 면접 등을 위해서는 최신의 주소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난민인정신청서의 제출과 접수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민법상 미성년자이거나 질병, 기타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진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녀, 신청자의 친척, 변호사가 그 신청자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와 자녀의 난민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난민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난민인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독립적으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도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자녀에게 독립적인 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부모의 신청결과에 귀속되며, 이 경우 신청 사유는 부모의 사유와 동일하게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Q 미등록 외국인도 난민인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미등록 외국인도 난민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민인정 신청 접수과정에는 미등록 기간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을 하고(또는 과거에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미등록체류에 대해 자진신고를 해야 하고,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⁶⁾ 정확한 범칙금은 체류도과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범칙금 양정기준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위조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했는데, 구금될 수도 있나요?

A 위조여권의 경우 미리 자진 신고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명령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된 날짜가 난민인정신청일이 되고, 이에 따라 『난민법』상의 난민신청자⁷⁾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

- 6) 참고결정례- 난민인정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그 절차 종결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난민인정심사,처우,체류 지침'상 체류기간을 도과한 자가 자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두하여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기타(G-1)체류자격을 부여하되, 통고처분 후 동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달리 통고처분의 이행 여부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바, 청구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구체적인 사정이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통고처분 불이행을 이유로 고발조치를 하여 별도의 제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불법체류를 이유로 범칙금 200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한 이상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기타(G-1)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난민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 2014-24667, 2015. 6. 9.).
- 7) 『난민법』에서는 난민신청자를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에 대하여 ①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②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용 『난민협약』상 난민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난민인정절차 또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

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난민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난민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접수거부는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이는 재신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민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접수거부결정 취소심판 내지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라는 종이를 받았는데, 꼭 가야 하나요?

A 난민신청자는 결핵,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전염성 질병의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정해진 날짜, 시간에 맞춰서 가지 않을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게 되고, 당일에 가더라도 방문시간이 늦으면 받지 못합니다. 한 번 정도는 다시 검진일정을 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차 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본인비용부담, 법무부장관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난민인정신청서의 열람·복사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이나 복사 부분을 특정하여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열람·복사신청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열람이나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열람을 신청한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열람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열람신청서를 제출한 난민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복사물 교부를 신청한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신청된 면접조서 등을 복사하여 복사물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난민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청 또는 행정소송 등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난민인정 신청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난민협약』 등에 근거하여 난민신청자에 대해 일정한 보호(사회보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법』에서는 난민신청자에 대해 생계비 지원, 취업허가, 주거시설의 지원, 의료지원, 교육의 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자의 체류와 처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려는 난민신청자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2018. 5. 15. 기준 열람은 1회당 500원, 복사는 1매당 50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Q 난민인정 신청 후 난민면접조사 전 난민인정신청서 열람·복사의 제한

A 『난민법』에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열람이나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지만,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기초해 난민인정 신청 후 면접조사가 있기 전까지 난민인정신청서 등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난민인정신청서 등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 열람 및 복사가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난민인정신청서 등의 열람 및 복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실무 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실무가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난민신청자의 충분한 조력을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서 등 제출 시 사본을 보관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난민인정 신청에 관한 정보 게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어 및 영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언어로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등의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①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② 면접 등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는 사실, ③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사항, ④ 난민인정 신청 및 접수방법 등의 사항을 출입국·외국인청 등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한국어 및 영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언어로 게시하여야 합니다.

나. 난민인정 심사

(1) 심사관 및 심사기간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난민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두고 있으며, 각 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접수된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여 처리하기 위해 각 권역별 8개의 거점 사무소(인천공항, 서울, 부산, 광주, 제주, 화성보호소, 청주보호소, 여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민심사관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난민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난민심사관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만 그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법 시행령 제6조).

Q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주소가 바뀌었어요. 심사는 계속 같은 곳에서 진행되는 건가요?

A 면접조사 실시 이전인 경우에는 현재 체류지를 관할하는 난민심사 거점사무소로 난민인정 신청이 이첩됩니다. 면접조사 및 심사도 이첩된 사무소에서 진행되니 면접조사 연락이 올 때 연락이 온 사무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난민면접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무소 변경 없이 난민인정 신청 접수사무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난민심사를 통한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심사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난민심사가 6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로 인해 심사가 장기화 되는데, 이와 같이 6개월을 경과하는 경우 6개월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 제4항, 제5항).

(2)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법 제12조). 『난민법』에서는 이를 명시함으로써 난민인정 신청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해당 변호사는 난민인정신청서 작성의 단계부터 면접조사를 포함한 사실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력이 가능합니다.

난민심사는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난민심사관이 개별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진정성과 난민신청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평가하여 난민지위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가 놓인 상황의 취약성-과거 본국 또는 탈출과정에서의 박해 경험, 타국에서 심사를 받는 상황, 언어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원의 부족, 기억력의 한계, 심사관의 태도 등에서 오는 위축,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것을 난민심사관에게 설명하고, 면접조사를 받는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의 구제수단이 존재하지만 난민인정신청서 작성과 난민면접을 포함한 사실조사 과정을 통해 난민지위의 인정 여부가 결정되고, 이후 구제수단을 밟는 과정에서도 최초의 심사가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난민인정 신청단계에서부터의 변호사 조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Q 난민인정 신청과정에서 어떠한 조력을 할 수 있을까요?

A 변호사(또는 기타 조력자)는 난민인정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난민신청자의 진술을 잘 정리하여 쟁점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을 조력**하거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고, 난민신청자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대한 설명, 난민신청자 본국 상황에 대한 국가정황정보 자료의 검토, 난민신청자의 박해가능성에 대한 법적인 해석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하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난민면접 심사에 동석**하여 난민신청자의 면접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후 난민심사관의 **사실조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견을 피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3) 기타 사실조사(면접조사에 대해서는 아래 다.에서 서술)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또는 그 이후라도 난민지위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만한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난민심사관 역시 난민면접 외에 난민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가 모든 진술을 증거로 뒷받침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 박해를 피해 피난 온 사람은 최소의 필수품만을 가지고 대개 신분증조차 없이 도착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하여도,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의무는 신청인과 심사관이 공유합니다.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관이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에 의하여 진술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난민법』에서도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난민심사관 등이 적극적으로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입니다.

다. 면접조사

(1) 면접과정과 면접조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박해를 피해 피난 온 사람은 최소의 필수품만을 가지고 대개 신분증조차 없이 도착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당사자 본인의 진술이 주된 증거방법이 됩니다. 이에 따라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과정은 난민지위 인정 여부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항에 의하면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하고 신청내용이 사실인지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구 『출입국관리법』 및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는 면접 등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심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인 면접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서류심사만으로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와 같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남편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면접을 생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⁸⁾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합니다. 면접조사는 앞서 언급한 난민심사관이 수행하는데,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성(性)의 공무원이 면접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8조 제2항). 난민신청자의 경험에 대한 진술이 개인의 은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일 경우 다른 성(性)의 공무원에 의해 사실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불안하여 사실대로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난민신청자가 성적인 박해를 경험하였거나, 다른 성과는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경우, 위 규정에 의해 같은 성(性)의 공무원에 의해 면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난민면접조서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난민면접조서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을 따릅니다. 난민면접은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과 박해사항에 관한 질문으로 구분되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에는 이름,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확인, 난민신청자의 언어, 국적, 민족, 출생지, 본국 주소지, 결혼 여부, 가족관계 확인, 학력사항, 경력사항, 여권발급과

8) 서울행정법원 2015. 11. 13. 2015구단10691 판결.

정, 출국 경위, 한국입국 경위, 난민인정 신청 경위 등에 대해 질문합니다. 박해사항에 관한 질문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을 한 이유, 본국을 떠난 이유,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이유 등 박해에 관한 것으로 이에 관한 난민신청자의 활동 내용과 이에 관련한 증거자료, 활동과 증거자료의 진정성, 가족 등 관계인의 상황, 본국의 상황 등에 대해 질문합니다.

난민심사관은 면접을 실시한 후 기록한 난민면접조서를 난민신청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잘못 기록된 부분이 없는지 물어야 하며, 이 경우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의 기록 사항에 대하여 추가·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그 요청한 내용을 난민면접조서에 추가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난민면접조서 확인을 마치고 나면, 난민신청자와 통·번역인(난민면접과정 또는 난민면접 종료 후 통역이나 번역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은 난민면접조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을 합니다. 그러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난민면접조서의 내용을 수긍 내지는 이해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난민심사관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난민면접조서에 기록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난민심사관으로서 편견과 예단을 버리고 난민신청자가 충분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질의응답이 오고갈 수 있도록 면접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그에 따른 면접 내용이 정확하고 왜곡 없이 조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면접절차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필수적으로 진행했어야 할 박해에 관한 질문이나 난민면접조서의 확인절차 등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진술조차 왜곡되어 면접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법』에서 정한 난민인정사유로서 부족해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난민면접조서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⁹⁾

9) 2017. 10.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294 판결, 2018. 6.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7245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결.

(2) 면접의 녹음 및 녹화

『난민법』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면접의 녹음·녹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면접과정에서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정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난민법』에서는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녹음 또는 녹화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과정에 진술한 내용은 난민면접조서를 통해 기록되고, 난민신청자에게 난민면접조서를 열람하게 하여 서명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만, 여전히 면접조서 기재 내용만으로 당시 면접과정에서 난민신청자가 면접조서에 기재된 대로 진술한 것이 맞는지, 난민신청자가 충분히 자신의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었는지, 통역에 오류가 있지는 않았는지, 난민심사관의 태도는 어떠한지, 난민신청자가 질문하는 것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여지가 충분치 않았는지 등의 상황이 왕왕 발생하고 있어, 난민면접과정의 녹음·녹화는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고, 면접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면접조서의 증거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난민신청자가 녹음·녹화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녹음·녹화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안내되고 있지 않아, 난민신청자가 녹음·녹화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민면접과정이 녹음·녹화된 경우 난민신청자는 이후 이의신청, 취소소송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자신의 면접에 대한 녹음·녹화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면접과정의 통역

난민면접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하여 정확한 통역은 필수요소입니다. 통역 제공 여부와 통역의 질은 난민지위 결정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게 됩니다.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난민 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자 면접과정에서 통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14조, 법 시행령 제8조). 면접과정에서는 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어 내지는 영어 사용이 다소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가급적 자신의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면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난민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성(性)의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성적 박해를 경험하였거나, 다른 성과는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경우 등 다른 성의 통역인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술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적극적으로 같은 성(性)의 통역인이 통역을 하여 면접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반드시 미리 고지하여야 하고, 면접일정이 안내되는 시점에 같은 성의 통역인을 원하는지 여부가 분명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신청인의 박해 사유 또한 통역인 섭외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가령 반정부 운동을 했던 난민신청자의 면접을 친정부 성향의 본국인이 통역하거나, 소수 종교로 인한 박해 우려가 있는 난민신청자의 면접을 다수 종교의 본국인이 통역하는 경우 면접과정에서 난민신청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술을 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으며, 통역인의 시각이 통역과정에 개입될 수 있어 통역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난민신청자의 안전 및 본국의 가족 등에게 위협할 수도 있어 난민신청자의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배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역이 섭외되고 면접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변호사 조력 및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난민법』은 난민신청자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법 제12조),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3조). 난민신청자는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국가 기관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건을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면접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도 많고, 이로 인해 충분히 필요한 진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면접과정에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출석통지와 난민심사의 종료

『난민법』은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출입국·외국인청 등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한국어 및 영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언어로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도 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 사실을 출석요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난민인정 신청 후 심사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심사가 장기화 되는 경우가 많아 언제 출석통지가 있을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부재중인 상황에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 제대로 송달을 받지 못한 채로 3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출석요구 3회 불응의 경우 추가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석요구 3회 이상 불응을 이유로 난민심사가 종료된 경우, 재신청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출석요구의 통지가 어떠한 방법으로 몇 회 시도되었는지, 주소지가 정확한지 등을 확인하여 난민인정 심사의 종료가 적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¹⁰⁾

10) “난민 신청자 불체자로 전락시킨 졸속 심사 통보… ‘복불’ 공지에 위법성 논란” 2018. 7. 22.자 국민일보 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83564>

■ 난민법 시행 세칙 제18조제1항 <개정 2016. 5. 15.>

(앞면)

대한민국
THE REPUBLIC OF KOREA

재 호
No.

난민인정증명서
CERTIFICATE OF REFUGEE STATUS RECOGNITION

1. 성명 _____
Name in Full

2. 생년월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Date of Birth Year Month Day

3. 국적 _____
Nationality

「난민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난민임을 인정합니다.
Pursuant to Article 18(1) of the Refugee Act, the holder of this certificate is recognized as a refugee.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Date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외국인보호소장

직인

Chief of ○○○ Immigration Office/ Branch/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88mm×125mm
(인사 용지(특) 120g/㎡)

(뒷면)

사진
PHOTO
35mm×45mm

주의
NOTICE

난민인정이 소· 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거명령서를 발 받는 의 사유가 있으면 이 증명서를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be returned immediately, when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is cancelled or an Exit Order has been issued.

88mm×125mm
(인사 용지(특) 120g/㎡)

[난민인정증명서 양식]

라. 난민인정 심사 결정

(1) 결정의 통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신청자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난민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합니다. 만약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합니다.

(2) 난민지위 인정과 난민인정증명서 교부

난민지위의 인정은 난민지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며, 난민임을 확인(선언)하는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난민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난민인정증명서의 양식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에 서식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난민인정증명서에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난민임을 인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이라 합니다)의 직인이 찍힙니다.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하게 되고, 1회에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 받아 이를 연장하며 장기간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습니다. 난민인정자의 처우(사회보장)에 관해서는 VI. 처우에 관한 조력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NOTICE ON NON-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1. 성명(Name in Full) _____
2. 영문성명(Name of Birth) _____ 영문(Home) 성명(Home) 성명(Home) _____
3. 국적(Nationality) _____
4. 대한민국 내 주소(Address in Korea) _____
5. 난민신청 신청일(Date of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_____ 영문(Home) 성명(Home) 성명(Home) _____

귀하 난민지위 인정에 대하여 「난민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난민임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을 서지 결과로 증명할 것을 유념하십시오.
Pursuant to Article 18(1) of the Refugee Act, this is to notify the non-recognition of your application without due to the reason below.

이유(Reasons) _____

귀 신청에 의하지 않을 때에는 「난민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f you do not agree to the above decision, you may file an appeal to the Minister of Justic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you receive this notice, pursuant to Article 21(1) of the Refugee Act.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외국인보호소장 직인

Chief of ○○○ Immigration Office/ Branch,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양식]

난민 불인정 사유서

신청인 성명	Mr. [REDACTED]
난민 신청 사유	미국의 특정한 의정권이 시행된 뒤 미를 경험해 따라 중년의 경제적 상황으로 특정한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이를 노리는 미군의 미군과 이후 특이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귀국할 수 없음
심사결과	불인정
이유	신청인은 미국의 특장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군 특의 위법행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러시아에 피신해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에 자국에서 타고 특 인준 국가를 출입국한 점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진실 신빙성이 없으며, 설명, 신청인의 일부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더라도 특장권의 특장권 승계를 두고 보이는 다른 불합리한 점으로 보아, 이는 자국 시정당국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점, 또한, 자국 내 안전한 지역으로 재공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재발 가능성과 관련 영향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난민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난민 인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난민불인정결정사유서 샘플]

(3) 난민불인정결정 및 사유의 통지와 이의신청

법무부장관은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합니다.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는 결정의 이유(난민신청자의 사실 주장 및 법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와 이의신청의 기한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와 불인정사유서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는 한국어에 영어가 병기되고 있지만, 불인정사유서는 한국어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언어 구사자의 경우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및 불인정사유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정확한 안내 또는 설명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불인정사유서에는 결정의 이유에 대해 충분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불인정결정사유서에 기재된 결정의 이유는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이 적법·타당하였는가를 이해하고, 위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불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며, 이의신청 및 이후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 과정에서 난민신청자의 방어권 보장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난민신청자의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조력하기 위해서는 불인정사유서에 기재된 사유들에 대해 꼼꼼하게 평가하고 충분한 근거를 들어 반박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①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 ②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③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④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배제조항으로 이미 국제기구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제공받고 있거나,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거나, 국제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간주되는 사람의 유형은 난민인정이 제한됩니다.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난민지위 불인정과 인도적 체류허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이란 난민은 아니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혹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인도적 체류허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인도적체류자는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로 G-1-6의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도적체류자의 처우(사회보장)에 관해서는 6장 처우에 관한 조력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및 철회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①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②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③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④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⑤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⑥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위 “정지조항”으

로 국제적 보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 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고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단 난민지위가 인정되면 위와 같은 취소 사유나 철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난민지위는 유지됩니다. 이는 국적국 상황의 일시적 변화로는 난민지위가 취소되거나 철회되지 않음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 취소 사유와 철회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이미 부여한 난민지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난민인정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취소통지서 또는 난민인정철회통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난민재신청을 한 경우 1차 신청 때와 차이가 있나요?

A 난민재신청을 한 경우 신청서 제출과 접수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이라는 이유로 신청서 접수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신청서 접수거부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다만 심사에 있어서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 “신속절차”로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난민재신청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출국 명령을 발령하여,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출국기한을 유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체류자격이 없지만 사실상 추방되거나 구금되지 않고 체류하는 상태에 놓입니다. 출국기한이 경과하여 출입국을 방문할 경우 바로 구금될 수 있으니, 출국기한을 놓치지 않고, 기한을 유예하는 도장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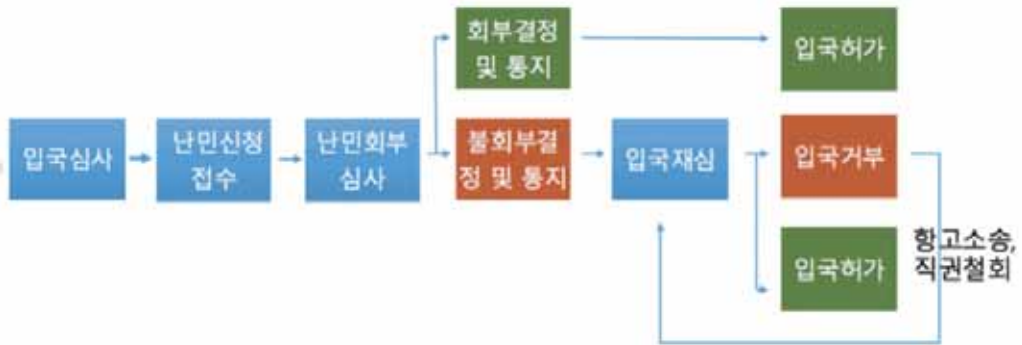
2 난민인정 신청 6조(공항)

가. 개관

앞에서 본 것처럼 한국에서의 대부분의 난민인정 신청이 '입국 후 각 지방 출입국, 외국인청장 등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공항 및 항구와 같은 국경에서도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난민인정신청서'를 공항에서도 접수를 받지만, 접수를 하였다고 하여 모두 난민신청자가 되어 심사를 받을 기회를 갖는 것은 아니고(입국한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만 하면 심사를 받게 되는 것과 달리),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개시할지 여부만 우선 간략히 공항에서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신청제도'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난민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해 2013년 7월 1일부터 시작¹¹⁾되어 아직 정상적으로 정착되지는 않은 제도입니다.

절차는 간략하게,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의 의사를 표시'하면 '난민인정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 후 제출하고, '접수'된 때로부터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면접조사를 마쳐 7일 이내에 정식 난민인정심사로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처분을 내립니다. 회부결정을 받게 되면, 그 날짜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게 되고 입국허가결정을 새롭게 내려 '입국', '난민신청자의 지위 획득'을 하게 되어 통상의 제5조 난민신청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만약 위법한 불회부결정을 받게 되면 송환대기실에서 항공사 직원을 통한 송환의 압력을 견뎌내며 불회부결정취소의 소라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 회부결정을 받고 입국하는 지난한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11) 『난민법』 시행 전에는 공항에서 입국심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더라도, 당국이 규범적으로 한국의 영토에 들어오지 않아 심사의무가 없다고 하여 심사를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법 제6조) 절차 개요¹²⁾

나. 구조적 문제점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제도의 취지는 공항에서 일어나는 강제송환을 막고, 심사기회를 부여하는 것¹³⁾이었으나 실무상 난민신청자의 기회부여를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합법적으로 난민신청자를 송환하기 위한 제도처럼 오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입국항(거의 모든 신청은 항구가 아닌 공항에서 이뤄집니다)에서의 난민인정신청제도의 실익은 ①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요건을 갖추지 못한 - 입국목적 불분명, 비자미소지, 유효한 여권의 미소지 등 - 경우에 먼저 난민인정 신청의 의사를 밝힐 경우, 또는 ②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이 거부된 후 송환위기에 놓인 자가 난민인정 신청의 의사를 밝힐 경우에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인정신청(Manifestly Unfounded Claim)’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입국을 허가하여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2) 난민네트워크,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 공항에서의 난민신청실태조사 보고서’, 2016, p.13

13) 입법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2011. 12.)』는 『난민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관해 “공항·항만 등에서의 난민인정의 신청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난민인정의 신청이 자의적인 행정에 의해 거부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고, 법무부는 『난민법』 제정을 환영하는 보도자료에서 “『난민협약』에 따라 공항·항만에서 난민인정 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공항·항만의 대기시설에서 난민심사 회부를 위한 사전심사를 받게 됨”, “이번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인권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무으로는 누구나 이 제도를 통해 입국을 시도하려고 할지 모른다는 심사당국의 염려로 인하여, 어느 정도 입증이 된 난민인정 신청 사례들의 경우에만 난민심사 기회 부여의 혜택을 보게 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당한 불회부결정을 받은 난민들은 송환대기실에서 송환의 압박을 받으며 오랫동안 위법하게 구금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난민들은 언제 송환이 될지 모른 채, 송환대기실 내 열악한 처우를 일방적으로 견뎌내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난민신청자들을 조력할 때 가장 어려운 사례군이 바로 공항 난민신청자들이 됩니다.

다. 공항 난민인정 신청 절차

(1) 난민인정 신청의사의 표시 및 작성

공항에 도착한 외국인인은 '난민인정 신청'의 의사를 '입국심사를 받는 때'(법 제6조 제1항)에 밝힐 수 있습니다. A유형(입국심사대에 도착하자마자 밝히는 경우), 또는 B유형(입국심사에서 입국을 시도하였다가 입국이 거부되었을 때 밝히는 경우)의 경우 통상 입국재심실로 이동하여 난민인정 신청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후 교부받은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실무상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환승' 목적으로 도착한 외국인인의 경우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인, C유형(입국거부된 후 송환대기실로 이동하였다가 난민인정 신청의 의사를 송환대기실의 용역업체 직원, 항공사직원등을 통해 밝히는 경우)도 난민인정신청서의 서식을 교부받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B유형의 경우 난민인정신청의 진정한 의사를 잘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C유형의 경우는 보다 더욱 불리한 입장에서 회부심사에 이르러야만 하게 됩니다.

(2) 난민인정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유형의 외국인인은 우선 입국거부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때 항공사에게는 '송환지시서'가 발부됩니다. 그러나 난민인정신청서가 접수되면 항공사운영

협의회(AOC)의 용역업체가 관리하는 송환대기실이 아닌 출입국·외국인청 등이 관리하는 ‘난민인정신청자대기실’(법 제6조 제2항)로 옮겨져 7일 동안 머물며 심사를 받게 되고, 당국의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난민인정신청서식’을 받고,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규모가 큰 인천공항의 경우, ‘접수’시점부터 7일 안에 심사를 종료해야 하는 법률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난민인정 신청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송환대기실에 계속 구금해 놓았다가 심사여력이 되는 시기에 접수하는 형태로 지연시키는 경우도 발견됩니다. 신청서식을 교부하지 않거나 접수지연이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서식교부’, ‘접수’를 할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회부심사

접수가 이루어지면 ‘난민신청자대기실’로 이동하여 지내며 회부심사를 받습니다. 실무상 간단하게 몇 가지를 물어보는 예비심사도 이뤄지지만 법에 따라 난민면접조서가 작성되는 심사는 통상 1-2회 이루어지며, 해당 언어의 통역인이 동석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난민법』상의 ‘난민신청자’로 인정되지 않아 법 제8조 내지 제17조의 심사에 관한 절차적 권리들의 적용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상 ‘구금’ 사실에 근거하여 마련된 지침에 따라 ‘변호인 접견’은 허용됩니다. 다만, 7일 이내에 회부심사를 종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난민면접조사 및 당사자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사실조회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치기에도 시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Q 회부심사는 왜 하는건가요?

A 회부심사는 ‘난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심사’(법 제5조)가 아니라 ‘불회부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심사’(법 제6조)입니다. 면접조사 등 그 외양이 동일하여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실무상 그런 오용의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 취지도 원칙적으로 난민신청자의 심사기회 보장을 위한 것임을 당해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 1. 28. 선고된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 판결에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에 대해 이처럼 따로 규정한 취지는, 입국 전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자격 있는 신청자로 하여금 단시간 내에 난민신청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배려하는 한편,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신청을 미리 방지해 심사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4) 회부심사에 따른 결정 및 통지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결정(처분)을 내려야만 합니다(법 제6조 제3항). 회부결정이 내려지면 그 때로부터 비로소 난민신청자가 되고, 난민인정신청접수증을 교부하고, 입국허가 처분을 하여 입국하게 됩니다. 향후 별도의 난민인정신청서의 작성 없이도, 통상적인 법 제5조에 따른 면접조사 등 일련의 절차로 이행합니다.

다만, 불회부결정이 내려지면, 불회부결정을 서면¹⁴⁾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보듯 항고소송으로 위법한 불회부결정을 다룰 수 있으나, 현행 내부 지침에 따르면 실무상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강력한 송환집행(항공사를 통한 자진귀국 권유, 불응 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일시보호로 압박)을 하게 되므로 구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회부)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5.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14) 『난민법』 및 동 시행령에는 처분서의 교부의무가 없어 다툼이 있었으나, 처분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 것이 행정절차법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해 하급심(서울고등법원)에서 입장이 갈려,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나, 지침으로 간략히 처분일자, 처분의 근거법령을 체크하여 영문으로 교부하는 통지서를 실무상 교부 중입니다.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6.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7. 그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불회부결정의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사유는 제7호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¹⁵⁾이며, 제3호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거짓 진술’, ‘거짓 서류’임이 반증의 여지없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위 조항이 오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4호에 관하여는 소위 ‘안전한 제3국’을 들어 불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논리적, 비규범적 판단을 통해 네 가지 세부요건을 실시한 하급심 판례들이 있습니다.¹⁶⁾

라. 공항 난민인정신청자의 처우

(1) 송환대기실의 경우

회부결정을 받기 전에는 『난민법』상 ‘난민신청자’가 아니고,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구금시설인 송환대기실(출국대기실, IN-ad실(IN-Admission의 약자) 등 명칭이 다양함)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 있습니다. 송환대기실에 관하여 법원은 ‘① 항공사운영협의회(AOC)에서 관리하지만 실질적 관리자는 출입국·외국인청 등이고, ② 그 성격은 법적 근거 없는 수용에 해당하므로¹⁷⁾¹⁸⁾, ③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

15) 처분 사유를 부정하는 판시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 자체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이에 관하여는 난민인정심사를 통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16)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라고 함은, 난민인정신청자가 난민으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국적국 내에서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박해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거나 이러한 박해에 관련하여 국적국으로부터 실질적이고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사실이나, 난민인정신청자가 거쳐 온 국가들이 『난민협약』 가입국으로 『난민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난민인정신청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실질적인 심사와 사법절차에 의한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며 난민인정신청자가 법률이 정한 사법절차를 통하여 난민불인정의 당부 판단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송환될 우려가 없고 재입국 또한 보장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772 등 다수)

17) 인천지방법원 2014. 4. 30.자 2014인라4 결정 인신보호

어야 할 것¹⁹⁾(한편, 법무부는 2014. 7. 14.자로 「난민인정 심사, 처우, 체류 지침」을 개정하여 난민심사 회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출입국항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변호인 접견을 허가) 등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송환대기실에서의 대기자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현재 송환대기실은 인천공항 출입국장 2층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녀 각 큰 방 1개, 직원 사무공간 및 휴게실,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숙박을 위한 침대나 침구가 존재하지 않고, 의자와 평상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불회부결정자의 수가 급증한 시기에는 150명이 넘는 외국인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공간이 부족하여 종이상자를 깔고 자기도 할 정도입니다. 세탁시설은 전혀 없으며, 샤워실도 제한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식사는 매끼 치킨버거와 콜라만 제공됩니다. AOC와의 계약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가 시설을 관리하는데, 경비원들의 폭력적 언사가 빈번하며 비용 부담을 느낀 항공사 직원들이 강제로 송환을 시도하거나 식사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국거부자에 대한 송환책임이 있는 항공사가 송환대기실 이용료 및 식비를 매일 부담하는 구조여서 대기자들을 신속히 송환을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항공사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식사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어 음식의 충분하고 지속적인 섭취가 어려워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약,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항공사로 하여금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긴급상륙허가(『출입국관리법』 제15조)를 신청하게 하여 입국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사 직원과 함께 임시로 공항 내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18) 본래 입국이 거부된 모든 외국인 들은 송환대기실에 바로 구금되었으나, 법무부 및 항공사운영협의회(Airline Operators Committee, AOC)는 당사자들에게 송환대기실 이용신청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구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송환대기실 이용신청서를 서명하지 않고 송환대기실 입실을 거부한 입국거부자들은 환승구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있으나, 환승구역 내 고가의 숙식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없는 경제적 사정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결국 장기간 대기를 위해서는 송환대기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입실하면 출입이 통제되어 사실상 구금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19) 헌법재판소 2014헌마346 변호인접견 불허처분 등 위법확인

(2) 난민신청자대기실의 경우

난민인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송환대기실에서 난민신청자대기실로 이동하여 7일간 머물게 됩니다. 이곳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이 직접 식사, 의료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의식주는 개인의 안전과 위생, 국적국의 관습과 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합니다(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자유로운 이동에 실무상 제한이 있지만, 난민신청자대기실은 구금시설이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실제로도 구금시설로 운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회부결정을 받게 되면 다시 난민신청자는 송환을 위해 송환대기실에 구금되게 됩니다.

Q 공항 난민신청자에게 연락이 올 경우 어떤 것을 먼저 물어야 하나요?

A ① 이름 및 생년월일, ② 공항 도착시기, 이용한 항공사, ③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지 여부, ④ 제출했다면 그 시기, ⑤ 제출했다면 난민면접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지 여부, ⑥ 안 된다는 결정(불회부결정)을 받았다면 언제 받았는지, 왜 안 된다고 하였는지 그 상세, ⑦ 지금 가장 긴급한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 당해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변호인접견신청’을 하여 접견 후 조력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①의 경우 특정할 수 있는 신원을 확인하여야 출입국·외국인청 등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②의 경우 항공사를 알아야 송환대기실, 송환지시대응, 소송과정에 대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③, ④의 경우 접수가 되었는지, 거부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며, 접수시점을 알아야 종료 시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⑤의 경우 면접이 끝났는지 여부에 따라 의견서 등의 제출 방식 및 시점 검토가 가능합니다. ⑥의 경우 처분일자를 확인하고 그 사유를 확인합니다. ⑦의 경우 식사, 의료, 송환압박과 같은 주된 어려움 중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마. 공항 난민신청자 조력 방법

유선, 메일, 메신저 등을 통한 상담을 넘어, 변호인 접견권이 난민신청자의 권리로 헌법상 보장됩니다. 이에 변호인 접견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접견신청원, 변호인선임서 및 변호사 신분증 사본, 통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난민팀²⁰⁾에 사전에 제출하여 접견의사를 표시하고, 공항 보호구역 출입허가를 받습니다. 이후 인천공항에서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환승구역으로 입장하여 변호인 접견을 진행하게 됩니다. 변호인 접견실은 따로 없기 때문에, 난민신청자대기실 내 심사실을 변호인 접견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 불회부결정에 관한 조력

불회부결정은 행정법상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당해 출입국·외국인청 등·외국인청장 등을 피고로 한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 사실을 출입국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이는 항고소송이 실제로 처분을 다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한편 사법적 구제를 법원에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행정청에 알려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 행정청이 일방적인 강제송환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²¹⁾

불회부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게 되면, 출입국·외국인청 등이 항소를 하면서, 송환대기실의 가혹한 처우를 고려하여 입국을 허가한 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는 경우도 있고, 확정판결까지 다투겠다며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약 1년여를 공항에서 머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에 이 같은 불합리를 막기 위해 1심 판결 선고 시에 집행정지결정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전화 032-740-7281~2, 팩스 032-740-7289.

21) 한편,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도 가능하지만, 집행정지가 입국을 허가해야 하는 단행적 성격을 갖는 어려움 때문인지 재판부가 본안 판단 전에 집행정지결정을 내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2) 처우에 관한 조력

송환대기실 구금기간의 장기화 자체의 위법성, 송환대기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을 다루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구금 자체를 다루기 위한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한편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현재의 구조상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송환될지 알기 어려우므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① 불회부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알리거나, ② 변호인 접견신청 등을 통해 사법적 구제로 이행될 가능성 및 이에 관한 기회보장이 반드시 되어야 함을 출입국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운수업자 즉 항공사에게도, 소를 제기할 예정이므로 일방당사자인 출입국의 송환지시만을 기계적으로 준수할 때, 또한 『출입국관리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이는 국제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며, 준법을 촉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3장

신청에 관한 조력Ⅱ

– 이의신청단계

제3장

신청에 관한 조력Ⅱ - 이의신청단계

1 개관

1차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 즉, 불인정결정을 받을 경우 이를 다투는 첫 번째 수단으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의신청’입니다.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및 난민불인정사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²²⁾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이를 심의하는 기구인 ‘난민위원회’에 회부하여 난민위원회에서 내린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냅니다.

2 구조적 문제점

이의신청제도는 실무상 건강하게 작동하는 기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난민위원회가 독립된 상설위원회로 운영되지 않고,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난민과의 난민조사관들이 모든 거점사무소에서 실시되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초조사를 담당하기에 실질적 의미의 재심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가추세에 있는 난민인정 신청수를 고려할 때 이의신청단계에서 위법한 1차 심사의 결정이 자동적으로 시정될 것을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난민위원회는 6번 회의를 열었고 4,542건을 심사하였는데, 회의

22) 이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21조 제1항, 제2항).

한 번에 평균 757건 심사한 셈입니다. 이의신청 심의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건 수는 2017년에 24건, 심사 완료 건수 대비하면 0.40%입니다.²³⁾ 이는 이의신청절차가 구제 절차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소송단계까지 진입하기 전 이의신청단계에서도 1차 심사 결정의 위법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난민신청자의 난민 사유를 정리하고, 입증을 보강하기 위한 조력의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3 이의신청 심의 절차

가. 이의신청서 작성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당해 처분청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불인정결정통지서를 수령할 때 이를 통지하는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것 또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구두로도 고지하여 주고, 그 자리에서 곧장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시키거나, 차후에 재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다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이 가능한 기간을 알릴 때 불인정결정서에는 한글과 영어로만 그와 같은 사정이 기재되어 있고, 구두로도 난민신청자의 언어로 정확히 고지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구제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23) 법무부 난민과, “2017년 난민관련 통계(출입국향, 난민신청현황 등)” 자료, 2018. 5. 9.

나. 난민위원회의 비공개 심의

(1) 난민과 난민심사관들의 심사

접수된 이의신청은 각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의 난민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이자 난민위원회의 간사기관인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에서 취합하여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변호사와 교수, 실국장급 공무원 등 15명들로 구성된 비상설기구인 난민위원회(『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제2항)에 회부됩니다.

난민과 소속 난민심사관들은 각 난민위원회에 심의될 사건들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어 난민위원회의 개최 전 위원들에게 송부합니다. 난민위원회는 직접 또는 난민심사관을 통하여(법 제21조 제4항) 사실조사를 할 수 있어, 실무상 난민과 소속 난민심사관들이 자율적으로 사실조사를 하거나, 보고서를 송부 받은 위원들이 보강조사를 요청하면 사실조사를 하는 형태로 추가조사를 거쳐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자료를 생산합니다.

(2)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상정, 위원회의 최종심의

난민위원회는 소위원회인 ‘분과위원회’와 전원위원회인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서, 4명 이상으로 구성된 각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우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해 인용, 기각, 인도적 체류와 같은 의견을 붙여 상정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물론이고 분과위원회에서도 이의신청인 또는 전문가를 직접 출석하게 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나(위 시행세칙 제14조) 사실상 심의 건수가 많이 적체되어, 적극적으로 이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1년에 4-6회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분과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기각의견일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위 시행세칙 제13조). 난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구체적인 표결 방법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분과위원회의 일치된 기각의견을

이유로 심의가 되지 않고, 추려진 일부 사건들만 ‘난민인정’ 표결, ‘인도적 체류’ 표결 순으로 순차 표결하여 지위를 얻지 못하면 이의신청기각결정의견을 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 법무부장관의 결정 및 통지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존중(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실무상 위원회의 의견과 동일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에 대한 통지는 난민인정서, 이의신청기각결정서, 이의신청기각결정서(동시에 인도적체류를 허가하는 문구 부기)의 3가지 문서형태로 교부하게 되고, 난민신청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각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이의신청심의결과를 내려 보내면, 각 청에서 이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한 난민신청자들에게 개별 통지하게 됩니다.

라. 불복방법

이의신청기각결정 및 인도적체류를 허가하는 문구가 부기된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통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 즉 1차 심사에 관한 불인정결정을 대상으로, 원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난민불인정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행정청에서 완전히 독립된 법원으로부터도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 중인 난민인정신청자의 처우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불복 중인 난민신청자 역시 『난민법』상 난민신청자이기에, 이의신청단계에 있는 난민신청자의 처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기타(G-1-5) 체류

자격을 이의신청에 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고, 취업허가 역시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1차 심사 시부터 ‘남용적 난민인정 신청’으로 보아 『난민법』이 규정한 처우를 보장하지 않은 채, 외국인등록증을 회수하여 출국명령을 내리는 사례들도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우 난민신청자가 심사를 정상적으로 받을 기회가 사실상 심각하게 제약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심의단계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이의신청단계 조력방법

가. 의견서 및 입증자료 제출, 난민신청자 또는 전문가의 진술

이의신청단계에서의 조력은, 1차 심사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조력과 유사하게, ① 난민인정신청에 관한 의견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형태, ② 난민신청자 본인 또는 전문가의 출석을 통해 진술하는 형태가 됩니다.

다만 ①의 경우 1차 심사 시와 달리 난민 사유 전반에 관한 재진술보다는, 불인정결정 사유서에 기재된 ‘난민불인정결정의 근거’들을 설득력 있게 반박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난민불인정결정에 반영된 난민심사관의 오해를 수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푸는 것에 주력합니다.

②의 경우 법에 따로 신청절차가 마련되진 않았으나, 위원장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억울해하는 난민신청자를 출석시키든지, 변호사 또는 활동가가 조력 중에 전문가로서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 불확정한 위원회 개최 시기를 고려한 신속한 제출의 필요성

다만,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언제 분과위원회 및 위원회에서 심의가 될지, 심의 일시 등은 실무상 공개되지 않습니다. 통상 기각될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결과가 통지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나, 결국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서 및 추가입증자료를 송부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능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제출하여 분과위원회에서부터 전원일치 기각결정이 나지 않고 신중한 심리를 요하여 위원회의 표결대상이 될 사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추가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판단할 위원회의 표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내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알 수 있나요?

A 실무상 심사관의 심사종료, 분과위원회의 시기 및 당해 회기 심의 여부, 전원위원회의 심의 여부 각 단계의 일정이 모두 불확실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알 수 없습니다. 법원단계에서의 심리기일, 선고기일의 통지에 준하는 형태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4장

소송에 관한 조력 - 난민소송

제4장

소송에 관한 조력 - 난민소송

앞서 '제2장 난민요건과 절차 개요' 부분에서 난민이 되기 위해서 누적적으로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에서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본안전 요건, 본안 요건으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어떠한 조력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특히 본안 요건 부분에서는 위 네 가지 난민요건을 판례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본안전 요건

가. 요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은 사람은 위 불인정결정 내지 기각결정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소기간). 이 때, 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처분인 난민불인정결정이 되고(대상적격), 피고는 원처분을 한 각급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이 됩니다(피고적격). 위 행정소송의 관할은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이 되고,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법원의 본원이 됩니다(관할).

나. 주요쟁점(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본안전 요건 중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입니다. 구체적 사례의 경우, 첫째는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도과한 경우입니다. 판례는 케냐에

서 출생한 루오족 여성이 입국한 후 일주일 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불인정결정을 받고, 이후 이의신청 과정까지 거쳤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관한 통지가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제소기간을 도과한 사례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청이 난민신청자에게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이의신청서상의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지 아니한 채, 난민신청인이 입국한 지 일주일 만에 작성한 난민인정신청서상의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로만 연락을 하였고, 위 연락이 닿지 않자 주소없음으로 파악하여 소재불명자로 처리하여 공시송달을 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²⁴⁾

위와 비슷한 취지에서 판례는 또한, 난민인정불허통지서를 발송하려 하였으나 전화연락도 안 되고 주소도 알 수가 없어 원고의 이메일로 통지한 후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한 사례에서, “『출입국관리법』 제91조 제2항의 공시송달은 ‘제1항에 따른 문서 등의 송부(직접 교부 내지 우송의 방법)에 의하여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가능한 것으로서, 송달할 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등을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공시송달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²⁵⁾

두 번째는, 난민인정신청자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및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에 표기된 한국어 및 영어로 된 불복방법에 대한 안내를 이해하지 못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난민인정신청자가 아랍어만을 사용하고 있어 한국어 및 영어로 된 통지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난민인정신청자가

24) 서울행정법원 2010. 10. 21. 선고 2009구합517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1. 선고 2010누38914 판결.

25) 서울고등법원 2012. 5. 8. 선고 2011누39945 판결.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통지서를 교부받았다면 그와 같은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제소기간의 도과로 각하하고 있습니다.²⁶⁾

2 본안 요건(난민요건 네 가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

본안 요건은 난민불인정결정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입니다. 처분의 적법 여부에는 실제적 위법 사유뿐만 아니라 절차적 위법 사유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난민요건 네 가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절차적 위법 사유 중 주로 문제가 되는 쟁점인 난민면접조사절차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 절차적 위법 사유(주요쟁점: 난민면접조사절차)

앞서 '제 3장 신청에 관한 조력'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난민인정신청자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법 제12조), 면접조사 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법 제13조),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통역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4조). 난민심사관은 면접조사를 한 뒤 난민면접조서를 작성하는데, 난민신청자가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면접을 종료한 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법 제15조). 위와 같이 작성된 난민면접조서는 난민소송에 있어서 높은 증명력을 가진 주요증거로서 취급됩니다.

그런데 위 난민면접과정에서의 난민신청자의 진술은 면접관의 성향이나 변호사의 조력 여부, 통역인의 언어수준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대리인은 면접조사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법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밝혀

26) 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단35502 판결.

이를 취소 사유로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또한, 위법한 절차로 작성된 난민면접조서의 증거가치를 탄핵하고 당사자신문 등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난민인정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직접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최근 난민면접에서 난민신청자의 진술을 왜곡하여 하지 않은 진술을 면접조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면접조서의 확인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례에서 “난민심사관으로서는 편견과 예단을 버리고 난민신청자가 충분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질의응답이 오고갈 수 있도록 면접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그에 따른 면접내용이 정확하고 왜곡 없이 조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면접절차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필수적으로 진행했어야 할 박해에 관한 질문이나 난민면접조서의 확인절차 등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진술조차 왜곡되어 면접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 이러한 난민면접조서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²⁷⁾

또한 판례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들이 함께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부모에 대해서만 난민면접조사를 실시하고 미성년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조사를 하지 않은 사례에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 제213조가 미성년자의 난민면접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채 단지 가족결합원칙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반자가 있는 미성년자에게는 독자적인 면접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부모가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독자적인 난민인정 사유가 없거나 별도의 난민면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족결합원칙에 따라 난민지위를 부여하라는 의미라고 보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면접실시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난민법이 규정한 면접절차를 아예 생략할 정도의 중대하고 급박한 어려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 자녀들에 대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²⁸⁾

27) 2017. 10.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294 판결, 2018. 6.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7245 판결.

28)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5559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13. 2015구단10691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와 같이

나. 실제적 위법 사유

앞선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난민협약』과 『난민법』의 난민 정의를 종합할 때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누적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으로 돌아가면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돌아갈 수가 없을 것, 둘째, 위해는 박해에 해당할 것, 셋째, 박해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민족,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것, 넷째 『난민협약』상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두려움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1)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국으로 돌아가면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가) 박해와 출국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한지 여부(불요, ‘현지 체재 중 난민’ 개념 인정)

위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난민신청자가 국적국에서 벗어나 외국에 있게 된 상태가 박해로 인한 것이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출국한 이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국적국으로 돌아가면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운 상태로 된 경우에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즉 박해와 출국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현지 체재 중에 난민이 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미얀마 출신의 난민신청자인 원고가 미얀마에서 민주화 항쟁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입국 후에도 정치활동단체인 ‘버마행동’에 가입하여 정치풍자극을 공연하는 등의 활동을 하여 미얀마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 사례에서, “원고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미얀마 또는 국내에서 정치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신청은 한국에서 경제적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척하면서도, 이론적으로는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

난민인정 신청을 한 남편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면접을 생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현지 체재 중 난민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박해와 출국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²⁹⁾ 실제로 이하에서 보듯이 현재의 난민인정실무 및 판례상 현지 '체재 중 난민'의 개념은 확고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나) 주관적 사정변경과 '현지 체재 중 난민'의 인정요건

외국에 있는 동안 정적에 의해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내전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객관적인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현지 체재 중 난민이 된 경우에는 이를 난민으로 보는 것에 이견이 없으나, 개종이나 반정부활동 등 주관적인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현지 체재 중 난민'이 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선의가 필요한지 여부(불요)

판례는 산업연수 등 경제적인 목적으로 입국하여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원고들의 사례에서, "원고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적극적인 반정부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안마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며, 4년 이상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정부활동을 해 온 원고들에 대하여 그 정치적 활동의 진정성을 쉽사리 부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자신의 행동 결과로서 대한민국 현지에서 체재 중 난민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³⁰⁾ 이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사정 변경을 만들어낸 경우, 즉 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두19539 판결.

30) 서울고등법원 2010. 11. 2. 선고 2009누26199 판결. 이에 최근 하급심 판례들은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실시합니다.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스스로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등 참조)(서울행정법원 2014. 4. 25. 선고 2013구합56713)."

2) 국적국에 있을 때 이미 표현했던 확신의 연장이어야 하는지 여부(불요)

판례는 이란 출신인 원고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과 한국 입국 후 이란의 부정선거를 비판하면서 한국과 이란 사이의 월드컵경기 최종 예선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장에서 ‘Free Iran’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고 위 시위 장면이 로이터즈(Reuters) 뉴스로 방영 되었던 사례에서, “비록 원고가 이란을 출국하기 전부터 반정부적 활동을 하였거나 이를 예정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원고에 대한 난민인정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주관적 사정변경에 의해 난민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정 변경, 즉 한국에 입국한 후에 개종이나 정치적인 활동이 국적국에 있을 때 이미 표현했던 확신의 연장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³¹⁾

3) 엄격한 입증을 하거나 엄격한 신빙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지 여부(엄격판단)

현지 체재 중 난민의 경우 선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 있기는 하나, 선의가 없는 경우 신빙성 평가에서 부정적인 판단을 내려 주장을 배척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위 버마행동 사례에서 판례는, “버마행동은 원고들이 이 사건 난민신청 신청을 할 무렵부터 당초 결성목적과는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주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1인 시위를 계속적으로 진행시키는 등 시위자들의 얼굴을 고의로 노출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중략) 원고들은 미얀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공포를 느껴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불법체류자로서 본국에 송환되면 더 이상 대한민국 내에서의 경제적 활동이 곤란해질 것이라는 염려에서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추단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선의가 없기 때문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현지 체재 중 난민을 주장하는 경우, 판례는 “난민신청자의 행위가 국적국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행위가 국적국 당국에 의하여 어떻게 판단될지 유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난민신청자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등을 하게 된

31) 서울행정법원 2011. 4. 29. 선고 2010구합37100 판결.

경위, 행위의 태양과 정도, 행위의 장소와 기간, 언론 등을 통한 보도 또는 공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국적국이 주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³²⁾

〈‘현지 체재 중 난민’에 대하여 국적국 당국이 주목하고 있다고 판단한 사례〉

순번	구체적 사례	사건번호
1	[파룬궁 수련자 사례]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파룬궁 수련 활동을 해야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른다 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8356
2	[미얀마 친(Chin)족의 사례] 입국한 후 친족 인권단체의 한국 지역위원회의 집행위원으로 일하면서 출판 및 정보 업무에 종사하고, 88항쟁 20주년 기념집회 및 사전 집회에 참석하여 피켓 시위 등을 하는 등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 정치적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경우에 미얀마 당국의 주목을 끌었다고 보았음.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7250
3	[미얀마 뮤지컬 감독 사례] 뮤지컬을 감독하는 모습이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사진과 함께 게재된 경우 그 활동 내역이 미얀마 정부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였음.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1624
4	[이란 기독교 개종자 사례] 원고의 주한이란대사관 앞에서의 시위 모습이 연합뉴스에 의해 촬영되어 유포된 점, 원고가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IFIR의 한국 지부 대표를 역임한 점, 원고의 난민 인정을 촉구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원고의 반(反)이란 정부 활동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이란 정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하였음.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713
5	[이란 기독교 개종자 사례] 이란인을 대상으로 한 전도 등 적극적인 신앙활동의 존재, 신앙활동의 공개 출판물 게재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공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음.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316

정리하자면, 판례는 원론적으로는 현지 체재 중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선의가 필요하다거나 국적국에 있을 때 이미 표현했던 확신의 연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함

32) 서울행정법원 2010. 6. 4. 선고 2009구합47293 판결.

니다. 하지만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국적국의 주목 가능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높게 설정하여 선의가 없는 경우 국적국 당국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거나 박해의 가능성에 대한 입증 정도를 높여 주관적 사정변경에 의한 현지 체재 중 난민의 인정에 있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위해는 박해에 해당할 것

난민신청자가 국적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받게 될 위해는 박해에 해당하여야 하고, 앞선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해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여야 하고, 위해가 비국가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가) ‘심각한 인권침해’, 즉 ‘박해’의 개념에 관하여

‘박해’의 개념과 관련하여 우리 판례의 태도는 분명치 않으나, 편람 제51조를 들면서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와 같은 중대한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 그 밖에도 일반적으로 문명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당한 차별, 고통, 불이익의 강요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도 하였고,³³⁾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³⁴⁾

위와 같은 판례의 박해의 개념에 관한 모호한 해석은, 무엇이 생명과 신체의 자유의 위협이 아니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러한 권리와 자유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러한 권리와 자유를 어느 정도로 침해할 경우 박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오히려 ‘박해’의 개념이 좁게 해석되어 적용되는 모순

33) 서울행정법원 2010. 10. 21. 선고 2010구합1725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5. 14. 선고 2007구합3210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5. 2. 선고 2007구합24746 판결.

34)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두3930 판결.

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란 출신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원고의 사례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란에서 기독교도로의 개종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개종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며 개종한 사람들의 경우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거나 여권 발급이 거절될 수 있는 등 차별을 받을 수 있어 기독교로의 개종이 정부의 탄압 대상인 것은 사실이나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도활동을 하지 않는 한 개종한 사실만으로는 형사기소되는 경우가 드물고 교육, 경제활동 등의 영역에서 다소간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난민협약』상의 박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의 중대한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³⁵⁾

위와 같은 주류적인 판례와 달리, 최근 하급심에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게 ‘종교 행사의 자유가 사실상 박탈된 것’도 박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넓게 본 사례가 다수 등장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됩니다.

“원고의 개종 사실이 이란 당국에 알려져 있지 않고, 원고가 이란에서 기독교도임을 숨기고 생활한다면 기독교 개종으로 인한 박해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종교 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데, 원고에게 기독교도임을 숨기고 생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원고로 하여금 종교의 자유를 사실상 포기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원고가 종교를 이유로 한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 그 자체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박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³⁶⁾

35) 서울행정법원 2008. 1. 9. 선고 2007구합2096 판결.

36)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0234, 위 판결은 고등법원에서 뒤집혔으나,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최근 다시 선고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감금당하거나 붙들린 일이 없이 살해의 협박만 당했던 경우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보기 힘들어 박해가 아니라고 한 판결³⁷⁾, 1차례 폭행을 당하였을 뿐 정부로부터 소환이나 체포, 구금을 당한 적이 없어 박해가 아니라고 한 판결³⁸⁾, 원고들의 경우 파룬궁 수련자라는 사실이 중국 정부에 알려진 이후에도 연행되어 조사를 받아가 수련 포기각서를 쓰고 풀려나거나 파룬궁 수련을 하지 말라는 협박 또는 파룬궁 서적을 압수 당하는 등에 그치거나,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가 다시 벌금의 대부분을 돌려받거나, 숙소 등에서 몰래 파룬궁 수련을 계속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박해가 아니라는 판결³⁹⁾, (마오이스트들과) 같이 활동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전단지를 받았다고 하나, 마오이스트와 마주치거나 직접적인 위협은 받은 적이 없으므로 박해를 당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⁴⁰⁾, 미얀마 정부가 불교도에 대해 유무형의 우대정책을 펴고 있으며, 기독교인 및 소수민족인 친족에 대하여 사실상의 차별대우를 행하고 있다고 보이나 미얀마 정부가 교회에서 주일예배와 같은 통상적인 종교활동에는 별다른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종교활동의 제한이 박해의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⁴¹⁾, 파룬궁에 관한 청원을 하러 가는 도중 경찰에 붙잡혀 학교에 하루 동안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것에 불과한 것은 박해가 아니라는 판결⁴²⁾,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를 믿는 원고는) 전통신앙 신봉자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바 없으므로 박해가 없다는 판결⁴³⁾, 이란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은 정부의 탄압대상인 것이 사실이나 공개적으로 이슬람교를 배신한다고 선언하거나 모독하지 않는 한 사형당하지 않고 또한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도활동을 하지 않는 한 개종한 사실만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드문 점, 이란에서 개종자들에 대해 교육, 경제활동 등의 영역에서 다소간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난민협약』상의 박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박해가 아니라는 판결⁴⁴⁾, 예멘에서 이슬람교를 비난하거나,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

37) 서울행정법원 2010. 7. 23. 선고 2009구합54932.

38) 서울행정법원 2010. 5. 7. 선고 2009구합47477 판결.

39) 서울행정법원 2010. 2. 5. 선고 2009구합18356 판결.

40) 서울행정법원 2010. 9. 2. 선고 2009구합47576 판결.

41) 서울행정법원 2010. 9. 9. 선고 2009구합47187 판결.

42) 서울행정법원 2010. 2. 17. 선고 2009구합25484 판결.

43) 서울행정법원 2010. 8. 20. 선고 2010구합21792 판결.

는 것은 배교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경우가 없고, 배교행위를 철회하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박해의 위험이 없다는 판결⁴⁵⁾ 등이 있습니다.

한편 위와 달리, 케냐 출신 원고의 사례에서는, 남편의 동생 등과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와 결혼을 강요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고,⁴⁶⁾ 카메룬 출신의 원고의 사례에서 “자유의사에 따른 결혼을 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출산 및 장기간의 양육의무를 지는 등 자유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보인다.”고 한 판결⁴⁷⁾, “여성 할례는 의료목적이 아닌 전통적, 문화적, 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⁴⁸⁾도 있습니다.

(나)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위해의 경우 국가의 보호가 부재할 것

1) 국적국의 보호 의사 또는 능력의 부재

비국가행위자가 위해의 주체인 경우, ‘대체적 보호’라는 『난민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국적국이 보호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인에 의한 박해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고의로 묵인되거나 국가기관이 보호를 제공할 현실적인 능력이 없어 침해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위해의 경우에도 이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⁴⁹⁾

44) 서울행정법원 2009. 11. 27. 선고 2009구합30202 판결.

45) 서울행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단35298 판결.

46) 서울행정법원 2010. 10. 21. 선고 2009구합51742 판결.

47) 서울행정법원 2011. 10. 27. 선고 2011구합7267 판결.

48)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원심 파기환송).

49) 서울행정법원 2010. 10. 28. 선고 2009구합54352 판결.

그러나 판례는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원고가 국적국의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부를 자세히 따져보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국적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부 및 의회가 구성되어 어느 정도 정국이 안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보호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거나⁵⁰⁾, 국적국이 과거 유사한 박해 사안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보호가 있다거나⁵¹⁾, 국적국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정부의 보호가 있다고 보아⁵²⁾,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대안적 국내 피신의 부재

앞선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적국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박해를 받을 실제적인 위험이 있으나 다른 곳에서는 위 박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대체적(代替的)인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판례는 대안적 국내피신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대안지역에 안전하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하고, 그 지역에서 새로운 박해 가능성이 염려되어서는 안 되며, 대안지역에서 제공하는 보호가 『난민협약』이 제공하는 수준 이상으로서 어느 정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⁵³⁾ 그러나 개별 사례의 구체적 판단에 있어서는, 대안지역에서 새로운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 여부나 대안지역이 제공하는 보호가 『난민협약』이 제공하는 수준 이상으로 원고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단순히 국적국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지 여부로만 판단하여 대안적 국내 피신이 가능하다고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⁵⁴⁾

다만, 정부가 박해의 주체인 경우, 내전 등으로 실효적 점령지역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결국 박해의 위험은 국가 전역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대안적 국내 피신을 고려하

50) 서울행정법원 2010. 9. 2. 선고 2009구합47576 판결.

51) 서울행정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구합21068 판결.

52) 서울행정법원 2010. 8. 20. 선고 2010구합21792 판결.

53) 서울행정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구합4920 판결.

54) 서울행정법원 2010. 7. 16. 선고 2009구합2192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4. 29. 선고 2009구합4720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4. 8. 선고 2009구합4961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2. 선고 2009구합4757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6. 11. 선고 2010구합13135 판결.

기는 어렵습니다. 대안적 국내 피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실효적 점령 지역이 제한되거나 박해의 주체가 사인인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해의 주체가 비록 사인이라 하더라도 박해의 주체의 물리적 이동이 제한되어 있지 않는 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더라도 안전을 보장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향적 판시⁵⁵⁾도 있어, 원고의 주장을 자세히 청취하여 개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원고가 과연 타지역으로 피신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원인을 상세히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박해는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사유와 관련이 있을 것

(가) 국적 또는 민족,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1) 국적 또는 민족,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또는 민족, 인종과 관련하여, 판례는 “『난민협약』상의 원인에서 비롯된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처한 위험이 전쟁이라는 상황 자체에서 비롯된 위험에 불과하다면 신청인이 『난민협약』에 열거된 사회적, 정치적 지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없다.”⁵⁶⁾, “남편과 할머니가 살해되었는데, 이는 내전 과정에서 반군주둔지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고통이므로 협약상 다섯 가지 사유에 의한 박해가 아니다.”⁵⁷⁾, “바탈로족이 우간다 정부로부터 여권발급을 거부당하고, 토지 약탈당하고,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채용도 거부당하고, 국가 장학금에서의 배제되는 등과 같은 민족적인 차별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특별히 우간다 정부로부터 주목을 받아 개인적인 박해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⁵⁸⁾고 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난민

55)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누65786 “또한 NPP와 NDC는 비록 그 주요 지지지역이 나뉘어져 있으나 반군과 정부군, 혹은 적대적 부족 상호 간과 같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정치적 실체가 아니라 상호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조직이므로 NPP 지지지역 내에서도 NDC 지지세력에 의한 박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NDC 정당의 설립 및 역사에 비추어 보면 군관민 등 사회 저변에 널리 세력을 가지고 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바, 이러한 조직의 박해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고 하여 원고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가나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박해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56) 서울행정법원 2010. 4. 8. 선고 2009구합18512 판결.

57) 서울행정법원 2010. 7. 16. 선고 2009구합21925 판결.

58) 서울행정법원 2010. 10. 14. 선고 2010구합10518 판결.

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겪는 인권침해 이상의 침해를 받아야만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관련하여 판례는, “법무부 난민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과정에서 기독교 개종경위와 성경 내용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 다소 부족한 대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까지는 원고가 제대로 된 종교교육을 받은 바 없었고, 통역상의 난점과 한계 등이 있었으며, 원고가 한국에 온 후 현재까지 기독교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고 세례까지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⁵⁹⁾고 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고 하나, (중략) 특별히 기독교 교리를 공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이유로 개종으로 인한 난민 주장의 신빙성을 부인한 사례⁶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체포, 구금된 파룬궁 수련자가 수련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하면 중국 당국이 풀어주므로 난민인정을 함에 있어서 구금 등 박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파룬궁 수련 및 활동을 포기하지 않을 헌신적 수련자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⁶¹⁾고 한 판례가 있는가 하면, “종교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종교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중략) 무슬림이라고 기재된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 기독교인임을 숨기고 생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원고로 하여금 종교의 자유를 일정 부분 포기하게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⁶²⁾라는 판례도 있고, “파룬궁은 심신수련법에 불과하고 종교적 색채를 띠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난민협약』상 박해의 사유로 종교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판례⁶³⁾도 있습니다.

2)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판례는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실시하거나 인정사례가 왜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으로 포섭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남편이

59) 서울행정법원 2011. 4. 29. 선고 2010구합37100 판결.

60) 서울행정법원 2010. 8. 12. 선고 2010구합2661 판결.

61) 서울행정법원 2010. 2. 5. 선고 2009구합1835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2. 5. 선고 2009구합25453 판결.

62) 서울행정법원 2010. 6. 4. 선고 2009구합30141 판결.

63) 서울행정법원 2010. 2. 5. 선고 2009구합25453 판결.

사망하고 나면 남편의 형제나 시가 식구 등과 성관계와 결혼을 해야 하는 관습을 따라야 하는 케냐 루오족 출신 원고⁶⁴⁾, 전통관습에 따라 족장이 될 아들을 강제로 출산해야 하는 마케룬 바코시부족의 원고⁶⁵⁾, 여성할례를 받아야 하는 원고⁶⁶⁾ 등에 대하여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임을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으로 인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나, 나이지리아 출신인 동성애자 원고에 대하여 “『난민협약』의 취지상 박해 받을 우려로 인하여 자신의 성정체성을 외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자체를 박해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⁶⁷⁾

(나) 관련성(엄격한 관련성 요구)

관련성의 경우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문제되지 않으나, 다섯 가지 협약 사유와 무관한 주장을 배척하는 경우에 주로 실시되게 됩니다. 판례는 주로 종교적인 이유로 인하여 일정한 주술적인 행동을 거부하고, 그러한 거부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는 사례 등에서, 박해와 『난민협약』상 사유 사이의 직접적이고 엄격한 관련성을 요구하면서, 이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있어서 판례는 “(기독교를 믿는 나이지리아인이 전통신앙 숭배자로부터 박해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나이지리아의 치안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살해될 우려가 있는 점은 협약상 사유에 의한 것 아니다”⁶⁸⁾, “(수니파 원고가 자신의 큰아버지가 시아파에 의하여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로 인해 시아파들에게 사적인 복수를 당하는 등 박해를 당할 것이 두렵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종교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목격자를 제거하는 등 후환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를 살해하려는 것인데, 종교 간의 갈등이 위 살인사건의 계기가 되었다고는 하나 그와 같은 간접적이고 비본질적인 관련성만으로는 원고가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⁶⁹⁾, “스

64) 서울행정법원 2010. 10. 21. 선고 2009구합51742 판결.

65) 서울행정법원 2011. 10. 27. 선고 2011구합7267 판결.

66)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원심 파기환송).

67) 서울행정법원 2012. 2. 9. 선고 2010구합22952 판결.

68) 서울행정법원 2010. 8. 20. 선고 2010구합21792 판결.

리랑카에서 싱할라 갱들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 받은 무슬림의 경우 단순히 금원을 강탈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협약상의 다섯 가지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다.”⁷⁰⁾라고 하였습니다.

(4) 박해에 대한 두려움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것

(가) 합리적인 근거와 입증(높은 입증 정도를 적용)

판례는 원론적으로는 ‘박해가 일어날 수 있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증이 되었다고 본다고 하고는 있으나,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입증 정도를 적용하여 박해의 실제적인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높은 입증 정도를 적용한 판례들〉

순번	구체적 사례	사건번호
1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차별하는 미얀마 출신의 기독교 목사인 난민신청자가 버마족 승려를 기독교로 개종시킨 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로 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지만, 승려를 개종시킨 사건은 10년 전의 일이고 난민신청자는 미얀마에서 마을 주민들로부터 1차례 폭행을 당했을 뿐이고 미얀마 정부로부터 소환이나 체포, 구금을 당한 적이 없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7477
2	중국 파룬궁 수련생인 난민신청자가 파룬궁 수련과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 사실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체포된 적이 있고 아버지의 고발로 체포될 우려가 있어 숨어 지내기도 하였으며 공산당 탈당 성명을 발표하였고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파룬궁 수련을 계속 하면서 사람들의 공산당 탈당을 종용하는 활동을 했지만, 중국에서 체포 후 풀려난 뒤 별다른 박해가 없었고 공산당 탈당 성명을 발표한 이후에도 중국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한국에서의 파룬궁 활동도 보조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5453
3	미얀마 출신의 난민신청자는 (2007년 9월 미얀마 샤프란 시위에) 3차례 가담하여 승려들을 따라 구호를 외치고 거리를 행진하는 등으로 시위에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7187

69) 서울행정법원 2010. 10. 28. 선고 2009구합54352 판결.

70) 서울행정법원 2010. 11. 11. 선고 2010구합27059 판결.

순번	구체적 사례	사건번호
	참여했다가 시위 참가자들의 상당수가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보고 한국으로 피신하였지만,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체포, 수배, 조사 받은 적이 없는 경우	
4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인 파키스탄 북서변경주 출신의 난민신청자는 탈레반에 관한 정보를 파키스탄 정부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집이 폭파가 되는 등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난민신청자는 탈레반으로부터 납치된 적이 없고 원고의 집을 탈레반이 폭파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9619
5	라이베리아 출신 난민신청자가 라이베리아 내전 당시 반군인 NPFL(National Patriotic Front of Liberia)에 협력 요구를 거부한 것 때문에 나중에 정권을 잡은 NPFL 사람들에 의해 집이 폭파되고 폭행을 당하고 체포된 적이 있고 당시에도 NPFL 출신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NPFL의 지도자였던 찰스 테일러가 전범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NPFL의 구성원들이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 힘든 경우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5675

(나) 입증방식의 특수성과 신빙성 판단

1) 신빙성 판단의 원칙

『유엔난민기구 편람』에 따르면, 입증책임은 난민인정을 구하는 난민신청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의심스러울 때에는 난민신청자의 이익으로(the benefit of the doubt)’라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하고, 난민심사관은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의심스러울 때는 난민신청자의 이익으로라는 원칙보다 입증책임은 난민신청자에게 있다는 법리가 우세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입증방법에 있어서도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 반드시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일관되게 “증거를 쉽게 입수할 수 없는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참조),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

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엇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적·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한 언어감각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진술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신빙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참조).⁷¹⁾ 다만, 그 진술은 그 진술만으로도 난민신청인의 주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중요한 사실에 관한 누락이나 생략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그 자체로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다른 증거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14269 판결).”는 법리를 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특히, 실무상 출입국·외국인청 등은 난민신청자의 면접조사를 근거로 주로 ‘입증이 없다’(입증 정도), ‘믿을 수 없다’(입증방법 및 신빙성 판단), 사인에 의한 박해의 경우 ‘대안적 국내피신의 가능성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 및 ‘국가의 보호의사 및 능력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여 불인정결정을 하거나, ‘성공적으로 출국하였으므로 주목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여 현지 체재 중 난민에 관한 법리를 모든 난민에게 적용하거나, ‘난민인정 신청의 시기의 지연’, ‘미등록체류상태의 신청’ 등의 간접사실만으로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 모두를 부인하거나 불인정결정을 하거나, 구체적인 국적국의 국가정황을 평가하지 않고, 위와 같은 근거를 들거나 ‘과거 박해사건 발생 시기가 오래됨’, ‘과거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 등을 근거로 미래의 박해의 위험에 대한 합리적 발생가능성이 부존재한다고 쉽사리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판례도 이를 승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구체적인 간접사실에 대한 다툼이 필요합니다.

71) 난민의 요건은 신청을 제출한 사람이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칙이다. 그러나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 원인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므로, 그 증명의 정도에서 난민에게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만 수긍할 수 있으면 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주장사실 자체로서 일관성과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과 상반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이 신뢰성 있는 것으로 생각되면, 그 주장에 반하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도 신청인에게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benefit of the doubt)을 부여하여야 한다(서울행법 2008. 2. 20, 선고, 2007구합22115, 판결 : 확정).

판례는 신빙성 판단의 기준으로 주로 ‘진술의 일관성’, ‘진술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의 부합성’, ‘진술의 설득력과 구체성’을 들고 있습니다.⁷²⁾ 아래에서는 판례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신빙성 판단의 기준

‘진술의 일관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① 신청 시나 면담 시, 이의신청 시에는 주장하지 않다가 나중에 소송에 들어와서 주장하는 경우⁷³⁾나 ② 박해와 관련된 중요사실에 관한 진술들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⁷⁴⁾ 신빙성을 부정하였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의 부합성’에 관하여 판례는, ①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② 진술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다른 경우에 신빙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진술의 설득력과 구체성’에 관하여 판례는, 박해를 받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관하여 막연히 국적국이 평화롭지 않았다는 등 ①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② 다른 진술로 비추어 볼 때 난민인정 신청의 핵심 진술이 설득력이 없는 경우⁷⁵⁾, ③ 주장에 의하더라도 난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⁷⁶⁾, ④ 진술 자체의 합리성이 없는 경우 혹은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 박해를 받게 된 직접적인 이유인 정치적 견해와 관련하여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선거시기가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한다거나⁷⁷⁾, 6개월 이상 거주한 일정 지역의 지리에 관하여 거의 알지 못하고,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반군의 명칭도 다르게 진술하는 등⁷⁸⁾ ⑤ 일정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에 신빙성을 부정하였습니다.

72) 서울행정법원 2010. 6. 4. 선고 2009구합3014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21. 선고 2009구합51742 판결.

73) 서울행정법원 2010. 4. 8. 선고 2009구합4719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 20. 선고 2009구합2169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3. 18. 선고 2009구합30035 판결.

74) 서울행정법원 2010. 4. 2. 선고 2009구합4869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16. 선고 2009구합2192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16. 선고 2009구합2192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4. 20. 선고 2009구합27572 판결.

75) “CNA를 도왔다고 하나 CNA구성원들을 본 적은 없고, 돈을 건어 친척을 통해 2년간 돈을 지원하였다고 하나 친척이 CNA에 돈을 주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친척은 아무런 탄압을 받지 않고 지내다가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원고가 집을 나온 뒤 군 당국은 원고를 찾으려 한 차례 방문해서 질문한 뒤 돌아갔다”(서울행정법원 2010. 6. 11. 선고 2009구합47545 판결).

76) 서울행정법원 2010. 7. 22. 선고 2009구합51063 판결.

77) 서울행정법원 2010. 9. 2. 선고 2009구합55744 판결.

78) 서울행정법원 2010. 7. 16. 선고 2009구합21925 판결.

3) 신빙성 판단의 대상(난민요건과 무관한 진술 내용까지도 포함)

신빙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난민신청자의 진술'은 난민요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진술을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실제로 입국하게 된 경위는 라이베리아 대사관의 추천이나 신청 시 나이지리아 대사관의 추천으로 입국했다고 진술하였다거나⁷⁹⁾, 여권발행의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⁸⁰⁾, 학교 입학연도 및 가족사항에 관한 진술의 불일치⁸¹⁾ 등 난민신청자의 난민요건과는 무관한 진술 내용의 불일치를 이유로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판례는, 난민요건과 무관한 사정, 특히 난민신청자의 체류와 입국, 출국 등과 관련한 사정에 기초하여 신빙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민요건과 무관한 사유를 가지고 신빙성을 부인한 사례〉

순번	구체적 사례	사건번호
1	경제적인 이유로 입국, 체류하였다고 진술하거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부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9183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7231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7572
2	입국하여 바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지 않고 불법체류를 하다가 뒤늦게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신빙성을 부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8431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7156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722
3	다른 나라에서 체류하다가 넘어 왔는데, 다른 국가에서는 난민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 신빙성을 부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7200
4	불법체류자로 단속이 되어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후에 비로소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신빙성을 부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9183
5	국적국이나 제3국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부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3670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862

79) 서울행정법원 2010. 1. 13. 선고 2009구합30028 판결.

80) 서울행정법원 2010. 6. 18. 선고 2009구합29400 판결.

81) 서울행정법원 2010. 6. 18. 선고 2009구합21918 판결.

순번	구체적 사례	사건번호
6	원래의 입국 목적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부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7413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0134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8158 ⁸²⁾
7	국적국의 가족에게 송금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부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8424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1925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0431
8	대사관에서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부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5484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3874
9	외국에서 입국거부 및 강제송환된 후 한국에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부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1918
10	난민인정 신청 당시 불법체류 단속을 의식하여 현 근무처의 상호와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고 본인의 휴대폰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부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8428
11	유효한 여권으로 정상적으로 국적국을 떠났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부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4167

3 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 및 관련 문제

판례는 난민불인정결정의 위법성 판단시점에 관하여 일반 행정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분시절’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가정황자료는 ‘처분시점’에서의 박해의 위험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제출해야 하고, 처분 후 국내에서의 적극적 활동(정치, 종교 등)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처분시점의 박해의 위험을 추단하는 사실자료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실무상 처분시점 ‘이후’의 원고의 국내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위험이 증가한 경우, ‘사정변경’의 존재를 주장하며 재신청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82) 국제어학원에서 수강을 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연수 체류자격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실제로는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에 취업하였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부정한 사례.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출국 전과 달리 ‘출국 이후부터 처분시점 전까지’ 원고의 국적국의 국가정황이 전향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는 원고가 출국시점에 박해를 피해 피신한 것이 어느 정도 입증되는 경우, ‘박해가능성이 명백히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별도로 입증되지 않는 한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박해가능성을 쉽사리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⁸³⁾

4 입증자료

가. 당사자신문(또는 원고진술서)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입증의 핵심적인 자료가 되는 난민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신문은 주된 입증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능한 한 당사자신문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의 성향 및 자신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문사항은 법정 통역인의 자질을 감안하여 간단히 통역하기 쉬운 단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당사자신문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원고로 하여금 상세하고, 설득력 있는 장문의 본인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증인신문(또는 제3자진술서)

난민사건의 경우, 당사자신문 외에 증인신문까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존재하고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를 주장하는 경우 같은 당에서 활동하였던 당원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거나, 종교로 인한 박해를 주장하는 경우 종교로 인한 박해의 현황을 진술해줄 수 있는 현지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83) 서울행정법원 2018. 4. 6. 선고 2017구단13847 “에티오피아 정부가 2018년 1월경 정치범을 석방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실제로 반정부인사가 풀려났다는 언론보도가 있기는 하나(을 제4, 5, 6호증 참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반정부인사에 대한 박해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있습니다. 또한,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도, 원고의 주장사실과 부합하는 제3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서증

(1) 처분관계 서류(난민면접조서의 증명력)

원고가 제출할 수 있는 처분관계 서류에는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및 사유서, 이의신청기각결정서, 난민면접조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난민면접조서는 통상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피고 측의 유리한 증거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난민면접조서의 과정에서 박해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조사되지 않았다거나, 통역의 문제로 진술이 왜곡 기재된 경우,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제대로 읽고 통역하여 확인시켜주지 않은 경우 등 문제되는 경우에는, 조서의 기재 내용을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⁸⁴⁾ 조서의 기재가 심히 왜곡된 경우,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재판부의 결정을 구할 수 있으며, 절차적 위법 사유를 근거로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⁸⁵⁾

(2) 당사자제출 서류

난민신청자들이 박해와 관련된 체포영장, 증명서 등 각종공문서 및 사문서, 영상물, 진술서 등 서증을 통하여 그 주장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위 증거의 내용, 박해와의 관련성, 습득 경위, 작성주체, 진위 여부 등이 문제가 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공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판례는, “반드시 엄격한 방법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84) 난민면접조사과정이 영상녹화 또는 음성녹음 되어 있는 경우,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도록 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당해 사건 외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85) 서울행정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구단4294 판결.

만, 적어도 문서의 형식과 내용, 취득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외국의 공문서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피고가 제출한 공문서의 진정성립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⁸⁶⁾

(3) 국가정황정보(COI; Contry of Origin Information) 등 객관적 정보에 관한 서류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는 국가정황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정황정보는 원고의 주장과 적절한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서 정보의 원천인 작성의 주체가 신뢰할 만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또한,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가능한 최신의 정보이어야 합니다. 주로 권위 있는 국가보고서, 국제인권기구의 보고서, 기타 각종 보고서 및 뉴스기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국어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의 경우 번역문 또는 발췌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밖에도 원고의 주장이 알려진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등의 캡처 사진, 통상적인 사진, 해외 판결, 구글 지도 등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사실조회 신청

국가정황정보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국적국의 박해 상황에 관한 알려진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한 경우, 유엔난민기구나 국적국 대사관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6)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따르면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위 규정은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도 준용되므로, 외국의 공문서라고 제출한 문서가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한 문서의 방식이 외관상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방식에 합치되어야 하고, 문서의 취지로부터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공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외국의 공문서의 경우, 반드시 엄격한 방법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문서의 형식과 내용, 취득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외국의 공문서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14269 판결)

(1)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주로 원고의 주장사실과 관련된 적절한 선례가 없고, 재판부가 원고의 진술과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 난민 여부를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더하여 국적국의 상황에 관한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견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유엔난민기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2) 국적국 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난민의 보호를 위하여 당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국적국에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한민국 내 국적국 대사관이나 정부기관에 법원이 사실조회를 하거나, 피고가 임의로 사실확인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법 제11조에 의하여 피고는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국적국 내 대한민국 대사관에 관련 국가정황정보, 혹은 특정 문서에 대한 진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얻게 된 자료를 제출하기도 합니다.⁸⁷⁾⁸⁸⁾ 국적국이 아닌 국적국 내의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한 사실확인이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대사관을 통한 정보의 경우 ① 국적국 정부와의 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균형적인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고, ② 국적국의 직원들이 대한민국 대사관에 근무를 하거나 하여 원고나 원고의 가족에게 위해가 갈 수 있으므로 법 제17조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③ 질의 내용에 따라서는 정확하지 않은 편향된 내용의 답변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사관을 통한 정보의 경우, 작성 주체의 특성 및 정보가 양방향적으로 구성되기 어려운 환경을 고려하여 정보의 객관적 신뢰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87) 법 제1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또는 사실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88) 원고가 제출한 서증의 경우, 위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재판부가 국적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것을 요청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5 통역

난민소송의 원고는 난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당해 난민신청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를 대동 통역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동 통역인의 자질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어 법원에서 통역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특히 원고가 박해의 주체를 국적국 정부라고 주장하는 사례 등에 있어서는 원고와 동일한 국적의 통역인을 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통역인 중 상당수는 통역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은 위와 같은 통역의 자질을 감안하여 통역인이 간접화법을 사용하거나 진술을 요약하거나 임의로 바꾸어 전달하지 않도록 신문사항을 간결하게 작성하고, 주어, 술어, 시제 등을 명확하게 하여 신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능한 평이한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고 다의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통역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형사재판절차에 관한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처리 예규’ 제14조89)의 규정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상소

원고 패소의 경우,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1심 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법 제5조 제6호에 근거하여 행정소송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관계지침에 따라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것을 증명(소제기증명원, 소계속증명원 등)하여 기타(G-1-5) 체류자격

89)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처리 예규』 제14조 ① 외국인 피고인이 통역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피신문자가 법정에는 동일한 내용의 신문과 통역을 다시 한 번 시행하게 하고, 피신문자가 재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역인에게 녹음대를 보내 해당 부분을 다시 통역하게 하여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통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도의 통역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으로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고, 재신청한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출국명령의 출국기한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당사자 본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항소심에서 당사자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고심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경우, 납부한 인지대의 일부를 원고의 계좌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상고심까지 모두 거쳤으나, 결국 원고 패소로 확정된 경우, 패소한 원고에 대하여 출국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제5장

체류, 퇴거, 구금에 관한 조력

제5장

체류, 퇴거, 구금에 관한 조력

1 난민신청자의 체류

가. 난민신청자의 체류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습니다(법 제3조). 나아가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응 『난민협약』상 난민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설령 체제국에서 난민인정결정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난민인정절차 또는 불인정결정에 대한 소송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 신청이 명백히 남용적인 것임이 당국에 의해 규명되지 않는 한,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가 허용되어야 합니다.⁹⁰⁾

『난민법』에서는 난민신청자를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에 대하여 ①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②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5조 제6

90) 유엔난민기구의 편람 제192항(vii),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선고 2013누52368 판결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난민협약』상 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인정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응 『난민협약』상 난민이라고 보아야하므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그 국가에서 체류가 허용되어야 하고, 난민인정결정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지는 아니하더라도 난민신청자의 공박한 처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보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항에서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하여 난민신청자의 체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이하 규정에 따라 한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난민신청자는 기타(G-1-5,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체류자격 유형에 해당됩니다. 난민인정 신청 시 받은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가지고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면 G-1으로 체류자격을 부여 받게 됩니다.



난민신청자로서 외국인등록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①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관할출입국에 가면 비치되어 있음)
 - ② 여권(여권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사관에 신고한 여권분실신고 서류가 있어야 함. 대사관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사본을 지참 후 출입국 관리 공무원과 면담 요)
 - ③ 표준규격사진 1매
 - ④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 ⑤ 체류지 입증서류
 - ⑥ 수수료 13만 원(체류자격 변경 10만 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 원(2018기준))
- ※ 체류지 입증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유엔 난민기구 등의 주거확인서 등이 가능합니다. 거주지가 없어서 지인의 주소를 적어야 할 경우에는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와 지인의 거주주소 제공사실확인서를 함

께 가져가야 합니다.

* 하이코리아>민원서식>체류관련>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http://www.hikorea.go.kr/pt/DownLoadTempPopupR_kr.Pt)에서 다운로드 가능)

Q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① 외국인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② 외국인등록증이 손상되어 못 쓰게 된 때, ③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란이 부족한 때, ④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에 대한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① 외국인등록신청서(재발급 받으려는 사유 소명)
- ② 천연색 사진(3X4CM) 1매
- ② 수수료

Q 체류기간은 어떻게 연장하나요?

A 난민인정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의 확정시(소송 포함)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6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체류만료일이 다가오면, 체류기간만료 예고통지 우편물이 송달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체류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체류만료일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체류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연장을 해주지 않는 사례도 있으므로 약 2주 전 정도에 가는 것이 적당합니다.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1년 이상 기간이 경과할 경우 구금될 수도 있으니 체류기간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Q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A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관할 출입국 비치), 여권,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Q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으면 체류연장이 안 되나요?

A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직후 또는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은 직후 체류연장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고,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을 준비 중인데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죠?

A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가 체류연장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소제기접수증명원을 발급 받은 후 체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체류를 연장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송 진행 중 체류를 연장하려면 소송이 계속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관련 증명 서류를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계속증명원 양식은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재판진행내역에 관한 페이지를 출력하여 첨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간혹 출력물을 지참하였을 때 연장신청을 반려하고 법원에서 소송계속증명원을 발급받아 오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있음).

Q 주소가 변경됐어요. 어디에 알려야 하죠?

A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 및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유엔난민기구 등의 주거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 체류지의 시·군·구나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 등 또는 출장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 계약 당사자의 확인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면 담당 공무원이 외국인등록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체류지 변경신고필인을 찍어 신고인에게 교부합니다. 체류지 변경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자녀가 태어난 경우 외국인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아기여권, 여권용 사진 1장, 병원 발급 출생증명서 1부, 부모 외국인등록증, 체류지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유엔난민기구 등의 주거확인서 등), 수수료를 지참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가서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난민인정자의 자녀일 경우 F-1, 인도적체류자의 자녀일 경우 G-1-12 체류자격으로 등록이 됩니다. 난민신청자의 자녀일 경우, 자녀도 난민인정 신청을 하며, G-1-5 체류자격으로 등록이 됩니다.

Q 난민신청자도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A 난민신청자도 외국인등록증상 체류허가기간 내에서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비자 없이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과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해외에 있다가 난민면접 연락을 3회 받지 못할 경우 난민인정 신청이 철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와 구금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46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

강제퇴거명령서
DEPORTATION ORDER

(번호)

성명 Name as Filed	성	성	성	성	성
태생일 Date of Birth	년	월	일	시	분
출생지 Country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직업 Occupation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입국 이유(적용 조항) Reason for Deportation (Applicable Provisions)					
입국방법 Mode of Admission					
출생지 Country of Origin					

1.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46 of the Immigration Act, the deportation order is issued to the person above.

2. 학은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person who has an objection to the above deportation may file an objection with the Minister of Justice within 7 days after receipt of the deportation order or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r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deportation order.
* You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nline (www.smgps.go.kr) and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on the internet (e-court.go.kr).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학은**

CHIEF, ○○IMMIGRATION OFFICE

장관 Minister	장관 Minister	장관 Minister
장관 Minister	장관 Minister	장관 Minister

2018. 03. 01
출입국관리청장(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46조 제 1항 제 2호에 따른 보호명령서

보호명령서
(DETENTION ORDER)

(번호)

성명 Name as Filed	성	성	성	성	성
태생일 Date of Birth	년	월	일	시	분
출생지 Country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직업 Occupation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학은 위와 같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 1항 제 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명령서를 발합니다. 발령받은 날 혹은 그 전후에 입국한 자로서, 학은의 보호명령서에 따라 구금하여야 하는 입국후 입국자에 대하여 학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ursuant to Article 46, Article 50 of the Immigration Act, the above-named person is hereby ordered to be detained as specified below. A person detained in fact is hereby legal representative, spouse, blood relative, sibling or family member on nuclear level, may file an objection against the detention with the Minister of Justice.

발령의 사유 Reason for Detention	발령 장소 Place of Detention	보호 기간 Period of Detention	비고 Remarks
		월	일
		월	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학은**

CHIEF, ○○IMMIGRATION OFFICE

장관 Minister	장관 Minister	장관 Minister
장관 Minister	장관 Minister	장관 Minister

2018. 03. 01
출입국관리청장(인)

[강제퇴거명령서 및 보호명령서 양식]

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각호1)에 해당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 등이 발생한 경

- 91)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내립니다. 간혹 강제퇴거명령서가 집행되어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명백하게 반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지만,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라 보호명령서를 발부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구금)⁹²⁾하고 있습니다.

-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또는 제1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幫助)한 사람
 - 92)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는 ‘수용’의 형식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로, 사실상 ‘구금’의 성격을 가지며, 국제법적 기준에 따르면 인신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detention)에 해당합니다. 유엔난민기구의 구금지침(Detention Guideline)에 따르면 구금을 ‘비호신청인의 자유의 박탈이나 폐쇄된 장소에 갇혀 자의로 떠나는 게 허락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교도소나 특별한 의도로 건설된 구금센터, 폐쇄적 수용(reception) 시설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런 장소에 한정되지는 않음.’이라 정의하여, 구금을 형식이 아니라 ‘자유 박탈’, ‘자의로 떠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기본권 침해의 존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내의 외국인 보호시설은 보호외국인들에게 자유의 박탈이 이뤄지고 자의로 떠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형사절차에 따라 운용되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와 사실상 동일한 구금시설로 존립 및 운영되고 있으므로 구금이 집행되는 시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68829 판결은 『출입국관리법』의 보호명령에 따른 보호가 일정 기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인신구속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 난민신청자에 대한 장기보호(구금)의 문제

한편 난민신청자가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는 경우, 강제퇴거 집행 시까지 10일 정도 내에 퇴거가 되는 통상적인 외국인들과 달리 난민신청 신청을 철회하고 자진출국하지 않는 이상 보호명령의 법적 한계를 벗어난 심각한 장기구금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⁹³⁾

현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는 보호의 개시부터 보호의 연장까지 모두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따른 결정에 의해 이뤄지므로 영장주의, 법관유보원칙, 독립기관결정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며, 보호(구금)의 종기 및 정기적인 사법심사 제도가 없어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구금)을 중단시키는 방법도 사실상 보호(구금)의 주체인 법무부(출입국)의 재량에 의존하는 것뿐이어서 한번 보호(구금)이 개시되면 위법·부당한 보호(구금)라 하더라도 이를 신속히 종료시키기 어렵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2항에서는“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할 때 그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심사권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정한 규정 외에 피심사외국인에 대한 의견청취절차라던가 보호담당 공무원의 의견청취절차, 피심사외국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한 의사의 소견청취절차 등 구금의 계속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거쳐야 하는 절차 규정이 없으며, 보호(구금)를 계속해야 하는 사유가 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난민소송의 계속 등 외국인의 강제퇴거집행이 불가능한 사유만 있으면 보호(구금)의 계속성의 적정성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보호(구금)기간이 기계적으로

93) 대한변협 2015. 2. 발간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 처우에 대한 실태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는 냉난방이 제대로 가동이 되어 있지 않고 침구류로 얇은 모포가 지급되고 있는데(겨울이 되면 모포가 2~3장 추가 지급되고 있음) 이 모포만으로 겨울을 나기가 쉽지 않으며, 겨울옷은 라운드 긴팔 티셔츠가 하나 지급되고 있고, 신발도 슬리퍼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말은 자비로 구입해야 해서 자비가 없는 경우 맨발에 슬리퍼만 신고 겨울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면회는 1일 2회, 30분으로 제한되며 화성보호소의 일반면회실은 보호외국인과 면회인의 대화가 인터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가능 정도인데, 인터폰은 스피커폰 기능이 없어 통역인을 대동하거나 다수인이 동시에 면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화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외국인 1인에게 책정된 식비가 1식당 1,300~1,400원 정도로 매우 적으며, 당뇨, 고혈압 등 질환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한 식단이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고, 유일하게 바깥 공기를 쉴 수 있는 운동시간은 평균 20~30분 정도인데, 이동시간을 제외하면 실질적 운동시간은 10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연장되고 있습니다.⁹⁴⁾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6년⁹⁵⁾(위헌의견 4인) 및 2018년⁹⁶⁾(위헌의견 5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보호명령에 대하여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지만 사실상의 위헌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2016. 4. 28. 전원재판부 2013헌바196에서 4인의 재판관은 현행 법상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구금은 그 자체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며, 강제송환되지 않을 권리를 핵심으로 하는 난민신청자들은 강제퇴거명령 집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심판대상 조항이 애초에 예정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형사절차상 인신구속에 준해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에도 보호의 개시나 영장단계에서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나 사법 기관이 관여하고 있지 않고 청문의 기회도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구금)명령 취소소송 사례

난민신청자가 ①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였거나, 유효한 여권 또는 사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출입국관리법』 46조 제1호, 같은 법 제7조 등), ②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경우(『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호), ③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출입국

94) 외국인이 보호된 지 3개월을 넘기게 되는 경우 3개월이 되기 전 보호명령서를 발급한 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 해당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소에 계속 보호되어야 하는 사유를 문의하고 보호소에서 이를 소명하면(통상 난민, 임금체불 소송 중인 경우), 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는 해당 보호외국인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절차(가령 보호외국인에 대한 면담, 건강상태의 확인 등) 없이 형식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5) 헌법재판소 2016. 4. 28. 전원재판부 2013헌바196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헌(난민신청자에 관한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된 이후 난민인정을 받아 보호 해제된 난민신청자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하여 각하하였으나, 재판관4인이 재판의 전제성을 긍정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96) 헌법재판소 2018. 2. 22. 2017헌가29(난민신청자가 아닌 외국인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위헌 제청한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만 되었을 뿐 보호가 해제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재판관 4인은 현실적 불가피성을 들어 합헌이라 하면서 입법적 개선의 검토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재판관 5인은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음).

관리법』 제46조 제3호,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④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였거나(『출입국관리법』 제46조 8호, 같은 법 제20조), ⑤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출입국관리법』 제46조 8호,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발부한 사례들이 있었고,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에서 몇 차례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들에서 법무부는 일관되게 ① 『출입국관리법』이 강제퇴거명령과 집행을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나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출입국관리법』이 강제퇴거명령을 전제로 보호명령을 함으로써 난민신청자가 최종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 전제로 강제퇴거명령을 할 실익이 있는 점, ④ 출입국관리행정 중 외국인의 입국퇴거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적법하며, 난민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가 확정될 때까지 강제퇴거의 집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0. 20. 선고 2015누5144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누5977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4. 선고 2015구단52114 판결 등도 이와 같은 법무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와 달리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도 다수 존재합니다. 해당 판결들은 ①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일응 『난민협약』상 난민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가 허용되어야 함을 전제하면서,⁹⁷⁾ ② 강제퇴거명령은 일단 집행되어버

97) 서울행정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은 “피고로서는 원고가 난민인정 신청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및 이에 대한 구제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원고가

리면 그 위법성을 더 이상 다룰 실익이 없으므로 명령 단계에서부터 그 적법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는데,⁹⁸⁾ ③ 난민지위에 관한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실제로 하지 아니한다면 소송 종료 전에 강제퇴거를 명할 당장의 실익을 찾기 어렵고, 난민인정 신청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강제퇴거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난민신청자의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았습니다.⁹⁹⁾ 서울행정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5구단505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선고 2013누5263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선고 2013누49861 판결 등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¹⁰⁰⁾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출입국·외국인청 등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선고 2013누52638 판결은 『난민협약』 제33조 및 위 『유엔난민기구 편람』의 해석을 적용하여 “본국을 떠난 후에 난민인정요건이 발생하는 이른바 체제 중 난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인정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응 『난민협약』상 난민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설령 체제국에서 난민인정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난민인정절차 또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소송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 신청이 명백히 남용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가 허용되어야 하고, 난민인정결정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지는 아니 하더라도 난민신청자의 공박한 처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보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마찬가지로 취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업을 하였다가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98) 서울행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5구단50576 판결에서는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보류된다고 하여 강제퇴거명령 자체의 위법성이 치유된다거나, 강제퇴거명령 발령단계에서는 비례의 원칙이 특별히 완화되어 피고의 재량권이 무한히 증가한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강제퇴거명령은, 비록 관계법령에서 집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유로든 일단 집행되어버리면 그 위법성을 더 이상 다룰 실익이 없으므로 명령 단계에서부터 그 적법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선고 2013누52638 판결에서는 “피고 주장과 같이 난민 지위에 관한 행정소송 등이 종료될 때까지는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강제퇴거명령을 즉시 집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의 요건에 대한 심사가 완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할 수는 없고, 강제퇴거명령의 발령이 정당화되거나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적법성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99)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선고 2013누52638 판결에서는 강제퇴거명령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난민신청자의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형량하면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난민지위에 관한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실제로 하지 아니한다면 소송 종료 전에 강제퇴거를 명할 당장의 실익을 찾기 어렵고, 다만 이를 전제로 보호명령을 발령하여 난민신청자가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경우 강제퇴거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래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난민인정신청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강제퇴거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난민신청자의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여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은 비례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100)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 2. 23. 법무부장관에게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가 불법 취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되거나 강제퇴거 되지 않도록 해당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을 보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3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은 난민신청자의 조력¹⁰¹⁾

가. 면회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6에서는 “피보호자는 다른 사람과 면회, 서신수수 및 전화 통화(이하 ‘면회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면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면회의 신청, 시간, 장소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보호규칙』 및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면회는 일반면회와 특별면회로 나누어집니다. ① 보호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 ② 보호외국인의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 ③ 보호외국인의 진정사건을 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특별면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면회의 경우 근무시간 내에서는 면회 시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일반면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가능하며(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국인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위 시간 외에도 면회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한 번에 30분 이내로 합니다(다만 면회 시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을 때 다른 면회인의 면회에 방해가 되지 않고 연장이 부득이할 경우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면회인은 같은 보호외국인에 대해 하루에 한 번만 면회가 가능하고(다만 다른 면회인의 면회에 방해가 되지 않고 횟수의 연장이 부득이할 경우 횟수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한 보호외국인은 1일에 2회로 총 면회 횟수가 제한됩니다(다만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면회 횟수의 증가가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회 횟수를 늘릴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면회는 면회실에서 하고, 한 사람씩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1) 출입국사범으로 단속되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아 보호(구금)되는 과정에 적용되는 법령과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외국인보호규칙』,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난민법』 등입니다.

Q 면회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면회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면회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회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특별면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변호사 신분증(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회를 하고자 하는 날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 등으로 외국인보호소를 떠나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회를 하고자 하는 날의 하루 또는 이틀 전에 미리 외국인보호소에 연락하여 면회를 신청하고자 함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면회신청서에는 면회를 하고자 하는 난민신청자의 국적, 영문이름 및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자에게 전달해야 할 물품 등이 있을 경우 면회신청 시에 미리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 물품을 전합니다. 소송 위임장 등 서명을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면회를 통해 서명을 받거나, 면회가 끝난 후 담당 공무원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음식을 전달하는 것은 금지되며 외국인보호소 내 매점에서 구입한 물품 및 음식을 구입해 전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핸드폰과 기타 소지품은 면회실에 들어가기 전 보관함에 맡기고 들어갑니다. 다만 핸드폰을 통한 통역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Q 면회를 가기 어려운 경우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난민신청자와 어떻게 소통이 가능한가요?

A 전화, 우편, 팩스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보호소 각 보호실에는 공중전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발신만 가능한 전화기이므로, 구금된 난민신청자와 통화를 원하는 경우 외국인보호소로 연락을 하여 난민신청자의 이름, 국적, 생년월일을 밝히고, 통화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하면 담당 공무원이 난민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전합니다. 난민신청자에게 보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각 외국인보호소의 팩스를 이용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구금된 난민신청자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 역시 난민신청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여 팩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로 소통할 경우 보호실 내 다른 외국인들에게 통화 내용이 공개될 수 있고, 팩스로 문서를

주고받을 경우 문서 내용이 담당 공무원에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소통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 또는 문서는 우편을 이용하여 소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강제퇴거명령이 부당·위법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결정서와 조사기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이유있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0조).

보호명령이 부당·위법한 경우 보호외국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금)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보호에 관한 이의신청은 신청기한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을 하려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보호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보호된 사람의 보호해제를 명하여야 합니다.

Q 보호명령 연장심사과정에서의 조력이 가능할까요?

A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2항에서는 보호(구금)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절차를 실질적인 것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3개월이 되기 전 보호명령서를 발급한 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 해당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소에 계속 보호되어야

하는 사유를 문의하고 보호소에서 이를 소명하면(통상 난민, 임금체불 소송 중인 경우임), 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는 해당 보호외국인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령 보호외국인에 대한 면담, 건강상태의 확인 등)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호외국인에 대한 의견청취절차라던가 보호담당 공무원의 의견청취절차, 피심사외국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한 의사의 소견청취절차 등 구금의 계속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거쳐야 하는 절차 규정이 전혀 없고, 구금을 계속해야 하는 사유가 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간 난민소송의 계속 등 외국인의 강제퇴거집행이 불가능한 사유만 있으면 구금의 계속성의 적정성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구금 기간이 기계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점이 계속적으로 비판되어 왔습니다.

다만, 2017년 11월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하루 취업하였다든 사유로 바로 강제퇴거 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아 구금된 난민신청자에 대해 보호(구금)기간이 3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2018년 1월 보호가 해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법·부당한 구금에 대해서 의견서·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력을 하여 3개월 연장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명령이 위법한 경우 각 명령(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은 강제퇴거명령이 있음을 안 날(보통은 강제퇴거명령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출입국·외국인청 등 관할 지방법원에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한 경우 이를 전제로 발령된 보호명령 역시 위법하게 되므로 보통은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함께 제기합니다. 또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집행정

지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보호명령 취소소송의 제소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보호명령에 대해 별도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명령에 기한 보호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이상, 보호명령 최초 발령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다거나, 보호명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호명령 취소소송은 적법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선고 2016. 3. 17. 2015구합53095 판결). 해당 판례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명령은 “①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발할 수 없다는 목적상의 한계 및 ② 일단 적법하게 보호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송환에 필요한 준비와 절차를 신속히 마쳐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만 보호할 수 있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시간적 한계”를 가진다고 할 것임에도 보호명령에 기한 보호기간이 계속된 연장으로 장기화되는 경우 위와 같은 한계를 벗어나게 될 여지가 높은 상황에서 보호명령 최초 발령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다거나, 보호명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본다면, 보호명령이 시간적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게 구금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는 보호대상자로부터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되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요청에 반하는 점, 법원으로서도 보호명령 최초 발령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보호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호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및 그 집행을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보호명령이 적법하게 발령되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까지의 목적상 한계 및 시간적 한계의 일탈 여부에 대하여만 심사할 수 있을 뿐 그 이후에 계속되는 보호명령의 시간적 한계 일탈 여부에 대하여는 미래를 예측하여 심사할 방도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Q 집행정지 신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

A 난민신청자에 대해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보류하는 근거로 보이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¹⁰²⁾은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종료 후 난민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 계속 중인 기간에 대해서까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보류할지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난민인정 신청 및 이의신청절차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도 있다고 해석되는데, 일단 강제퇴거명령이 집행되어 버리면 더 이상 위법성을 다룰 실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보호명령의 집행으로 난민심사가 계속되는 동안 계속 외국인보호소에 장기간 보호(구금)되어야 하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각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간 신청 및 인용된 사례를 보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라. 보호일시해제 청구

보호명령이 발령되어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 ① 신병치료가 필요하거나, ② 1천만 원 이상의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③ 1천만 원 이상의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1천만 원 이상 소송가액의 원고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¹⁰³⁾ 보호일시해제 청

10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

103) 2018. 9. 21 시행 예정인 개정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제66조의2를 신설하여, 보호일시해제 제도의 안내를 위해 보호의 일시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의 사유가 가능한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호일시해제 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호외국인, 신원보증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변호인이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2018. 9. 21 시행 예정인 개정 『출입국관리법』 제65조에서는 보호외국인의 보호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도 보호일시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¹⁰⁴ 일반해제와 특별해제(일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부득이하게 일시해제를 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명령을 한 소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한 후 결정하는 처분)가 있습니다.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호일시해제청구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8호 서식), 일시해제 청구사유 입증자료,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자료를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산상태 및 출석담보 가능성을 고려해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며, 신원보증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일시해제 청구사유와 보증금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보호일시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1회에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부여합니다. 아울러 월 1회 이상 출석하여 일시해제 청구사유 진행상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합니다.

보호일시해제 청구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보호외국인, 신원보증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변호인은 보호일시해제기간 만료일까지 보호일시해제 연장청구서와 기간연장이 부득이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보호일시해제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일시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② 정당한 이유없이 제10조에 의한 출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보호일시해제청구서상의 청구사유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호일시해제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치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고귀속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2(보호의 일시해제 절차 등의 게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04) 『출입국관리법』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청구에 따라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마. 처우에 대한 청원 및 진정 등

외국인보호소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겪은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보호소에서의 처우가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6장

비호신청자(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의 처우에 관한 조력

제6장

비호신청자(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의 처우에 관한 조력

1 도입

현행 『난민법』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사회보장(31조), 기초생활보장(32조), 교육보장(33조), 사회적응교육(34조), 학력인정(35조), 자격인정(36조),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37조)’의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는 ‘취업활동 허가(39조)’ 외에 별다른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생계비 지원(40조), 주거시설지원(41조), 의료지원(42조), 교육보장(43조)’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위마다 보장되는 권리가 구별될 뿐만 아니라, 법에 보장된 처우의 권리가 실무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난민을 지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2018. 8. 기준).

2 난민의 체류 등

가. 체류자격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기타(G-1-5)	기타(G-1-6)	거주(F-2)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타(G-1) 체류자격으로 6

개월을 부여받아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을 받아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¹⁰⁵⁾ 인도적체류허가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매회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으며, 난민인정자는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매회 3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등록 외국인인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체류지 시·군·구의 장 또는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전입신고 방법: 등록외국인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체류지변경 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 체류지입증서류, 체류지변경신고서(‘정부24’ 홈페이지에 구비)가 있습니다.

나. 각종 증명서

(1) 외국인등록증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	○	○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신청서 접수 후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가지고 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 난민인정 신청 전의 체류자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인도적체류자와 난민인정자 모두 부여된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등록이 가능합니다.

105) 이때 난민신청자가 체류기간 만기를 초과하여서도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체류상태로 분류되어 추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난민신청자의 기간 내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머무르다가 난민인정 신청을 할 시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가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여권, 컬러사진(3cm*4cm) 2매, 통합신청서(신고서)가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에는 30,000원의 수수료가, 체류자격변경에는 100,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2) 여행증명서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	×	○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에게는 별도의 여행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난민인정자가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혹은 출장소장에게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난민여행증발급신청서와 증명사진을 제출하고 난민인정증명서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중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입·출국이 가능하고 귀국 시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¹⁰⁶⁾

- 여행증명서 발급 방법: 난민인정자인 발급 신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의11 서식)에 난민인정증명서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함),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X4.5cm) 2매, 수수료 1만 원을 구비하여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106)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3) 가족관계증명서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	×	×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 국적자와 혼인 혹은 입양 등을 통해 새로이 가족관계를 형성하거나 당사자가 추후 귀화를 하지 않는 이상, 난민신청자·인도적체류자·난민인정자 모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4) 통장개설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 여권 有 ○ - 여권 無 ×	- 여권 有 ○ - 여권 無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여권이 없는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더라도 통장개설이 어려우며, 여권이 없는 난민인정자는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난민인정증명서를 지참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래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의 차원에서 특정 국가 출신자에게는 은행별로 통상 개설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 가족결합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	×	○

법 제37조 제1항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가 입국 신청 시, 출입국

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인정자의 배우자와 그 미성년자녀는 재외공간에서 단기방문(C-3, 90일)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 입국할 수 있으며, 가족결합원칙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인도적체류자가 한국에서 출산한 자녀에 대하여는 G-1-12 비자를 부여하고 있습니다).¹⁰⁷⁾

라. 생계비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	×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의 생계지원을 위해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난민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생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단순한 시혜적 조치라기보다 난민신청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 신청권”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¹⁰⁸⁾

난민인정 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

107) 자동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난민인정자의 배우자와 그 미성년자녀는 입국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심사 결과 가족결합원칙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108) 서울행정법원 2016. 7. 7. 선고 2015구합79413 판결 생계비등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
 “에티오피아 국적의 여성 갑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갑에게 휴대전화로 “You are failed to receive the living expenses. (귀하의 생계비지원신청은 거부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에서,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 신청권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리고, 그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피고의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으로 다룰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위 통보만으로는 처분 상대방인 갑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통보가 이루어진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위 통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법무부장관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생계비 지원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그에 관하여 갑이 동의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며, 위 통보가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경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통보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월까지만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난민인정을 신청할 때 생계비지원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법 제17조 1항 단서에 의거하여, 중대한 질병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생계비 등의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의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¹⁰⁹⁾

- 생계비 신청 방법: 난민신청자는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없는 경우 난민인정신청접수증), 본인 명의 국내 발급 통장 사본(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명의 통장), 부양가족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선택사항)를 전국 출입국·출장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단위 난민신청자는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재정착 난민
○	×	×	○

영종도에 위치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 제41조에 근거하여 개소하였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①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와 재정착 희망 난민을 우선 이용 대상으로 할 수 있고, ②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③ 다만 이용자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난민지원시설을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고, ④ 주거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¹¹⁰⁾

109) 2017. 12. 31. 기준, 난민신청자가 실제 생계비를 지급받는 평균기간은 3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 생계비를 지원받은 난민신청자의 비율은 전체 난민신청자 대비 3%에 불과합니다. 전체 난민신청자 대비 생계비 지급률은 2016년 기준 8.6%, 2017년 기준 3.2%입니다(난민인권센터 통계 참조 <http://nancen.org/1741>).

110)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입소하고자 하는 난민신청자는 입국 후 6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입소 후 6개월만 머무를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신청자보다는 재정착 난민들의 초기적응을 돕는 용도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정원 82명, 연인원 164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매년 60퍼센트대의 이용률을 보이며 재정착 난민을 제외하면 이용률은 48.5퍼센트대에 불과합니다. 또한 2017년 공개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집행예산액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신청자/인정자의 2%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¹¹¹⁾

바. 귀화

2018. 5. 현재로서는 난민인정자가 국적법 제5조의 요건¹¹²⁾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 12. 20.부터 시행될 개정 국적법에는 현 일반귀화 신청 요건에 더하여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요건이 추가되므로, 난민인정자는 우선 영주(F-5)비자를 취득한 후에 비로소 일반귀화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난민인정자에 대한 귀화인정요건과 관련하여 “일반 외국인이 귀화 신청을 한 경우와 달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¹¹³⁾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도 귀화허가를 결정하는 데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

111) 난민인권센터 통계 참조 <http://nancen.org/1741>

112)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113)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누34881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피고는 **난민인정자의 귀화허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일반 외국인이 귀화신청을 한 경우와 달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난민인정자는 본국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난민인정자가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선택의 폭은 몹시 제한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각종 급여 등이 이미 보장되어 있어 귀화가 허가되더라도 새로이 국가의 재정적 부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

이 아니라 ‘신청인의 기술, 능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국적 취득 후 국가의 도움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창출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¹¹⁴⁾ 난민인정자나 인도적체류자의 귀화 신청 시 해당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난민의 노동

가. 취업 범위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 취업제한분야를 제외한 단순 노무분야 - 전문분야 취업을 원할 경우 『출입국관리법』령 등이 원하는 자격을 갖추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제한분야가 아닌 분야 - 전문분야 취업을 원할 경우 『출입국관리법』령 등이 원하는 자격을 갖추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제한 없음

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및 사전 고용계약 요부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필요	필요	불필요
사전 고용계약	필요	불필요	불필요

니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난민인정자가 생계유지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정하는 데에는 일정 수준의 재정적 능력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공동체의 경제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기초적인 자립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14) 서울행정법원 2018. 5. 25. 선고 2017구합3816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인도적 체류허가는 1년마다 허가 여부를 갱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원고가 이러한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국내에서 1년 이상의 고용관계를 요하는 직장에 취업하여 능력에 맞는 소득을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사정은 원고의 재정능력 및 생계유지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G-1(기타)를 부여받기 때문에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 외 취업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¹¹⁵⁾ 난민신청자의 경우 체류자격 외 취업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관련 [별표5의2]에 따라 첨부서류로서 고용 계약서 및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제출하여야 하나(사전 고용계약), 인도적체류자의 경우 그러한 사전 고용계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난민신청자는 취업활동허가도 없이 고용주로부터 선고용이 되어야만 법무부로부터 취업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인도적체류자도 G-1(기타)이라는 비자타입으로 취업을 해야 하므로, 실무상 취업 자체가 매우 힘든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난민인정자의 F-2(거주)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고용허가 절차 없이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사전고용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115)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6개월이 지난 후 혹은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한 사유로 사무소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회 6개월 기간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체류자가 비전문분야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업장 지정 없이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하고 1회 1년 기간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가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령 등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난민의 사회보장¹¹⁶⁾

가. 상호보증의 예외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법령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8조는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적용받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난민인정자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체류자는 ‘원칙적’ 보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각 제도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나. 사회 보험

(1) 국민연금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당연적용 배제	당연적용 배제	당연적용대상
임의가입불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 외국인이

11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관련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난민신청자나 인도적체류자의 경우 G-1(기타)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의 당연 적용 제외 대상자이고, 난민인정자는 F-2(거주)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법 제31조에 의하여 상호주의의 적용 없이 『국민연금법』 당연적용 대상자입니다. 외국인인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임의가입대상자가 아니므로 현재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사업장가입방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 가입합니다.
- 지역가입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3호의)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직장가입	○	○	○
지역가입	×	△	○

- ① 직장가입: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형태로 당연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인정 신청 이후 6개월이 지난 후 취업허가를 받아 취업한 경우에 직장가입자 형태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¹¹⁷⁾

117) 건강보험 직장가입의 경우 한국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의 피부양자 등록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상 자녀의 경우 DNA 검사 등을 통해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례가 있으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② 지역가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별표9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F-2(거주)를 포함하고 G-1(기타)을 배제하고 있어 인도적체류자와 난민신청자는 지역가입 대상이 아닙니다.¹¹⁸⁾ 다만 2018. 6.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통해 인도적체류자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므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난민인정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 형태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¹¹⁹⁾ 난민인정신청자(난민인정 신청 이후 6개월 도과하여 취업한 경우)는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할 경우에만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인도적체류자도 난민신청자와 마찬가지로 근시일내에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지역가입도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	○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의 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난민인정자·난민지위신청자·인도적체류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체류지위에 무관하게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118) 2013. 11. 19.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지역 건강보험제도에서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이 배제되어 인간의 존엄 및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인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도적 체류자 및 그 가족들이 국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 및 그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13-진정-0026800). 하지만 이러한 권고는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19)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결정을 받은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최초 입국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해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인정 신청기간에는 보험가입자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보험료 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는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난민지위신청자·인도적 체류자해당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해외에 있는 유족은 해당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가입합니다.

(4) 고용보험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	×	○

고용보험가입 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거주(F-2)비자의 난민인정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기타(G-1) 체류자격을 받는 인도적 체류허가자 및 난민인정신청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 공공부조

(1) 기초생활보장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	×	○

법 제32조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2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하면 조사 후 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등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2) 긴급복지지원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	○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행법상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호에 따라 난민인정자만이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도적체류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 12. 6. 자 결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를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으며,¹²⁰⁾ 2018. 5. 현재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인도적체류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¹²¹⁾

120) 국가인권위원회 2012. 12. 6.자 결정 [인도적 체류자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권고]
 “인도적체류자의 경우에는 2013년 7월 새로 시행될 『난민법』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만 주어져 있지, 생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어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내 노동시장에서 인도적 체류자가 취업비자가 아닌 기타비자(G-1) 소지자로서 취업이 용이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긴급지원 대상으로 편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적용대상의 규모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121) 「보건복지부 2018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제51면 -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
 -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 ㉢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난민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²¹⁾

라. 사회복지서비스

(1) 장애인 등록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	×	○

현행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32조의2 제5호는 난민인정자를 장애인 등록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¹²²⁾ 하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상 외국인인 장애인활동보조 등의 서비스사업의 제외 대상이므로, 난민인정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더라도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장애인 등록 방법: 신청인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2) 아동 관련

(가)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 보육법 적용

법률의 문언 해석상 난민신청자·인도적체류자·난민인정자 아동 모두 『아동복지법』이나 『영유아보육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¹²³⁾ 하지만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122) 2016.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은 난민인정자 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하였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2017. 10. 27. 법원은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으므로 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누22336 판결). 위 소송에 대한 상고심 진행 중이던 같은 해 12월 국회에서 난민인정자도 장애인 등록 대상으로 명시하는 현행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32조의2 제5호)이 통과되었습니다.

체류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지원이 실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의 영유아 보육료(44.1만~22만) 지원과,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에 대해 연령별로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10만~20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¹²⁴⁾

(나) 아동수당 사업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	×	○

2018. 9.부터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법률 제15539호, 2018.3.27. 제정)에 근거하여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가구의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최대 72개월간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및 난민인정자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아동수당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사회보장 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3)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보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기본이념에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조 보육이념에서 '영유아는 자신이 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4) 2018. 6. 20. 국회 '국내 난민아동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폐자, 58면.

5 난민의 교육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초등학교·중학교	○	○	○
고등학교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입학가부 결정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입학가부 결정	○
학력인정	×	×	○

난민신청자·인도적체류자·난민인정자 그리고 그의 미성년자녀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의무교육(초등·중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그의 미성년자녀가 고등학교 입학 가부는 각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점이 문제 됩니다.

학력인정의 경우, 법 제3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이 인정됩니다. 학령기의 아동(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난민인정자가 학력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혹은 학력증빙서류가 불충분 또는 확인이 어려워 입교(입학, 취학, 편입학)할 수 없는 경우 학교 학력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해당 신청자의 학력을 인정합니다.¹²⁵⁾

12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에 근거하여, 학력증명이 곤란하여 입교할 수 없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해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 학력심의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될 수 있습니다(교육부 2018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도움자료, 24면).

별첨

것처럼 ***. *** 경부처 활동하였고, ***출입관리사무소도 ***의 메일 확인을 통해 오기임을 수감하여 불회부결정을 철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신청인은 ***. *** 경 경찰에 의해 강제구금 당했다 풀러난 이후 ***에게 출국 계획을 밝히고 향후 필요하면 서신(reference letter)을 부탁한 바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지인 요청서는 이후 신청인이 ***에게 요청해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지인요청서에서 ***는 신청인의 *** 회원신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6). 이후 변호인과의 면담과정에서 변호인이 *** 명의의 확인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묻자 신청인은 해당 지원요청서를 언급하였고, 변호인 접견이 끝나자마자 20분도 되지 않은 같은 날 3시 26분에 곧장 변호인에게 송부하였습니다.

한편 신청인은 변호인과의 접견 당시 ***자를 옹호하는 것이 행사 처벌되는 상황에서, 보인이 취약한 전하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고 이베일을 통해서 연락하면 답이 올 것이라 예기하였고, 변호인은 변호인 접견 이후 출입국측에 직접 이베일을 보내서 확인해볼 것을 요청하였으나, 변호인이 직접 메일을 보내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접견이 끝나자마자 메일을 보내면서, 변호인의 신분을 의심할 수도 있어 당사자의 사진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보낸 후에 ***에서 답메일이 왔는데, 그 내용은 신청자의 사진과, 신분증 인하는 것과, 전화상으로는 가능은 하지만 가능하면 통화하면 좋으니 메일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별도로 변호인 측은 (**출입관리사무소 난민팀의 부처 때문이겠는) 주 ***한국 대사관에서 몇 차례 *** 사무실로 전화를 한 적이 있었고, 이를 일부러 받지 않은 *** 측에서 주 ***한국대사관으로 ***. ***. *** 두 차례에 걸쳐 ***과 관련한 질문을 전화로는 하지 말라, ***의 사무실 주소는 ***에 있다 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 측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이베일을 주 ***한국대사관에 보냈는데, 한국대사관 측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출입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참고자료 7). 즉, ***출입국은 주 *** 한국대사관을 통해 연락을 취해왔으나 대사관으로부터 ***의 전화번호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아 최초로 ***의 존재가 허구라고 판단하였으나, 이후 오히려 *** 측에서 ***대사관에게 보냈던 메일을 통해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불회부결정을 철회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코적국상황에서 상세하게 서술하도록 하였습니다(참고자료 1)를 보며 자신의 *** 정체성이 밝혀질 경우 겪게 될 이전에 대해서도 우려하게 되었고, 이에 자신의 ***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명백히 생동적인 자신의 ***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없는 자기결정권(autonomy) 및 자아 실현권(self-realization)에 대한 침해로서 난민 협약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대한 시절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 정체성으로 인해 협박, 구타 등 박해를 받아왔고, 급기야 ***년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는 경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체포·구금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청인의 박해 경험은 이하 소신청인의 비핵 경험 부분에서 보다 상세하게 서술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 비밀조치 활동**

한편 신청인은 대학 졸업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와 *** 관련 사례에 대해 짧게 의견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고, ***. *** 경 ***에서 ***로 귀국 후 ***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부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활동하는 인권활동가들의 조직인 ***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S는 신청인에게 ***가 하는 ***자 이슈를 포함한 여러가지 인권상담(counseling) 활동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신청인은 처음엔 ***에게 자신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신청인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게 된 ***는 어느 날 신청인을 만나고 있던 중 *** 단체 대표인 ***를 초대에 신청인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의 대표인 ***는 이미 신청인에 대해 알고 있었던 눈치였는데, ***를 통해 ***에 대해 더 알게 된 신청인은 자신이 단체의 회원(member)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당 단체의 활동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청인이 난민지위인정신청서상에는 *** 가입일을 ***. *** 경으로 작성했는데, 이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기약에 의존해서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도 등의 구체적인 날짜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신청인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의 대표 명의로 된 지원요청서(참고자료 5)를 전달받았는데, 실제로 위 서류에 언급된 것처럼 신청인은 ***. *** 경부터 위 단체에 속하여 회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신분증에는 마치 ***에 가입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고, ***에는 신청자가 ***에 있었기에 바로 이것 때문에 당국으로부터 의심 받게 된 여지가 있으나, 이는 오기이며, 실제로 위 서류에 기재되고 신청자가 제출한

을 했습니다. 신청인은 그들 중의 한 명의 얼굴을 알아보았는데, 그는 신청인이 학교에서 축구를 할 때 몇 번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경찰이 ***자가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신청인은 자신이 *** 문제와 연루되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에 처해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졸업 시기가 다가올 무렵 학교 근처에서 생활하던 신청인은 자신의 *** 지향을 물어보는 불특정 다수가 많아짐에 따라 스스로의 인위를 더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는 장을 보던 중 매장 직원이 신청인에게 "당신이 ***자라고 들었고 말을 걸었는데, 신청인이 '내가 남자와 있는 것을 봤느냐, 증거가 있냐(Have you ever seen me with men? Do you have evidence?)"라고 되묻자 해당 매장 직원이 신청인에게 "***에서는 ***가 불법이다(*** is illegal in ***)"라고 말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을 통해 신청인은 마을에 자신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더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 지향으로 인해 몇 차례 협박 및 구타를 당한 신청인은 졸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점점 상황이 악화되던 무렵 학교 졸업시기가 다가와 졸업 후 당시 ***가 생활하고 있던 ***로 거주를 옮겼습니다.

라. 이주 후 상황

신청인은 ***로 이주 후 다른 일거리를 알아보려고 했으나 쉽지 않아 당시 파트타임 연 구원으로 일하고 있던 연구소에 계속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요청이 있으면 위험을 감수하고 연구소가 위치한 ***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기도 했지만, 위험한 상황 때문에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 항상 조심해야 했고, 덧붙여 ***에서는 본인의 *** 정체성이 탈로날 것을 우려해 신분을 숨기고 지냈습니다.

이처럼 ***에서 이렇게 생활하던 신청인은 이후 이러한 상황 등의 이유로 ***로 이주하게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난민신청을 위해 ***로 귀국해 도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 *년부터 ***로 도피하기 이전까지의 상황**

신청자는 ***년부터 ***에 갔다가 돌아오기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교제해온 ***친구 ** *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자신의 *** 지향을 숨겨오려고 노력하였는데, 그럼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혐오한다는 이야기와 구타를 당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년에서 ***년 사이에 신청인은 두 차례 정도 ***자라는 이유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의해 협박을 당한 바 있습니다. 한 번은 6~8명의 사람들이 당시 ***의 ***인 ***에서 지내 고 있던 신청인을 찾아와 "당신과 같은 사람은 살아서는 안 된다(People of your type are not supposed to live)."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당신 같은 사람을 허용하지 않는다 (You are not accepted in our society)."라는 말을 하며 신청인을 밀치는 등 협박을 가 했는데, 이에 신청인은 "나는 여성들과 데이트를 하지 남성들과 하지는 않는다(But I date girls, I don't date men)."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계속 신청인 을 따라오며 협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신청인은 한국으로 도피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여성과 만남을 가져왔으나, 이는 신청인이 여성에게도 일정 정도의 호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신청인의 *** 지향]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특히 도피 전으로 이미 사람들이 자신의 *** 지향에 대해 많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은 위험을 막기 위해 가능한 자신의 *** 정체성을 숨겨야 했으며, 이를 위해 자신 이 평범하게 여성과 데이트하는 사람임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참고로 *** 사건에서 신청인의 '정체성'과 '숨은'을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이 들다면 신청인이 오랜 시간 *** 관계를 유지했던 ***와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지, 여성들 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해왔는지의 ***행동(실천)만으로 신청인의 *** 지향을 부정할 수 는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은 한국에도 소위 '기혼' ***자, 즉 규범에 따라 결혼을 해 서 제도에 순응해서 살지만 사적으로는 자신의 *** 지향이 변함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은 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길에 약 4명 이상의 사람이 갑자기 신청인에게 다가와 15분 이상 손과 발로 신청인을 구타하였는데, "알짱거리지 말고 예기를 떠나려(Don't you leave this place instead of staying around)."라고 말하는 등 신청인에게 모욕적인 말

마.***, 8. 12. ***이라는 이유로 LC로부터 강제 퇴거 명령

신청인은 ***. ***. ***에서 귀국 후 *** 근처에 있는 ***의 ***세 새로운 집(원룸 (one room)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 ***. ***경 신청인은 누군가가 당시 거주하던 곳의 문 아래를 통해 집에 놓고 간 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서신은 해당 지역의 로컬 카운슬(Local Council)로부터 ***자(***는 마을에서 살게 할 수 없다고 퇴거할 것을 명하는 명령서였습니다(참고자료 8).

참고로 신청인은 ***. ***. *** 변호인과 난민신청심사대기실에서 접점을 하면서 변호인이 마을의회로부터 받은 퇴거명령서가 있는지를 묻자, ***에 있는 ***가 갖고 있을 것이라며 메일로 요청해보겠다고 하였는바, 이 문서를 변호인 접견이 끝나자마자 20분도 되지 않은 같은 날 3시 26분에 공장 변호인에게 송부하였습니다(또는 서류를 위조하고 정교하게 만들 시간적 여지도 없는 것이고, 실제 그런 상황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로컬 카운슬은 서구사회와 다르게 다양한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바, 사실상 신청자가 ***이고 사회에서 혐오 받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알자 이 같은 점을 들어 협력하여 신청자를 쫓아낸 것인데,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주변사람들이 이미 ***임을 알고 있었음을 추단케 합니다.

변호인의 자료 조사 내용에 따르면 로컬 카운슬(Local Council)은 한 마을(village)의 책임자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한 마을은 250에서 1,000명 정도의 50에서 70기구로 이루어지며, 로컬 카운슬(LC, local council)이 한 마을을 운영하고 의장(LCI chairman)과 다른 9명의 운영위원들이 함께 마을을 통치(govern)합니다(참고자료 9).

로컬 카운슬은 '저항 카운슬(Resistance Council, RC)'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는 ***년대부터 분권화의 일환으로 ***이 개발한 ***의 제도화를 우선순위로 삼았는데 여기에서의 '의회/카운슬(council)'은 1986년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년 관련 법령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 ***년 The Local Government(Resistance Councils) 법령(Straume)은 정치권력을 중앙 집권에서 로컬 카운슬 시스템으로 분권화 하였고, ***년 헌법을 통해 현재의 로컬 카운슬 제도가 정립되었습니다(참고자료 10).

이후 ***년 제정된 Local Government Act(LGA)는 로컬 권위자(authority)들이 각

지역의 주 서비스 제공자(primary service providers)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토대가 되었으며, IGA의 section 9은 로컬 카운슬이 지방 정부(local government) 사법권 내의 최고 권력자이자 임명부 및 행정부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카운슬들은 이러한 임명 및 행정 권한 외에도 사법부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참고자료 11).

신청인에게는 로컬 카운슬이 자신의 *** 지향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주변 공동체에서 신청자의 ***지향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어쩔 수 없이 ***가 거주하던 ***로 다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인은 경찰에 찾아가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는데, 1) ***에서 ***가 불법이고, 2) 로컬 카운슬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단적으로 신청인을 고발하면 문제가 걸잡을 수 없이 커져 오히려 *** 사건에 연루된 사실만으로 위협해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신청인은 그간의 *** 사건과 관련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 경찰이 ***자와 연관된 사건을 ***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처리함을 보아왔고, 때문에 자신 또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경당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한 달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고, 서신을 받은 며칠 후에 다시 ***에 위치한 ***점으로 갔습니다.

바. 출국 준비 과정에서 피해 경험

이후 신청인은 ***에서 다른 지역들에 다니며 돈을 벌라는 등 출국 준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청인은 빈번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며 "당신, ***자가 아니냐? You are ***."라고 말을 걸거나,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for us, we don't need a kind of a person like you)."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어떤 경우 구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신청인의 ***도 이 과정에서 브로커를 연결해 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이로 인해 혜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 5. 신청인 주변의 피해경험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있었습니다.

구급에게 이후 신정인은 ***라고 불리는 의료 클리닉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며, 체포를 입증할 서류는 ***. *** 변호인의 요청에 의해 신정인의 ***가 다음날 경찰에 가서 서류를 떼어오려 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신정인은 후에 ***를 통해 어떻게 ***과 ***가 자신을 찾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귀가하지 않은 신정인을 걱정하던 신정인의 ***는 신정인의 친구들에게 신정인의 소재를 물었고, 그 과정에서 M과 P에게 신정인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과 ***는 신정인을 찾던 중 경찰서에 신정인이 수감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신정인의 석방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신정인은 ***과 ***가 어떻게 자신이 경찰서에 수감이 되었는지를 알았는데, 자신의 석방을 위해 비용을 지불했는데, 지불했다면 얼마를 지불했는지 등을 미처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은 신정인과 10년 이상, ***는 신정인과 7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이어서 신정인의 *** 지향에 대해 알지 못했는데, 그들은 석방된 신정인에게 "너가 ***자라고 하던데, 맞냐(They are saying that you are ***)"라며 농담조로 말을 건네었고, 이에 신정인은 친구들이 자신의 *** 지향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그걸 믿어?(Do you believe that?)" 답한 후 나중에 다시 얘기할 것을 약속한 후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 출국 준비를 하러 이후 ***과 ***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정인은 구급에게 이후 한국 사증 발급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요구한 돈을 마련하는 데 급급했고, 따라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근황을 체크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현재 ***과 ***와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신정인 주변인의 피해경험

가.***, ***, ***, 신정인의 *** 협력

신정인의 ***는, (신정인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경 신정인의 ***지향을 알게 된 후 신정인을 박해로부터 보호하던 중 몇 차례 협박 및 구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신정인은 ***가 정확히 언제, 얼마나 자주, 몇 차례 정도 동생인 신정인의 *** 지향으로 인해 박해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으나, ***, ***, 경 신정인의 ***가 귀

사. ***, ***, ***, 경 경찰 체포사건

그러던 중 신정인은 사복경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체포되어 구근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해당 박해 경험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 ***, ***, 오후 10시경 신정인이 귀가하던 길에 사복을 입은 사람들(신정인은 약 4명 정도로 기억)이 신정인에게 다가와 신정인에게 "우리랑 같이 가줘야겠다(You have to come with us)"라고 말했다고 신정인이 이유를 물어보자 "우리는 경찰이다(We are Police)."라고 말할 뿐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정인을 차에 태웠고, 신정인은 이유를 모른 채 체포되어 이던가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동하던 중 신정인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 것인지 몰았으나, 사복경찰들은 "가면 알게 될 것이다(You will see where you are going)."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약 30~40분 가량 후 신정인이 타고 있던 차가 ***경찰서에 도착했고, 사복경찰들은 신정인을 경찰서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경찰서 도착 후, 두 명의 경찰관이 경찰서 안에 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나머지 두 명의 경찰관이 신정인을 유치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신정인은 아무런 절차 없이 바로 유치장에 수감이 되었는데, 이를 통해 신정인은 자신의 체포가 사전에 계획되었던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치장에는 10명 이상의 수감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손과 발을 이용해 신정인을 구타했습니다. 그들은 신정인에게 "너는 우리를 위해 여기에 온 거야(You were brought to us to be used)."라고 말하는 등 신정인을 협박했고 신정인은 자신이 왜 구금이 된지도 모른 채 하룻밤을 유치장에서 두려움에 떨며 지새야 했습니다.

다음날 유니폼을 입은 경찰관이 유치장에 있던 신정인의 이름을 불렀고, 신정인은 유치장을 나와 경찰서 입구 쪽에 위치한 접수대(counter)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친구 ***과 ***가 이미 접수대에 서있었고 어떤 서류가 책상에 놓여있었는데, 경찰들이 신정인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경찰이 신정인에게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했고, 신정인은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서류에 파란색 글씨로 "***자"라고 표기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정인은 자신이 서명한 서류가 정확히 어떤 서류인지는 모르나, 사복경찰이 자신을 체포했던 이유가 자신의 *** 지향과 관련이 있음을 예상할 수

가를 하던 중 자신들을 경찰이라고 밝힌 몇 명의 사복을 입은(plain clothed) 남성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일을 기억하여 관련해 ***에게 진술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신 청인의 ***와는 연관이 두절되었습니다.

6. 신청인 본국 귀국 시 박해가능성 - 국적국 상황

가. 신청인 가족 상황

신청인의 ***는 *** 지역에 위치한 ***기회사 하청업체에서 데이터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에 의하면 신청인이 본국을 출국하는 시점에서 ***로부터 자신의 *** 지향을 알고 있는 ***도 친척들과 주변의 마을 공동체로부터 "왜 그러한 수치스러운 사실을 그 동 안 알리지 않느냐" 심한 비난을 듣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신청인의 ***와는 현재 연 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나. *** 박해

***들은 ***의 공동체에서 축출되며 심각한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의 ***차별법 입법을 전후로 한 다수의 보고서 및 관련 기사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 니다.

가장 많이 보도된 사건 중의 하나로는 ***(*: *1.26.경 사방) 사건이 있습니다. *** 소재의 ***지는 ***년 ***월 *** 지역의 ***자 100명의 사건과 이름, 주소를 공개한 바 있는 데, 이 보도 이후 *** 운동가 ***는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했으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자 신의 집에서 관헌에 의해 방치에 맞아 숨지게 되었습니다. 기사에는 "그들을 교수형에 처하 라(Hang Them)"라는 문구가 버젓이 쓰여 있었고, 이 보도가 나간 직후 최소 4명의 ***자 들이 길거리에서 돌팔매질을 당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참고자료 12, 13, 14, 15).

또 다른 사건으로는 ***(*: *..경 미국에서 난민 인정) 사건이 있는데, ***는 역시 유명 *** 활동가로서 ***년 ***라는 *** 지지 단체를 설립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참고 로 ***는 앞서 언급한 ***와 ***의 *** 활동가들을 다룬 ***라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바 있 는데, 다큐멘터리 상영을 앞두고 ***가 살해를 당했으며 *** 역시 살해 협박을 받고, 구금 을 당하는 등 박해를 받았습니니다. 이후 ***년 ***에서 *** *** 박해에 대해 알리는 등 인권

옹호 활동을 하던 ***는 ***년 ***월 ***일 *** 반***법 입법 후 ***월 ***일 난민신청을 하 여 난민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참고자료 16).

***자로서, 평소 자신의 *** 정체성으로 인해 박해를 당하는 경험을 했던 신청인은 ***의 *** 박해 상황에 대해 주시하고 있었으며, 한국에서 입국 불허 처분 후 공항에 여류 중이던 신청인의 상황을 알게 된 신청인의 ***를 통해 ***에게 연락을 취한 바 있습니다. 신청인은 ***가 어떤 경로로 ***에게 연락을 취했는지 알고 있지 못하나, ***가 도움을 요청하는 메 일을 비공개 *** 활동가 메일링 리스트에 있던 한국 측 변호인에게 보냈었고, 이후 신청인 의 변호인이 그 메일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유명 *** 활동가에 대한 박해 사건인 위 두 사건 외에도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않으나 ***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 국무부 보고서 는 <***과 ***에 의거한 사회적 학대, 차별, 그리고 폭력 행위>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7).

*** 사람들은 차별과 법적 제한을 겪는다.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를 범죄로 규정 하고 최대 무기징역의 형량을 부과한 식민지 시대 법에 따르면 합의하의 *** ***는 불법 이다. 사법기관이 이 법에 의거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적은 없지만, 정부는 관련된 혐의 로 사람들을 구속한다.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와 음란함으로 기소된 *** 사람 들도 다수다. 그들의 사건은 연말 당시 미결 상태였다. (중략) 2 월 9일 ***의 경찰은 *** 라는 단체 회원인 ***를 체포하였다. 형법 제 145 조에 의거한 부자연스러운 행위에 기입했다는 혐의였다. 해당 조항에 언급된 위법행위에는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성행 위와 동물과의 성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2 월 21일, 경찰은 ***를 보석으로 풀어주었다. 사건에 대한 심리는 아직 보류 중이다. (중략) *** 사람들은 사회적 괴롭힘, 차별, 협박 과 자신들의 인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공공의료서비스 접근을 거부당하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일부는 대중을 *** 사람들로부터 등돌리 게 하기 위한 설교를 하거나 글을 쓰기도 했다. (후략)

한편,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듯 ***는 ***년 처음 반***법을 소개하고 하고 ***년 ***월 ***일 발의(raufication)하여 ***년 ***월 ***일 입법하였고, 이어 ***년 8월 *** 헌법재판소에서 입법절차상의 문제로 해당 법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으나, ***.***.***.경 새로운 법인 행태로 제인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참고자료 18). 신청인 또

한 이러한 *** 내의 *** 밖에 상항으로 인해 앞으로 본인의 ***지향으로 인해 구금 및 무기 징역까지 가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다. 자의적 체포/구금

신청인이 경험했던 사복 경찰에 의한 자의적 체포 및 구금에 대해서는 미국 국무부의 ** *년 인권보고서에서도 짧게 다루고 있는데, 해당 보고서에서는 *** 헌법 및 범이 자의적 체 포/구금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 정부경찰이 ***자들에 대한 자의적 체포/구 금을 자행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9).

<자의적 체포 혹은 구금>

헌법과 범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보안대는 종종 사람들을 자의적 으로 체포하고 구금한다.

영국 내무부(UK Home Office) 보고서 또한 활동가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자의 적 구금에 대해 ***자를 향한 부정적인 정치적 또는 인론의 추폭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한 ***년 덴마크 보고서를 인용하며 '활동가가 아닌 ***자(Ordinary ***I persons, who a re not activists)'를 체포하는 경찰들은 보통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며 이러한 체포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경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또한 *** 이슈 가 인론의 주목을 받는 경우 ***자로 의심받는 자들에 대한 체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고 언급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20).

한편, 동 보고서는 덴마크의 ***년 *** Fact Finding Mission 보고서를 인용하여 ***자 가 구금 시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21).

2.5.10 구금 시설 내의 ***자의 처우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덴마크 EFM의 ***년 보고서는 구금된 ***자의 처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략) SMUG의 프 로그램 디렉터인 Pepe Julian Onziema와 리서치 기록 매니저/어시스턴트 Richard L usimbo는 보통 유치장에서 ***자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수감자들이라 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다른 수감자들에게 특정인의 ***지향을 알릴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인을 다른 수감자들의 폭력에 노출시킬 수 있다. 몇몇 사건에서 경찰관이 ***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संब행하고 지휘봉으로 수감자를 폭행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SMUG의 디렉터인 Pepe Julian Onziema와 리서치 기록 매니저/어시스턴트 Richard Lusimbo는 구금상황에서 ***자가 겪을 수 있는 학대의 경우 일부 경찰관들이 주로 심 리적인 고문을 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다른 수감자들이 ***자를 물리적으로 학대하도록 독려한다고 설명했다. 물리적 학대는 종종 다른 수감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경찰관들 또한 물리적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체포 시점에서 ***자가 폭행을 당하지 나 부처살에게 반류/구금(grouping) 당할 수 있다. 경찰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적인데, 그들이 부경 사람이 ***자(gay)임을 알게 되면 그 폭력성이 강화된다는 점 이 강조되었다. 'Icebreakers의 대표자는 ***자로 의심되는 자들은 경찰서에서 폭력을 당할 위험이 있다'라고 진술했다. (후략)

라. 국가 보호 부재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에 *** 경찰 또한 연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년 ***월 BBC는 '우리는 어디서 정의를 찾아야 하는가?(Where Do We Go For Justice?)'라는 제목의 27장 짜리 보고서를 인용해 ***의 경찰관들이 ***나 ***들에 의해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기를 일상적으로 거부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기사 는 *** 경찰관들이 구금된 ***자들을 괴롭히고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강제적인 신체 검사를 당한 사례, 성차별성을 빙미로 경찰들이 오히려 음란노출 행위, 변태적 성행위, 자 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성행위 등의 죄목으로 그들을 기소한 사례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7. 신청인의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가. 의심을 받았던 부분에 관한 해명 - *** ***, *** 귀국 이후부터 *** ***, *** 한국

입국까지의 출국 시도 경위

신청인은 학교 신분증이 *** ***, 만료됨에 따라 *** ***, ***경 ***에서 신분증비용으로 본인이 직접 머권을 발급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난민지위인정신청서에 *** ***, *** (*** ***)부터 *** ***, *** (*** ***)까지 약 1개월간 ***에 체류했다고 기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청인 이 September(9월)은 October(10월)로 착각해 기재해 기제한 것으로 변호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신청인이 해당 월(月)의 영문 명칭을 착각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이메일 서신에 따르면, 신청인은 ***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체류했느냐는 질문에 “나는 ***에서 ***월, 즉 ***년 ***월 ***일부터 ***월 ***일 (***)년 ***월 ***일, ***월 ***일 ***일까지 체류했습니다.”이라고 답을 하였는데, 이에 변호인 측에서 월(月)의 영문 명칭을 알려주며 다시 답변을 요청하자 아래와 같이 “***월 ***일부터 ***월 ***일 - ***일”이라고 확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위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신청인은 지속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자신의 *** 지향에 대해 묻는 사람을 빈번하게 만나기 시작하면서 ***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에 대해 큰 공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본국을 떠나 난민신청을 할 생각을 하며 주 ***에서 귀국 후 *** 미국 대사관(***, 날짜 미상) 및 영국 영사관(***, ***경)에 사증 신청을 하여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 ***경 영국 영사관으로부터 ***, ***, 면담 이후 발급 거부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참고자료 3, 4).

나. 의심을 받았던 부분에 관한 해명 2-신청인의 한국비자발급 및 한국입국 경위

한편, 신청인은 비자 발급 신청 과정 중에 위에서 언급된 브로커를 직접 본 적은 없으나, 중간에 ***가 해당 브로커의 의견을 전달받아 비자 발급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비자 발급이 더 쉽다는 브로커의 조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경력 employment]

브로커는 신청인에게 비자 발급 신청시 직임이 있으면 좋다는 조언을 했고, 이에 신청인은 당초 ***이라는 회사에서 일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면담조서에 따르면 그 기간은 ***, ***경부터 ***, ***월까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에 오기 위해 거짓 진술한 것이었으며, ***라는 회사는 신청인이 임의로 정해 기재했던 회사명이었습니다. 관련 경력 사실 증명 역시 브로커가 임의로 준비해온 것입니다.

[결혼 marital status]

또한 신청인은 결혼 여부를 기준으로 포기해야 유리하다는 설명에 비자 서류에 ***의 이름은 부인(wife)란에 기재하였으며, 한국 입국 시 결혼반지를 준비해 손에 끼고 입국하였

습니다. *** 역시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신청인은 비자 신청 서류의 어느 부분을 자신이 기재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신청인에 따르면 ***공항에서 면담 시 비자 발급 신청 서류를 육안으로 확인하였을 때 다른 사람의 필체로 작성된 부분들을 확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비자 발급을 위해 제출된 서류 중 브로커가 정확히 어떤 서류들을 위조하여 첨부하였는지 몰랐으며,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한국대사관에 직접 방문을 한 바도 없습니다.

참고로 신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과의 두 번째 면담 전 “거짓진술을 할 필요가 없다(there is no reason to lie)”라고 한 진절절한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자신이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했음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8. 결론

이와 같이 신청인은 ***자로서 본국에서 지속적인 박해를 받았으며, 귀국 시 본인의 *** 지향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국가정보보호서를 바탕으로 알 수 있듯이 *** 내 ***자(***에 대한 박해는 현재까지도 심각한 수준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해당 정부에서는 이러한 박해상황에 대한 보호의사가 없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귀국 시 겪게 될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서 비호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난민신청을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난민신청인의 변호인

***출입국·외국인청 난민심사관 귀중

2. 난민신청자의 해내 *** 활동(정치적 의견)

가. 원고의 인적사항 및 반정부활동

*** 군에서 장교로 충성스럽게 복무하다가 퇴직하신 아버지의 밑에서 ***. 태어난 신청인은 ***에서 태어나 살다가 *** 부터 *** 까지는 수도인 ***에 다니다가, *** 부터 *** 까지는 ***시에 있는 기술전문대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 부터 ***. ***. ***. 출국 전까지 수많은 시위에 참석하였고, 특히 대통령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인 ***. ***. ***. 부터 ***. ***. ***. 까지는 주로 ***시 안의 기술전문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조직된 ***이란 단체에서 Mechanical 학부의 대표로서 반정부시위에 참여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일주일에 3번 이상 반복하여 학내시위에 참여하였고 특히 ***. 1.-2.경 20~30회 이상 몇몇의 친구들과 함께 학내시위를 조직하고 주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군부 쿠데타로 인해 ***의 손상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쿠데타 이후에 반정부시위활동 과정에서 사법당 사법들의 진상을 밝히고 체포된 사법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 - 즉, 민주주의 회복, 폭력진압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었습니다(갑 제2호증 난민면접조사서 6면, 갑 제5호증 사진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명 이상이 죽었고, 몇백 명이 감옥에 수감되기도 하였습니다.

나. ***. 초 경찰, 국가인보국(국정원에 해당)의 1차 수사 및 구금

피고는 대학생으로서 활발한 반정부시위활동 중 ***. 초 신청인은 학교길에 갑자기 체포된 이후 ***시에 있는 국가인보국의 조사를 받아 '시위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주로 시위에 참여하는지, ***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1-2시간 정도 받고 5시간 정도 구금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갑 제2호증 난민면접조사서 7면). 이 즈음부터 신청인은 정찰에서 자신을 주목하고 신원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 ***. ***. 경찰의 체포 및 조사, 국가인보국, 검찰의 2차 수사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위를 계속했던 신청인은 ***. ***. ***. 대학교 앞에서 시위가 끝난 후 시범을 치르려 수업을 들으러 가던 중이었는데, 한 노인과 두 청년이 다가오더니 주

별첨2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 의견서

난민신청자 ***(***)생, ***국적)의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서

1. 이 사건 난민신청자의 난민신청 경위 및 박해의 원인

화성의국민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이 사건 난민신청자 ***(***)생, ***국적, 이하 '신청인'이라고 함은 현 *** 대통령이 20** ** 쿠데타를 통해 전 대통령을 축출하고 20** **, ** ** 선거를 통해 공식적인 대통령으로 추인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신청인의 대학 교에서 ***이란 단체 속에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학생운동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 국가인보국, 관찰에 의해 일정기간 구금 후 정역 **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청인은 행사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으로 인해, 가족들도 반정부정권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체포가 임박하였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급히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 국적자들이 피신하는 말레이시아로 피신한 후 미등록 체류상태에 있어 ***로 송환될 것이 두려워 고민차 친구의 도움으로 출국하여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고, 이에 입국 하자마자 이를 후에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 **, 문장 서울출입관리사무소를 찾아 난민 신청(갑제1호증 난민신청서)을 하여 ***로 송환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례적으로 5일 후인 ** **, 난민면접이 잡혀 2시간 반 만에 신속히 종료되었고, 결과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 **, 불인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실상 박해의 위험이 명백한에도, 신청인이 소치한 제반 증거를 고려하지 않은 채 *** 난민신청자들에게 대한 편견,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유를 들어 남용적 난민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이나, 난민신청자의 박해를 추단할 수 있는 증거들, 그리고 ***의 국가정황을 소개하고, 불인정결정서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지적하였습니다.

난민신청인이 ***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게 될 이유는 첫째, 확정되어있는 ***년 동안의 정역 및 노동형이 포함된 행사판결, 둘째 '학내에서의 ***활동' 때문입니다.

3. 정부에 반하는 정치적 활동가들에 대한 고문, 구금, 부당한 사법절차를 통한 박해(기록이 지나치게 반대하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와 관련된 COI 자체는 너무 많음에도 따로 원문을 첨부하거나, 모두를 집약진 않았습니)

가. *** 정부의 반정부활동가 및 학생운동 탄압 국가정황 개략

****, ****, ***. 군사쿠데타로 인해 집권한 *** 대통령은 전 정권의 핵심 지지계층인 무슬림계단을 불법화하고 관련 인원들을 모두 사형을 처하는가 하면, 쿠데타 및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해 반대 정치적 의견을 펼치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처벌해왔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특정장소에서의 원칙적 금지', '초고액의 벌금형' 등으로 아예 봉쇄하고, 관련 형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악법으로 매우 요건이 간단한 'Article 80(d), 허위 정보 및 소식 유포, Article 86: 테러리즘 옹호, Article 201: 선동, 소모'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는 우선 Rally(집회)도 Protest(시위)의 개념으로 생각하여 군인과 경찰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일단 진압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집결성이 추후에 시위가 되어서 큰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그들이 점차 테러로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에 때문입니다. 따라서 큰 rally가 있을 때마다 군대가 파견되고 거기에 따른 많은 사상자들도 같이 발생됩니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경찰이 많은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체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길거리에 매복했고 그들에게 불시의 검문을 실시하여 그들의 휴대폰에서 반정부에 관한 이미지가 발견이 되면 바로 체포하고, 들의 Facebook이나 SNS를 강제적으로 검사하여 반정부의 글들이 있을경우 바로 체포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밖의 감옥으로 보내지는데, 고문과 강제절종도 일어납니다. 평화롭게 시위하던 사람들이까지도 체포하여 재판받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판사도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 "정치"으로 의지하며 그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사법제도 자체도 매우 불공평하여, 재판 전 구금이 만연하며, 경찰의 보고서 및 한국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국가안보부의 게임이 정치적 시위 관련 모든 조사에서 만연하고, 벌은 이를 형식적으로 그대로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점찰보고서와, 국가안보

를 받아 입국하였습니다.

바. 난민신청서 접수 및 심사결정, 갑자기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고 구금

한국에 오자마자 이틀 후인 ****, ****, 곧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난민신청(감제 1호중 난민신청서)을 하여 ****로 송환되지 않으려 하였는데, 매우 이례적으로 5일 후인 ***, ****, 난민면접이 잡혀 2시간 반 만에 신속히 종료되었고, 결과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 ****, 불인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불구하고, 5일 만에 인터뷰 날짜가 잡히고, 2시간 반 만에 종료되었다는 것은 이미 **** 난민신청자들에게 대한 편견으로 불인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매우 이례적이고, 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하며, 난민신청사와 출입국사법신청사가 분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도중 여권심사인이 위조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고려하여 신속히 불인정결정을 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결국 난민신청을 자진하여 하려 했고, 위조심사인 여부도 시인하였음에도, 과연 왜 박해를 피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소명도 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내려진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으로 인해 구금되었고, 이미 과거 감옥에서 술한 어려움을 겪었던 트라우마로 고통 했던 신청인은 변호인을 만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단식을 하고 있었고, 이미 이의신청접수일에 보호되었을 때부터 ***개월이 지났던 최근에도 ***일 이상된 단식으로 급격히 쇠약해졌다가, 이제 다시 변호인의 점검을 통해 진행상황을 실명을 듣고서야 음식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 ****, ****, ****, 최초 점견당시의 신청인

(사진)

▲ ****, ****, ****, 2차 점견당시의 신청인

(사진)

- 이 조항은 온라인 범죄를 나타냅니다. 즉, 테러나 범죄를 옹호하는 모든 글이나 신문을 동조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나 혹은 SNS 계정을 만들 시 이는 모든 온라인범죄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온라인상의 활동들까지도 억압하고 통제한다는 말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Article 35: "sets a fine of up to \$64,000 for the publication or broadcast of 'false news' about terrorist acts or security operations" - 출판되어지는 발행물과 혹은 테러리스트의 활동과 보안작전에 대해 "허위뉴스"를 내보내는 매체는 최대 \$64,000 (65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위 뉴스"란 국방부가 내놓는 공식자료와 다른 문서를 뜻합니다.

나. 신중인의 상황과 ***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 Electric 학부 동료 ***의 도움 - 난민심사과정에서의 추가적인 입증의 필요성

(사진)

▲ ***과의 신청인 변호인의 영상통화

신청인이 화성의국인보호스에서 점견한 변호인이 관련 증거나 증언을 제출 수 있는 사람을 찾자 신청인은 자신의 절친한 친구였던 ***이 자신보다 먼저 피신하여 ***에서 난민인정을 받았으며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고, 이에 소송대리인은 친구와 화상통화를 통해 접촉한 후 관련 자료들을 받았습니니다.

[위] ***의 경우 신청인과 함께 대학교에서 Electric 학부 대표로서 *** 활동을 하다가 ***로 피신하였습니다. 위***는 친구 원고로 ***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한국으로 찾아와 과거의 사건들과 원고가 처할 바와의 위협에 대해 증언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우선 관련 서류들과 회소서를 받았는바, ***는 *** 이민국에서, ㉠ ***의 명확한 국가정황, ㉡ ***의 과거 활동 및 구금, ㉢ 과거에 국가인보국과 검찰에서 받은 조사내용 등을 감안하여, ***가 ***로 송환될 경우 *** 대응성에 반하는 정치적 의견을 기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갑제10호증의1 *** 진술서, 갑제11호증의1 *** ***난민인정증명서, 갑제12호증의1 ***난민신청서, 갑제13호증의1 *****)난민기록.]

부의 조사내용만을 근거로 신청인의 일관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 간부였던 신청인에게 수사결과만을 근거로 혐을 선고하였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가 반테러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흔히들 검사들의 권한이 막대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법원의 명령없이 자체적으로 사람들을 감시, 구금, 처벌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2조, 제8조, 제18조, 제28조, 제29조, 제35조는 매우 모호한 규정들로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Article 2: this article provides very vague definition of "terrorism" -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테러"라고 정의되어 지는 것은 "undermines national unity, social peace and national security"입니다. 즉, 아무런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공격성이 없는 집회이더라도 정부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룹이라면 ***가 정의한 테러 집단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가의 안보와 사회적 평화를 약화시키는 행동은 "테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Article 8: "absolves law enforcement agents from criminal responsibility if they use force to implement the law" - 이 내용은 범을 이행하기위해서 "law enforcement agents" 즉, 정부나 경찰 군대 등 법적인 힘을 발휘해도 아무런 범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조항의 내용을 토대로, 많은 경찰과 군대들이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고문시키고 강제실종을 시켰습니다.

Article 18: "stipulates that anyone using violence, or the threat of violence, to overthrow the government or change the constitution or 'ruling system' will be punished by 10 years to life in prison" - 이 조항은 정부의 헌법과 "ruling system" 즉, 정부가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폭력 혹은 폭력의 위협을 이용하는 모든이는 감옥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Article 28: criminalizes "directly or indirectly" promoting terrorist acts with words or by any other means. - 28조항, 테러리스트의 행동을 동조하는 모든 단어나 어떠한 의미가 담긴것들은 직·간접적으로 범죄화한다고 나와있습니다.

Article 29: "defines as a cybercrime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media account or a website that promotes 'ideas or beliefs' that encourage terrorism or violence"

다. 신청인의 *** 동료들의 현황

한편 *** 궤에서 신속히 난민인정을 받은 위 *** 외에 다른 동료들은 ***에서 피신청자나,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있거나 한 상황입니다. 신청인의 변호인이 ***, ***, ***, 화성보호소에 제차 접견하여 요청하여 신청인이 작성하여 팩스로 받은 기억나는 현재 *** 동료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갑제14호증의1 ***, ***, ***, 화성보호소 작성 *** 박해 현황)

, *** 간부

- ***, *** - 반정부운동의 대표, 부친은 현재 2년 이상 ***의 감옥에 투옥 중.
- 신청인 *** - 공학부 대표, '***보호소'에 수감 중.
- *** - 전자전기부 대표, 과거 10개월간 투옥, 현재는 *** (난민), 부친은 현재 2년 이상 투옥 중.
- *** - ***학부 대표, 현재 *** 거주.
- *** - ***학부 대표, 현재 2년 이상 투옥 중.
- *** - ***학부 대표, 과거 ***개월간 투옥 후 보증금 납입으로 일시 석방 받음, 현재 *** 거주.

*** 거주.

- *** - ***부 대표, 경찰에 총상 입음, 현재 *** 거주.
- *** - ***학부 대표, 3개월간 투옥됨, 현재 *** 거주.

반정부운동 일부 구성원들의 어려움.

- *** - 감독자, 3개월간 투옥..
- *** - 반정부운동의 대변인, 3개월간 투옥됨.
- *** - 사친가, 현재 *** 거주.
- *** - 사친가, 시위 중 총상 입어 오른쪽 눈 실명, 현재 투옥 중.
- *** - 현재 투옥 중.
- *** - 현재 투옥 중.
- *** - 본인(***)과 함께 수감되었음, *** 거주.
- *** - 경찰에 총상을 입고 그 다음날 숨진.
- *** - 현재 *** 거주.

그 군대는 정신이 나간 아주치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을 체포하 있습니다. 저와 *** 그리고 저의 반 친구들은 저의 반 친구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반 학생들 중 17명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죽임을 당했고 몇백 명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군대는 저와 ***를 역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년 ***월 ***일에 감옥에 들어갔고, ***는 ***년 ***월 ***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대학교에서 그 군대 조직을 반대하는 시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 했듯이 저와 ***의 사건을 조작한 사람의 이름은 ***이라는 사람이고 ***는 3년의 형을 받았고 저는 어떠한 형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서류 조작일 뿐 법정에서의 어떠한 정당한 판단이나 판사의 결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에게 3년형을 살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상 운이 좋아야 합니다.

시위에 참여하였던 학생이 엄청 많고 경찰들이 그들을 모두 체포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찰들은 그들이 체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능한 많이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모두 그것은 법정에서의 정당한 결정이나 판사의 의견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25년형의 형을 살거나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그 감옥을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지옥과도 같거든요. 그들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고문시키고 전기 고문을 가하며 그리고 물과 음식을 주지도 않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 도망쳐서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에 있고 ***는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5월 말쯤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작업과 같은 많은 일을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년 ***월 ***일 저는 법원으로부터 지금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저는 ***가 지금 한국의 감옥에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만약 ***가 ***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는 더이상 햇빛조차 보지 못할 것입니다. ***를 도망쳐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3년이 아닌 그것보다 더 심한 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를 풀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는 ***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미 경험했으니(갑제10호증의1 *** 진술서, 갑제10호증의2 위 번역문).

에서 ***로의 강제퇴거의 위험 속에 구금되어 있는 기간 만회 상황입니다. ***의 병환한 국
가경찰 속에서 과거 활동이 입증된 사람들은 박해의 위험이 명백한바, *** 이민국은 ***의
경우 신청인과 달리 3년형과 같은 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난민협약의 의미를 잘 고려하
여 난민으로 인정하였던 것인데, 더욱이 신청인의 경우 정역형까지 선고받아 박해의 위험
은 더욱 병화합니다.]

4. 이 사건 난민불인정결정서의 기재의 문제

예를 들어, 난민불인정결정사유서에 피고가 적시한 '신청인 제출 서류가 원본이 아니
어서 신빙할 수 없다'는 기재는 난민협약 자체에서 난민에게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와 방식에
관한 특수성 및 사실인정을 진술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대법리를 완전히 불
하고, 오히려 난민신청인과 함께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심사관의 의무조차 성
실히 다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신속히 이뤄진 1차 심사 당시에 과연 엄밀하게
당해 서류 자체를 검토하였는지조차 의문입니다.

'같이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친구들은 지금에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라는 이유는, 신
청인이 일반적인 수동적 시위참여자가 아니고 주도적인 시위 주동자여서 실제로 주목을 받
아 체포 및 구금, 형사판결까지 받았다는 사정을 간과한 것이고, '학비를 벌기 위해 한국에
온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재는 정치활동 속에 학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아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 연배의 학업지속에 대한 열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난민에게 갖는
 편견일 뿐 아니라, 신청인은 사실 교육을 이어가고 있으나 ***에서 거주할 경우 생명의 위
험이 있기에 타국으로 온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5. 결어

이 사건 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임이 명백한데, 현재 보호상태에 있어 매우 괴로운 상
태에 있으나, 여러 사정이 간과되어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하였는바, 이의신청 단계에서 신
속히 난민으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의사법원에서 15년형 선고받음.
- ***, ***, ***, *** 등 많은 사람들이 3개월 또는 6개월의 다른 형기로 투옥되
고 있음.
- 저의 친구 대부분은 투옥 후 벌금을 지급한 후에 일시석방 되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법원에서 형기를 받거나 경찰에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 ***, ***, ***, ***, ***, ***의 다른 7명의 친구들은 다른 시위에서 경찰들에게 사살되
었습니다.
-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본 이슈에 대하여 협력하여 일
하고 있으며, 사상자들의 가족과 부상자, 수감자들을 방문하고 돕고 있으며 대중의 제
문과 공론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라. 신청인의 경우

㉠ 이 사건 난민심사는 지나치게 단기간에 이루어져 신청인이 제출한 시위참여 사진 등
(현재 확보사건에 없는바, 제출했던 갑 제5호증 원본은 ***출입국 당해 심사관이 소지하
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및 번역에만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 각종 수사서류 등을 엄밀하
게 검토하지 않고(원본이 아니라서 확인할 수 없다고 함)은 물론이거니와, ㉡ 위조심사인을
적발한 이후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이 난민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정밀한 심사 없이 내려진
것입니다.

신청인의 경우 ㉠ 피고의 1차 난민심사 시에는 고려되지 못했던 현재까지 새롭게 제출된
최분시점의 자료들, 즉 3년형 선고 판결문, ㉢ ***의 국가정황정보, ㉣ *** 난민신청자 친
구 ***의 증언 등, ㉤ ***의 간부들의 현재 박해상황을 고려하면 난민임이 분명한바, 신청
인의 경우의 집행되지 않은 3년형의 집행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 명백한 점에 더하여, 조사
목적 밖에 및 고문 등을 당할 가능성이 있고, ***를 반대하는 신청인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활동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것이 분명히 예상됩니다.

[난민신청자의 사건은 개별적으로 평가해야하는 것이 맞으나, 친구 ***로 간 친구 ***가
처럼 상황과, 한국으로 온 신청인이 처한 상황을 비교해보아도 가슴이 아픕니다. 한 친구
는 신속히 난민인정을 받아 대학교에 다니며 학업을 지속하며 시험을 치르고 있고, 신청인
은 2주도 안된 심사에서 문장 서류조차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기각되며, 외국인보호소

증거자료

- 감제1호증 난민신청서
- 감제2호증 난민면접조서
- 감제3호증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 감제4호증 난민불인정사유서
- 감제5호증 ***활동사진들
- 감제6호증의1 경찰 *** 수사보고서
2 번역문
- 감제7호증의1 국가안보국 참고 ***의 수사보고서
2 번역문
- 감제8호증의1 ***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보고서
2 위 번역문
- 감제9호증의1 *** 지역 법원 판결문
2 영어 번역문
- 3 한글 번역문
- 4 판결문 사본 습득 요청 메일
- 감제10호증의1 *** 진술서
2 위 번역문
- 감제11호증의1 *** 난민인정명령서
2 위 번역문
- 감제12호증의1 *** 난민신청서
2 위 번역문
- 감제13호증의1 ***이민국난민기록
2 위 일부 번역문
- 감제14호증의1 신청인 ***, ***, 보호소 작성 *** 동료들 박해현황

별첨3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장

청구원인

1. 이 사건의 쟁점 - 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가 예상되는 원고의 난민지위 확인

가. 난민신청 경위사실 - 본인소송 중 변호사대리

원고는 ***, 피고에게 난민신청을 하여 ***, 120 난민면접조서(을 제3호증의1) 후 단 9일 판127인 ***, 이 사건 불인정결정(갑 제1호증)을 받고,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면접조사 당시 '10년 동안 *** 사건만 했다'라고 주장했던 난민심사관은 'Yes / or No'로 대답할 것을 요청하며 신속하게 면담을 종료하였습니다.

우수한 성격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원고는, 1) 상세한 내용 준비서면(이하 '원고 본 인진술서'라고 합니다), 2) 그리고 법정에서 하가를 얻어 시행하려고 했던 자기의 이야기를 담은 에니메이션(이하 '원고 이야기삽화'라고 합니다) 등을 준비하였으나, 방대한 내용이 적실하게 정리되지 못했고, 이에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문제와 몇가지 사정이 겹쳐 충실하게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의 무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공익변호사단체의 현재 소송대리인을 만나게 되어 변호사를 변경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126) 한 달도 되지 않아 난민면접이 잡힌 것은 난민신청서만으로 '명백히 이유없는 난민으로 기각할 것을 예상하고 신속히 잡은 것입니다.'

127) 9일, 추가적인 조사 면담, 공진 불인정결정을 상신하며 결재를 받는 기간으로서, 통상적으로 여러 사무소에 서의 난민신청서 검토, 면담, 국가정황조사, 경제사신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더라도, 설정된 난민인정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상 불인정결정의 예단하에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국적국 밖
에 있을 것. ② 국적국에 돌아갔을 때 받을 위해가 두려워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
하지 않을 것. ③ 위 위해에 대한 두려움은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④ 국적국에 돌아갔을
때 받을 위해는 피해에 해당할 것. ⑤ 위 피해는 협약상의 근거(국적, 인종, 정치적인 의견,
종교,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의 신분)로 인한 것일 것

원고들의 경우 ①, ②는 충족하고, 독재 중인 *** 정당한 집권과당 ***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므로 ⑤ 역시 충족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③, ④ 두
요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④ 국적국에 돌아갔을 때 받을 위해는 피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입니다. 이하에서 신청자가 이 사건 난민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위 요건의
충족여부를 주장, 입증하겠습니다.

2. 신청자가 이 사건 난민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거의 박해사실

가. 원고의 과거 경험 및 피해에 관한 직접 증거들

- 원고본인진술서 및 발췌번역문(갑제5호증의1, 갑제5호증의2) : 본인소송으로 수행할
때 원고가 논문과 같은 형식으로 '원고의 정치적 견해, ***의 정치적 상황 및 원고의 과거
경험 및 피해'를 상세히 다루고, 원고의 관련 서증들을 첨부한 형태로 제작하여 ***자로 제
출한 *** 준비서면은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아 부진술되었습니다.

원고의 정치적 취약성과 난민소송과 관계된 정보가 어떤 경우든 *** 정부에게 유출될
것에 대한 두려움 속, 원고가 'Confidential'이란 watermark를 모든 페이지에 넣고, 자신
을 도외준 사람들의 이름을 익명처리하여 종전의 준비서면을 갑제5호증의1로 제출하며,
그 중 '원고의 과거 경험 및 피해' 부분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한 목차 '3. Personal Histor
y and Testimony' 부분을 발췌번역하여 번역문을 제출합니다.

- 원고 이야기상화(갑제6호증) : 공학도이자, 동시에 ***에서 예술활동을 해왔던 원고가
본인소송 중 자신의 이야기를 재판부에 설명하기 위하여 '직접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컴퓨터
로 작업하며 프리젠테이션으로 하려고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이 있습니다.'¹²⁸⁾

이 부분이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어, 위 애니메이션 파일을 원고가 다시 PDF 파일로 만들
고 영문 설명을 붙이고, 한글 번역도 붙여 제출합니다.

소송대리인으로서도 난민소송에서 이같이 상세한 진술을 직접 준비한 것은 매우 희귀한
것이며, 극도로 자세한 과거 경험에 대한 묘사와 설명(갑 제5호증), 그리고 그 중 자신이
기억하는 상황을 최대한 재현하여 직접 그린 그림들(갑 제6호증)은 사실상 과거 경험의 사
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나. 난민으로서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고려가 필요한 원고의 정신적 취약성

한편, 원고는 아직 심리상담 등의 전문적 도움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 무통, 불면증 등으로 병원에 자주 왕래하였던 한편(갑제18호증 소견서 및 진료확인서
등),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하고 취약합니다. 특히 ① 자신의 난민신청과 관계된 사실이
본국에 어떻게든 흘러들어가지 않을지, ②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을지, ③
***년간 구금되었던 아버지에게 또다시 피해가 가지 않을지, ④ 정치적 자유가 실종되고, 박
해가 명확히 예상되는 ***로 가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정신과적 도움도 필요한 상황입
니다.

소송대리인을 만날 때에도 ㉠ 핸드폰 등에 녹음되지 않을까지의 염려로 전원을 꺼줄 것을
요청하고, ㉡ 모든 증거는 이메일이 아닌 CD나 USB에 직접 담아서 전달하고, ㉢ 사이트백
에는 자물쇠를 채우고, ㉣ 심지어 CD나 USB에 담아서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한 파일에도
암호를 걸어서 주고, ㉤ 제출하는 서류들에 Confidential water mark를 다시 붙이고, 중
요한 관련자의 이름을 익명화하기도 합니다. 이같은 원고의 보안에 관한 철저성, 송환에
대한 두려움은, 한편 원고의 과거 경험의 진실성을 추단하는 또다른 증거가 됩니다.

다. 원고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미 상세하게 원고 본인진술서(갑 제5호증)에 설명되어 있으나, 그 경위를 일부 요약하
며 원고의 이야기상화(갑 제6호증)에 원고가 직접 그린 그림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하겠습
니다.

128) 발췌 설명을 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수도 ***에서 약 780km 떨어져 있는 ***는 *** 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의 주도입니다. 현 잠간여당의 핵심지인 ***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갔던 원고는 뛰어난 성적을 유지하고 최선을 다해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사진)

▲ ***에서의 원고

그러나 ***에서는 잠간여당의 종족인 *** 종족의 엘리트를 키워내는 곳인 만큼 ***에 대한 정치적 충성을 감호하였습니다. 특히 ***에 대한 충성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고, 관련 모임에 참석하지 않자 3학년 무렵 ***라는 담임 강사가 ***를 지지하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주요 과목에서 낙제점을 주겠다는 지속적인 압력을 통해 방해를 했고, 실제로 이로 인해 유급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4) ***에서의 '*** 활동'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려웠기에 경제적 자립이 필요했고, ***에 대한 충성을 강요받는 ***의 학내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하기도 했던 원고는 ***라는 스튜디오(직업장)를 만들어 예술활동과 학업을 병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려웠기에 경제적 자립이 필요했고, ***에 대한 충성을 강요받는 ***의 학내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하기도 했던 *** 스튜디오는 학내 다양한 작품들을 판매하고, 한쪽에서는 T100문신을 하기도 했던 *** 스튜디오는 학내에 유명하게 알려졌고, 뛰어난 학업실력뿐 아니라 사업적 성취까지 하는 원고를, 친구들은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원고는 *** 지역 방송(***:20) 등 언론에도 인터뷰를 통해 알려지기도 하며 학교 측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 스튜디오는 위와 같은 사업활동 외에 다양한 연구자들과 사본들의 네트워킹 장소 및 원고의 정치적 견해를 전차 피드리는 장소로 점차 활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주로 '***의 학생', '사업적 동료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외국인 초빙강사들)130을 스튜디오에 1달에 1-2번 정도 초청하여 미팅을 가졌습니다. 연구자들에게는 ***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예민한 주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2~4회 지난 후

1) 원고의 유년기와 아버지의 구금

1988년(서양 달력입니다. *** 캘린더는 이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가능한 한 서양 달력으로 통일하여 표기하겠습니다)에 수도에서 태어난 원고는 9살 연상의 누나, 10살 연상의 형과 자랐습니다. 원고는 포레들과 달리 살던 곳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아버지 없이 어머니의 양육 속에 자랐습니다. 원고가 ***살경인 ***년 무렵 원고의 아버지는 집에 찾아온 군인들에 의해 끌려가 ***년간 돌아오지 않았고, 원고가 기억하는 당시의 마지막 모습은 끌려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도 원고는 주로 미술대회에 참가하여 여러 차례 수상을 하며 예술적 재능을 키워나갔습니다.

원고의 아버지는 공군으로 근무하다가 주지사(governor) 아래에서 일하는 ***로 상당히 힘에 이르렀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주지사의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3개월간 구금되었다가 풀려나 사임해서 미간인이 되었는데, 이후 ***년 *** 정권이 붕괴되고 소수 종족으로서 현재까지도 ***를 장악하고 있는 *** 종족에 기반을 둔 ***가 집권하게 되면서 구금되었던 것이었습니다.

2) 11년 만의 아버지의 석방 및 재회 - ***에 대한 반감의 시작

원고가 **세가 되었던 무렵 즉 ***년경 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년동안 만날 수 없었던 원고의 아버지는 건강이 매우 쇠약해졌었고 심각한 우울과 분노를 동반한 증상을 보이고 제쳤고, 과거의 이야기를 잘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현재도 원고의 아버지는 이동의 자유는 있지만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고, 해외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고는 아버지를 **년간 구금하고 그 인생,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속 자신의 인생마저 망가뜨린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점차 키워가며, 집으로 되돌아온 최악한 아버지의 입장을 반드시 노력하였습니다.

3) ***대학에의 진학과 *** 지지에 대한 압력과 거절

원고는 120명의 응시자 중 차석이라는 매우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정부의 배정에 따라 수도를 떠나 멀리 있는 ***대학의 *** 학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129) ABC가 아닙니다.

130) 미국, 이스라엘,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의 다양한 국적이 있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후, ***은 몇 달간 보이지 않았고, 짐차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저에게 그림자가 따라붙은 것만 같았습니다. ***은 몇 개월 동안 실종되었고, 제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던 제 주변 사람들이 저의 핸드폰을 감시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매주 기차, 차로 내지는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오직 탄산음료만 마시면서 서로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언제나 짐장을 잃었습니다. 제로는 모르는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마지키다했다는 듯이 짐치 또는 ***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미 방문했던 장소들을 언급하기도 했고, 때로는 클라이언트로 위장하며 제게 말길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현지 클라이언트들과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에게 칭가를 했는지, 어떤 정치인 내지는 정책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묻거나, 정치에 대해 하소연을 하고, 정부 부처를 방문했을 때 겪은 어려움, **에 참여하기 위해 ***로 가는 군인들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속한 사회적 모임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 제 옆집에 살던 부부가 이사를 가더니 며칠 뒤 바로 한 명의 남자가 이사왔습니다. 그는 제가 귀가한 뒤 항상 몇 분 간격으로 역시 귀가했으며, 제가 아침에 택시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 기기에 있기도 했습니다. 제 스튜디오의 임대인은 제가 왜 벽에 *** 지도를 붙여두었으며, 입수 권도에 대해 묻는 등 이전에는 하지 않은 질문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으며 1980년대에 제작된 다른 지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몇 주간 계속되었고, 불안과 공포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중략)

몇 주간 이러한 증상을 겪던 저는 이사를 결심하고,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집을 중아문런 시내 시설이 배치되지 않은 곳을 골라 이사했습니다. 입수임을 들며 저는 모든 시설을 직접 완비했고, 임대인은 그 사실을 누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사를 저 몇 주 지나지 않아 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의 모퉁에 살던 젊은 학생 몇 명이 이사를 가고, 저와 생활패턴이 유사한 한 명의 남자가 이사왔습니다. 그 뒤, 실종된 지 6개월 만에 ***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지만 이전과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는 셔츠만 입던 이전과는 다르게, 날***와는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재킷을 입고 주머니에 계속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처럼 먼저 말을 하기보다는 제가 할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각 제5호증의2 12면).

에는 ***의 인종차별적 정책(Apartheid)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 종족의 지배를 전제하고 건설된 이 집권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취지, ***가 훼손하고 있는 ***의 전통으로 돌아 가야 한다는 정치적 연설을 사람들에게 지속하곤 하였습니다(한편 *** 언어에 대한 가이드북도 스튜디오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페넌기도 하였습니다)(각 제17호증의1), 131) 이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원고를 추앙했던 사람 중에는 친구 ***도 있었습니다(원 ***은 원고의 스튜디오 내에서의 활동을 매우 잘 알고 지냈었으나, 후에 원고를 배신하고 **의 스파이가 되었습니다).

5) 2014년 ***의 사업인수 제안 및 거절과 집단 폭행 사건

2014년경 ** 지역에서 점차 유명해졌던 원고의 스튜디오를 공동으로 경영하자며 사실상의 인수제안을 ***라는 사람이 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 중순경 원고를 초청한다는 저녁식사 자리가 있어 가보았더니 ***가 있었고, 다시 한 번 그가 스튜디오 인수제안을 하여 다시 거절하자, ***가 고용한 사람들이 집단 폭행과 심각한 협박, 애권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를 죽여서 피를 마시고, 시체를 끌고다닐 수도 있다와 같은 협박도 있었습니다. 상처를 입고 병원에 간 후 다음날 원고는 경찰서에 ***를 고소하였습니다.

6) *** 경찰서장이라고 소개한 ***의 고소취하 증용과 협박 - 이후 지속적인 원고에 대한 미행 등

얼마 지나지 않아, 제2구역 경찰서장이라고 소개한 ***이 경찰서를 방문하라는 전화를 원고에게 걸어왔고, 이 전화가 끝나기도 전에 원고의 스튜디오에 두 명의 군인이 와서 원고를 체포하여 끌고 갔습니다. 당시 원고의 친한 친구 ***도 경찰서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은 원고를 협박하며 ***가 주도한 원고의 집단 폭행에 관한 고소를 취하할 것을 증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스튜디오를 정부가 빼앗아 갈 것이며, 세금문제로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고 하며 불이익을 줄 것을 말하였습니다. 한편 ***은 '미술 스튜디오와 예술활동을 해하는 지, 오프라인에서 왜 외국인들과 네트워킹을 계속해서 하는지, 스튜디오에 총을 소지하고 있는지, 전화기가 몇 개 있었는지와 같은 일들을 위협적으로 물어왔습니다. 원고는 고소를 취하

131) 제2면 감사의 글 맨 밑에 ***의 이름이 저자 ***의 감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났던 친구 'B'의 안전한 집에서 머물다가, ***로 돌아가 몇 주간 스튜디오를 정리하고, 다시 친구 'A'의 도움을 받아 ***으로 유학생 신분으로 출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원고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

가. 일반적인 정치상황(갑 제7호중의 2011년도 *** 국가개황자료, 갑 제7호중의 2 범
 무부 국가정황자료집 ***편)

*** 정권이 ***년에 봉기하고 과도정부가 들어선 후 ***의 소수종족인 ***족이 모든 실권을 주고 있는 ***가 ***년 들어선 이래 지금까지 사실상의 일당독재가 이뤄지고 있는 ***는 인종 간의 갈등의 불씨를 내재한 채, 사법부의 미독립, 자의적인 구금과 고문, 군사법기관의 초법적 활동을 기반으로 한 반*** 정치적 견해에 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에서는 반*** 활동을 펼쳐 정부로부터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지정되어 있는 *** 멤버들이 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를 주장하며 난민신청을 하여 난민지위를 인정받거나,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원고와 같이 *** 측은 ***가 정권을 잡기 전인 *** 정권하에서는 특권 계층이었고, 정치적,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높았는데, ***가 정권을 잡은 후 탄압받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 종족은 *** 정권하에서 *** 민족이 아닌 민족을 실제로 출출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영향력 강화하며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행태의 차별이 자행됩니다(갑 제 16 호중 호주 난민심판원 보고서).

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국가정황들

1) 정권교체기 ***정부의 공직자들에 대한 체포와 비사법적 장기구금

***년간 구금되었던 원고의 아버지처럼, ***가 ***년부터 과도정부시기를 지나 ***년 최종적으로 정부를 수립하기까지 과거 공산정부의 공직자와 당직자들을 사법절차 없이 장기 구금한 사례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7) ***년 총선을 앞두고 ***학년 무렵 생겨난 ***의 지지에 관한 세미나 코스 강제 수강 압박과 원고의 저절 - 웹페이지의 개설

총선을 앞둔 ***학년 ***년에 선거철에 ***에서는 ***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주제의 세미나를 강제로 이수할 것을 요구했고, 극도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유급에 대한 협박, 기속사를 강제로 이동시키거나, 매우 어려운 과제를 계속해서 내주거나, 원고가 준비하고 있었던 해외인턴십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계속하였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속 원고는 ***이라는 작은 웹페이지를 만들어 탄압에 관한 경험들 - 주로 대학 내에서의 차별, 그리고 정부의 교묘한 잔인함 - 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 후 이전에도 주목받았던 원고의 스튜디오의 홍보물이 갑자기 불어 그을린다던지, 협박 전화가 스튜디오로 걸려온다던지 하는 일이 점차 더욱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두려움 속에 더 이상 혼자서 살수가 없어 스튜디오에서 교류하던 외국인 친구 'A'의 도움을 받아 아내에게 되었습니다.

8) 남부로의 여행과, ***에서 ***와 연계된 사람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체포와 조사

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견들을 한내에서,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외국인 연구자들에게 표명하고, 이에 관한 차별에 합법적으로 한내에서 저항하고 해왔던 와중 점차 알 수 없는 일들이 원고에게 일어나 실제론 신변에 위협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점차 심체화되자, 원고는 잠시 심신을 쉬러 *** 그리고, *** 근처의 국경심사대를 넘어 멀리 ***로 여행을 갔습니다(는 바닷가가 없습니다).

***의 해안가 휴양지인 ***에 갔을 때 갑자기 두 명의 남자가 원고를 차량에 강제로 탑승시킨 후 수갑을 채워 '경찰'이란 글씨가 쓰여진 아디론가로 원고를 체포하여 데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신원불상의 사람들은 ***가 아닌 ***에서 원고' 해왔던 일에 대한 심문을 계속했고 - *** 북쪽에서 원고가 도대체 무엇을 해왔나, 어떤 사람들을 만났나, 누구와 이야기를 나눴나 - 원고는 총알이 장전된 AK47앞에서 종전엔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을 느꼈고 후에 겨우 풀려났습니다(상세한 내용은 갑제5호중의 2 제16 내지 19면)

원고는 거취를 고민하다가 수도로 돌아온 후 외교관 신분을 갖고 있던, 스튜디오에서 만

캠퍼스 내에서도 자의적 체포나 탄압, 총을 쓰는 등 치명적인 폭력을 일으킵니다. 정부는 학생들의 이러한 반정부 행위에 두려움을 느끼고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함으로써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사회에서 가장 적절치 않은 구성원 중 하나인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자주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회, 자의적 구공, 단체를 설립하거나 표현할 자유를 부정관하는 등의 인권 침해의 피해자 된다. *** 리더들 ***가 교육 공동체를 타겟한 이례로: 흰 정부의 지속적인 탄압은 ***가 대학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본권이 존중되고 강화되기 위해 넘어야 할 심각한 과제이다. (중략)

퇴표이해서, 정부 보안 당국은 학생 시위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였고,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2002년 3월, *** 지역 주에서 고등학생들이 ***의 가난한 경제 상황과 교육 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하며 길에서 시위하였다. 정부 보안 당국은 무기가 없는 학생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탄약을 쏘고, 결과적으로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5명이 사망하였다. 이 사건 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체포되고 평균 두 달간 구금되었고, 몇몇은 고문을 당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집중적으로 체포되었다. (중략) 대한 행정부와 교육부, 경찰 위원회는 모두 경찰이 캠퍼스에 들어왔을 때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고, 학생들에게 총을 쏘았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의회는 경찰의 행위에 대해 포악한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정부는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바에나 징계 조치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시 포살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교육적 자유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부는 계속해서 학생 연합과 학생 신문을 금지하고 있다 (갑 제14호증의1 2004년 휴먼라이트워치 보고서)

3) 가족들의 연대책임

한편, ***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지만 직계 가족이나 친척이 반정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사례들도 보고됩니다.

***에 있는 *** 커뮤니티 센터의 대변인에 따르면, 많은 전 장권의 공무원들이 구금되었다. (1992.10.3.) ***의 진술에 의하면, '구금되거나 억류되었던 만 명 이상의 사람들 중, 이천 명 이하가 현재 구금되어 있다고 확인되었다.' ***의 *** 커뮤니티 센터의

***의 대표는 DIRB와 1992년 11월 4일에 진행한 전화인터뷰에서 *** 현 정부는 많은 전 *** 멤버들을 구금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타인즈는 '전 정부인 *** 정권과 공산당 전 권에서 일한 약 1,270명의 공무원들이 *** 근처의 두 개의 캠프에 구금되어 있다고 말했다(갑 제8호증의1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 1992년 보고서)

양심수를 포함하여 반정부자로 추정되는 수천 명이 기소 및 재판 없이 구금되었다. 일부는 고문 당하거나 '실종'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1991년 또는 1992년에 구속된 2,0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소 및 재판 없이 계속 구금되고 있었는데, 이들은 반정부자 또는 인권 침해 혐의가 있는 전 정권인사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1991년과 1992년에 체포된 정부의 2만여 명의 반정부자와 1,000명 이상의 전 정권인사들이 석방되었다(갑 제9호증의1 엠네스티인터내셔널 1994년 보고서).

그리고 그와 같은 정권교체기의 장기구금(현재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자의적 구금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년 기준으로도 정권교체기에 구금되었던 사람이 1,000명 이상인 사법절차외에서 구금되어 있던 것을 확인하는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양심수를 포함한 수천만의 비평가들과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몇몇은 재판을 받았지만, 대부분 기소나 재판 없이 구금되었다. 1,200명의 *** 사람들도 포함된다. 4,000명 이상의 ***이 구금되었고, 그 후에 ***로 추방당했다. 이전에 구금된 10,000명 이상의 정치범들이 여전히 기소나 재판 없이 구금된 상태이다. 46명의 이전 정부 리더들의 페노사이트 관련 재판이 4년째 계속되고 있고, 대부분 1991년에 구금된 2,000명의 다른 정부 관계자들의 재판에 처음 나왔었다. 고문에 대한 보고가 계속 되고 있다. 추방당한 *** 사람들은 반인권적 대우를 받았다. 교도소 안 상황은 매우 참혹했다. "실종과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형집행이 계속 되었다. 교도소 안 상황은 매우 참혹했다. 1991년 이례로 한 번 사형이 집행되었다(갑 제12호증의1 1999년 엠네스티인터내셔널 보고서)

2) 정치적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사찰

***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반정부적 시위에 참여하거나 반정부적 표현을 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 대한 탄압이 매우 심하기 때문인데, 고등학생들과 대학생이 ***에서 가장 정치적 의식이 높은 지성인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학생 운동, 학생 신문 발행 금지, 교수 연합체 탄압도 있고, 심지어

지 못한 채 아주 간단한 심사 후 불인정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일종의 예술가였던 대학생 원고는 직접적인 정당활동과 같은 형태의 정치적 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① 정권 교체기에 ***년간 구금되었고 지금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아버지의 부채를 인가준 ***에 대한 적개심, ② *** 전역에서 자행되고 있고 실제로 원고도 지속적으로 위협하게 된 *** 종족의 ***와 ***족에 대한 차별의 경험, ③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고문과 심각한 자의적 구금과 같은 호독제정권의 인권침해 현상에 대한 분노, ④ ***의 빈영을 위해서는 과거의 전부를 계속하는 것이 옳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서 명확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이를 다양한 형태로 표출하였습

니다.

원고는 *** 종족, 즉 ***의 주도로서 심정부라 할 수 있는 ***대학 - 정부가 소유한 국립 대학입니다 - 에서 수학하면서, 학교에서 ***를 지지의사에 대한 표명을 거부하거나, ***년 4학년 무렵의 총선 당시 진교생에게 요청되었던 ***에 관한 정치적인 세미나를 듣지 않도록 하여 학교의 관계자들과 이에 연계된 정부 당국에게 정치적으로 불순한 요소의 인물이 되었습니니다. 피육이 원고의 가족관계를 조사해볼 경우, 원고의 부친이 단순히 * 쪽일 뿐 아니라, 전 정부에서 중요한 보직을 역임했고, 이에 ***년간 구금되었던 사람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학교 측의 주목은 더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계속되는 차별과 협박이 학교 내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 지역에서 잘 알려진 원고의 *** 스튜디오의 운영은 또래 학생들에게 신망의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바로 그 장소에서 주로 외국인 연구자들과 비공식적인 도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를 비판하고, ***의 인종차별정책과 정권의 비민주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반정부적 사상을 선의적으로 전파하는 일을 지속하였던 것은 단언하해도 ***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원고의 스튜디오 자체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조장기 원고를 강렬히 추종하며 활동하였으나, 이후 경찰서장의 협박 후 그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의 스파이가 된 ***만 하더라도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의 스튜디오 운영을 중단시키려는 협박(***의 공동인수 제의 및 집단구타, *** 경찰서장의 협박과 스튜디오에 활동에 대한 심문이 실제로 있었고 원고에 대한 지속적적인 사찰이 있었으며, 심지어 두려움 속에 ***를 인계가 떠나야겠다고 생각하여 떠난 여

대변인과 *** 대변인은 전 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금은 가족, 친척, 가까운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확대될 수 있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에 있는 *** 외교부 대변인은 전 정부 공무원들의 가족 중 그 누구도 현재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간 제10호증의 1 19 9A년 캐나다이민난민위원회 보고서).

국제 엠네스티는 오늘 *** 정부가 4월 24일부터 정치적 이유로 보안 당국이 구금시킨 3 5명의 사람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청한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며칠 사이에 추가적으로 구금이 있었고, 더 많은 구금이 예상된다고 *** 관계자가 전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정부적 혐의로 구금되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들이 평화적인 반정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몇몇 사람들은 단지 그들의 가족이 반정부적 입장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그들은 당장 석방되어야 한다. 누군가는 식별 가능한 범죄로 구금돼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석방되어야 한다. 즉시 모든 이들이 그들의 가족들, 변호사들을 만날 수 있어야하고, 필요하면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제 엠네스티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우선적인 책임이기는 하지만,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국제 엠네스티는 몇몇 이들은 단지 그들의 가족이 보편적이었던 2005년 총선거의 여파로 실명된 반정부 단체인 ***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구금되었다고 말한다(간 제13호증의 1 2009년 엠네스티 인터넷서널 보고서)

4) 불공정한 사법절차

***에서는 자의적인 행정구금이 빈번하고, 실제로 영향 없는 체포도 허용되며, 교장행정 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이 자행됩니다. 심지어 재판절차도 투명하지 않고 독립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들도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부여된 혐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범죄 혐의들도 광범위하고 정의가 모호해 자의적인 처벌이 빈번합니다(간 제15호증의 1 2016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원고의 경우, 정말 신속하게 이뤄진 난민심사 당시, ***의 심각한 정치적 문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자, 정치적 의견에 의한 박해는 마치 ㉠ 반정부 야당활동, ㉡ 테러리스트 단체 가입, ㉢ 시위활동들에 참여와 같은 정형화된 유형이 아니면, 박해의 위험의 존재자체를 평가하지 못하였던 연유로 만연히 원고, 추장의 복잡성과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

별첨4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준비서면

행자에서도 불상의 경찰들에게 감혀 살해의 위협을 느끼며 *** 내에서의 활동에 관한 심문을 당하게 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원고가 느끼는 주관적 공포는 당연히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정치적 견해에 의한 박해에 관한 객관적 공포 역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 장장 ***년간 구금되었던 반정부인사의 아들이자, ㉡ ***의 심장부인 *** 지역에서, ㉢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유지하고 학생들의 선망을 받았으나 한편 ***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 오히려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스투디오에서 임원리에 외국인 연구자들과 학생들에게 현 정권을 비판하는 논쟁기사와 같은 활동을 해왔던 원고가, 다양한 차별과 실제 위협 속 ***를 피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아니라, 막대한 도식적인 심사로 원고의 난민지위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 원고의 정치적 의견에 의한 미래의 박해의 근거를 부인한 - 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준 비 서 면

사 진 *****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 고 *****
피 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소장을 보충하며 변론을 준비합니다.

20** . . .

다 음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1. 원고의 난민신청 경위

(사진)

▲ 상담차 소송대리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원고

법원 제재판부

귀중

공화국 국적의 *** 주 *** 빌리지 출신의 원고(, 19** . ** . **생, 이하 '원고'라고만 합나다)는 아버지 *** 와 어머니 ***, 남동생 *** 그리고 이모와 고모를 포함 ***명과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와 남동생이 정치적 활동으로 인해 살해 당한 이후 ***를 떠나 20**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최초로 피신할 때까지 *** 빌리지에 있는 부친의 집에서 살았습
니다.

가. ***의 정치적 상황 개략

15세기부터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에서 최초로 1957.

는 마을이었습시다. *** 빌리지가 속한 Ketu South 선거구는 꽤 선거 *** 지지율이 90%에 육박하는 ***가 가장 강한 선거구였습시다.

원고의 아버지는 바로 이러한 ***의 본성이니 다름없는 헌법적인 *** 마을에서 영향력이 컸던 농부(134)로서 오랫동안 ***를 독재한 정권여당인 ***에 반대하여 당시 o:당으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성향의 ***이하 *** 실질적인 조직은 과거부터 반정부활동의 형태로 존재했으나 정당활동금지기 해제되면서인 1992. 제2권 안에서는 공식 정당(원)의 지역 O:당 analyzer로서 자유와 인권을 주창하는 ***를 지지하도록 *** 빌리지 사람들을 도모고 교육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했습시다.

당연히 예상할 수 있겠고 인해 원고와 가족은 *** 창당즈음부터 ***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아버지와 함께 ***를 지지했던 ***135), ***136) 등이 군인들에 의해 끌려가 살해당하기도 했습시다.

드디어 ***의 21년간의 오랫동안의 독재 및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로 인해 처음으로 ***로의 정권교체가 유력되었던 20** . 12. 7. 동시에 치러졌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원고의 아버지 ***는 갑자기 실종되었는데 총선직전의 팽팽한 분위기에서 *** 정권에 충성하는 군인들에 의해 납치되었던 것이었습시다.

납치된 원고의 아버지는 4-5.경 후인 20** . 11. 20. 공사 중으로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에서 테이프로 입이 막아지고 손이 뒤로 묶인 상태에서 구타와 고문을 당한 흔적과 함께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간단한 장례식밖에 할 수 없었습시다. 원고는 ***당원들과 함께 아버지의 유산을 o:어받고 계속해서 싸워서 ***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다짐했습시다 (을 제3호증 남민불인정결정통지서 6번)

아버지가 사망하신 이후 원고는 더 이상 집에 머물지 않고 은신하였고, 어머니는 더 이상 활동은 하지 말라고 단류하였습시다. 그런데 어머니가 알려주지 않아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는데, 군인들이 집에 찾아와서는 원고가 없으니 저녁에 동생을 잡아갔고, 어머니

134) 아버지가 소유한 농지가 있고, 원고의 어머니가 관리하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를 상속해야 하나, 현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지 못함니다.
135) *** 마들 ***정당의 어르(Elder)였고, 마들 ***라고 불렸습시다.
136) ***에서는 'ky7a' '지'라고 발음됩니다.

독립하였으나 5차례의 쿠데타 속에서 정권이 불안하였는데, 1979. 당시 젊은 공군 소위였던 ***가 무서운 카리스마 속에 쿠데타를 일으켜 임시국방령의회(臨時國防會議)를 설치하고 의장으로 취임하여, 정강 활동이 금지되었습시다. 10년 동안의 ***의 군부독재이후 1992. 다당제를 기반으로하는 헌법이 통과되고 정당활동 금지가 철폐되었으나, 그 이후 위 ***는 *** 지역 및 Ewe 종족의 지지를 기반으로 형식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민민주회의, National Democratic Congress)를 창당한 후 다시 ***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를 통치하였습시다.

의 오랫동안의 독재 이후 20번이 훨씬 지나서인 2001.에야 처음으로 야당 ***() 출신 대통령이 배출되었으나, 다시 2009., 2012.에는 각각 실질적인 지배자인 ***출신 대통령 배출되었고, 몇 달 전인 2016. 12. 7. 선거에서 다시 *** 정당의 대통령이 겨우 배출되어 정권교체가 일어났습시다.

(사진)

▲ 1979. 쿠데타 이후 2001.까지 ***를 지배한 ***의 제리 존 볼링스(132)

나. 원고의 아버지의 정치활동과, 아버지, 남동생의 피살사건

원고의 가족이 살았던 *** 빌리지가 속한 *** 주는 ***의 정치적 기반입니다. *** 주는 ***의 어머니의 출생지역으로 ***에 매 선거마다 80%가 넘는 가장 극단적인 지지를 보내는 곳입니다.

(사진)

▲2016. 12. 7. *** 주와 Ketu South 선거구의 선거 결과(133)

최근 20** . 12. 7 ***가 기적적으로 압승을 거두어 정권교체가 된 대선에서 마저도 독재자 ***의 정당이 ***를 가장 강력히 지지해온 지역입니다. 특히 *** 빌리지는 정치적 견집주의와 극단주의가 심하기로 유명한 곳으로 *** 외의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금지되

132) https://en.wikipedia.org/wiki/President_of_***
133) http://***elections.peacefronline.com/pages/2016/president/***/

가 군인들의 팔을 잡았으나 막을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집
에 원고가 도착하자 어머니는 원고를 때리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원고는 계속해서 아버지
를 계속해서 못게 하려던, 아버지가 원했던 것을 하라'라는 격언에 따라 계속해서 활동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후에 '동생이 죽어서 돌아왔다'는
소식만 들려주시고 '네가 네 동생을 죽였다'라고 분노하신 후 사실상 원고와의 연락을 끊
었습니다.¹³⁷⁾

나. 아버지와 동생의 삶에 이후에도 계속된 원고의 활동

원고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인 19** 이후 ***의 창당즈음부터 아버지와 동생이 살해당
하기 전인 20**, 11.경까지 아버지의 후원을 받아 일정한 장소에 20~30명 정도를 모아놓
고 연설을 하고 대학 캠퍼스에서 정치포럼을 조직하는 등 ***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왔습니
다. 원고가 이해하기로는 오랜 독재정권 치하에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가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쩍수 없이 1) 두려워서 여당을 지지해왔던 것이'거나, 2) 과거 기쁨같은 선
물을 정부로부터 받고 ***를 아쩍수 없이 지지해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치적인 압제에서
부터 깨어날 수 있도록 정치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했
고, 안전했기 때문에 ***를 지지했던 것입니다.

원단 아버지와 동생이 사망한 직후의 선거를 통해 수십년간의 독재가 형식적으로는 종
단되고 ***로 정권교체가 되었고 원고의 활동은 더욱 근거를 얻었지만 '원고는 자신이 무
고한 동생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는 자책감 속에 살면서도, 새롭게 열린 민주주의적 공
장에서 정치적 활동을 해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의 본산인 *** 지역에서 ***를 여진
히 지지하는 실질적인 지역의 중요인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 ***로부터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함께 ***를 지지하는 활동을 한 캠페인 팀의 일부 멤버들이 심종양한 후
죽었고, 위협이 계속되어 원고는 안전을 위해 6~7명의 사설 경비들을 계속 두어야 했습
니다.

137) 독재정권 치하에서 가장 빈번한 인권침해는 바로 '실종'입니다. 이에 현재까지도 유언에서는 여러 국가들의
실종률 감소하기 위해 '경제실용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정치적 반대자들이 실종 후 시체로
발견되거나 영영 사라지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원고의 아버지와 남동생 역시 그렇게 납치된 후 시체로 발견된
었던 것입니다.

다. 원고의 납치와 기억적인 피신

그러다 원고는 20**8.경 회의를 마치고 잠깐 혼자 마켓에 가던 길에 총으로 위협하는
세 명에 의해 얼굴이 가려진채 납치되어 1시간 30분~2시간 차를 타고 끌려갔습니다. 원고
는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에 2주 동안 감금당한 채로 활동을 그만둘 것을 강요당하며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여태까지 여러 번 경고했다. 더 이상의 활동은 하지 말아라'라며 구타와
협박을 당했습니다. 수도 ****의 **군(**)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는 군인들은 폭 팔과 눈에
잔인한 고문을 하여 원고는 왼쪽 발과 오른쪽 무릎에 증상을 입었습니다.

(사진)

▲ 최근 상담당시 촬영한 원고의 오른쪽 무릎

다행히 오랜 고문 끝에 원고가 사실상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던 무릎, 조스에 가담했던
군인 중 한 명이 사실상 도망갈 수 있도록 방치해준 기적이 생겨 팔다리가 묶인 채로 기어
서 도망나와 길가에서 가절한 원고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당원들은
원고가 어디에 잠해있었는지를 계속해서 물었지만, 원고도 알수 없었습니다. 투크비 족장
은 '원고 너 역시 사라진 다음에 아버지와 동생처럼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하
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에타 지역의 ***의 공전에 거주하며
아버지의 농장에서 일하다 ***의 리더 ***의 제안으로 20**, 11.경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도피했습니다.

그 후 원고는 남아공, 피지,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등 5개국에 평균적으로 6개월 가량
머무르며 머물다가 20**, 11. 28.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으로서 언어
적 장벽이 컸고 난민신청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도와줄 사람이 주위에 없었으나 전
철 안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으로부터 난민신청에 관해서 듣게 되어 뒤늦게 20**, 5. 27.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원고의 난민으로서의 지위

가. 난민요건 및 그 입증의 정도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을 난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① 국적국 밖에 있을 것
- ② 국적국에 돌아갔을 때 받을 위해가 두려워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을 것
- ③ 위 위해에 대한 두려움은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 ④ 국적국에 돌아갔을 때 받을 위해는 박해에 해당할 것
- ⑤ 위 박해는 협약상의 근거(국적, 인종, 정치적인 의견, 종교,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의 신분)으로 인한 것일 것

그런데 원고는 국적국인 ***로 돌아가면 ***를 지지하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 분명하기에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것이므로 위 요건 가운데, ① “국적국 밖에 있을 것”과 ② “국적국에 돌아갔을 때 받을 위해가 두려워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을 것”, ⑤ “위 박해는 협약상의 이유(국적, 인종, 정치적 의견, 종교, 특정사회집단 구성원의 신분)로 인한 것”이란 요건은 충족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의 주된 쟁점은 ③ “위 위해에 대한 두려움은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④ “국적국에 돌아갔을 때 받을 위해는 박해에 해당할 즉, **보도가 이 사건 처분을 내림시점(20**, 6, 7.)에 원고가 ***로 돌아갔을 경우 박해에 해당하는 위해를 당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난민협약의 위 요건들에 대한 입증 책임 및 입증 정도>에 대한 국제적인 해석을 받아들여 일반적인 소송과 전혀 달리 증명의 정도를 완화하는 난민 소송에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① 소위 선도적인 판결인 2008년의 나르세스 판결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

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임국 경로, 임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 결위, 국적국의 상황, 주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 사회적 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이나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중명이 된 것이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보조분쟁관은 인종, 종교,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설령 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내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등 신빙성이 있으면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이른바 합리적 가능성의 원칙(reasonable possibility rule)을 채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일반론인 ‘우세한 증거의 원칙(principle of preponderance of evidence)’이 적용되어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 보다 큰 정도, 즉 50% 이상을 요구하지만 난민소송에 있어서는 50% 미만이라도 ‘합리적 으로 생각할 때 그럴듯하다’는 정도이면 중명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을, 그리고 난민의 특성에 비추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의 진술이 주된 증거방법이 되고 그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됩니다.138) 즉, 난민사건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뒷받침이 없더라도 난민의 진술의 신빙성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② 또한, 주목할 만한 판결로 “박해의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불일치 과정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공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한 언어

138) 난민재판의 이해 개정판

각각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진술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일관성 및 신빙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라고 하며, 재판과정에서 난민신청자의 종전 진술이 담긴 서류와 법정 진술을 비교하여 세세한 차이점을 찾은 다음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당연히 배척하지 않고,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일관성 및 신빙성만 평가하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원고의 난민신청사유 -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의 우려

1) ***가 절대적 지지를 받는 지역에서 ***를 지지하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가 원고의 아버지는 ***가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 주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성향인 *** 빌리지에서 ***에 반대하고 ***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원고도 아버지를 따라 19** .경부터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는 ***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사람들을 모아 연설, 강연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거를 앞둔 20** .11.20. 원고의 아버지와 동생이 ***측 사람들에게 의해 납치되어 살해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정치적 견해를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에 반대하고 ***를 지지하는 캠페인팀의 일원으로 주도적으로 활동하였고, 그로 인해 20** . 8.경에 본인 역시 납치되어 고문당하고 살해의 위협을 받다가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공포를 느껴왔습니다. 이러한 *** 주에서의 원고의 동료 *** 당원들에 대한 박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지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수도 ***에 있는 *** 국회의원들¹³⁹⁾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어 언론에 의해 다루지기도 했습니다(을 제3호증 난민법집조서 5면).

나) 이 사건 처분시점에서는 ***가 여전히 여당이었고, 최근 20** . 12. 7. 치러진 선거의 결과 ***가 여당이 되었으나 여전히 원고의 출신지역인 *** 주에서는 *** 소속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가 82%로 다른 지역에 비해 극단적으로 높았고, 26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고의 고향 *** 빌리지는 *** 성향이 더욱더 강하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최근 20** . 2.경 *** 빌리지에 남아있는 친지들과의 통화에서도 위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아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

139) 인터넷 때 그리 처음 물어보기도 했다. 공장 가서 할 수 있는게 없었다. 설명은 했지만 크게 바뀌진 않았다. 이름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다.

습니다.¹⁴⁰⁾

다) 의뢰된 원고는 ***를 강하게 지지하는 *** 빌리지에서 아버지와 남동생과 함께 ***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고, 그 가운데 아버지와 남동생이 사망하였음에도 자식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를 지지하는 군인들에 의해 납치되어 고문과 폭행 및 살해의 위협을 당하다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원고는 당연히 '정치적 견해'로 의한 박해의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박해'의 의미

판례는 박해의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판결)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¹⁴¹⁾

즉, 일반인들의 비범불칙적인 통념과 달리 송환될 경우 곤장 공항에서 부당하게 체포, 구금되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사형을 선고받아 생명권에 위협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면 박해에 해당하는 것인데, 원고가 ***로 돌아오게 될 경우 받게 될 '납치', '고문', '살해' 등의 위협은 턱없이 박해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원고는 소송대리인이 질문을 해도 법적 개념으로서의 '박해'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납치해서 실종되어 죽는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 전머에는 당연히도 *** 당원들이 있고 낮은 취업률과 복잡한 정치상황 때문에, 돈을 주고 누구를 죽이라고 말하면 죽일 수 있는 사람도 ***에는 널려 있는 상황입니다.

140) 나는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지만 안전하고 싶다. 가족에게 연락해서 물어보니,(특히 Step brother가 잘고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보를 얻어오곤 했는데... 모든 좋은 정보는 여기서 얻는 것인데.

141) 서울형정법원, 난민재판의 이해(개정판), 89면

는 이유가 불가능하다. 경찰의 잔인함, 부패, 태만, 그리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였다. 용의자 기소지연, 변호사에게 대한 경찰의 협조와 경찰이 무능력하다는 대중인식의 빈번한 점도 있다. 경찰이 민간채무자로서 활동하며 불법 검문소를 설치하고, 구금된 자들의 동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시민들을 체포하며 돈을 갠탈했다는 민을 관한 보고가 있었다.

e. 공정한 공개재판의 부정.

헌법과 법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지만, 이는 불법적인 영향과 부패의 대상이었다. 사법공무원들이 뇌물을 수수하고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기록물을 없애주기도 하겠다고 보고된다.

Section 6. 차별, 사회적 학대 그리고 인신매매

헌법과 법은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국^{***} 시민권, 사회적 출신, 장애, 인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지만, 실제 정부의 집행은 일반적으로 불충분했다. 한정된 재부 자원과 그러한 차별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사회적 태도는 차별행위를 이어왔다(갑 제7호증의1 미국정부 2015^{***}인권보고서 1내지 13면, 갑 제7호증의2 위 발해변역문 1면).

2) ^{***}지지자들에게 대한 박해

이 사건 처분시점에는 ^{***}가 여전히 머망이었으며 최근 20^{**}, 12, 7. 대선에서는 ^{***}가 승리하였습니다. 19^{**}년 이후로 경쟁적 다당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반복되어 ^{***}는 과거 쿠데타가 반복되고 군사독재가 계속되었던 시기에서 벗어나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는 나라가 되었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20^{**}년대에도 ^{***}당에 의한 ^{***}당원에 대한 과격한 폭력행위가 존재했다는 자료들이 존재하며, 실질적으로 ^{***}가 마후의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고가 '정리-제출한 국가정황자료에도 마찬가지로 20^{**} 이후의 ^{***}당정황자료들의 남지, 사망사건들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을 제4호증 법무부 국가정황자료집 ^{***} 20내지 21면).

특히 ^{***} 빌리지에서는 ^{***}당이 우세하였고 이에 따른 ^{***}에 대한 박해가 존재했습니다. ^{***}당원은 폭력과 태만에 노출되어 있고, 경찰과 사법부가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합니다. 원고가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도피한 후에도 ^{***}가 집권여당이던 20^{**}년~2016년 시기 여러

다.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의 존재

1) ^{***}의 이 사건 처분시점의 일반 개황

^{***}에서는 사법체계의 경찰제도가 법적으로 갖춰져 있으나 그 비율과 부정부패, 권향남용 등으로 많은 불신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뇌물을 수수하고 유리한 판결을 내리거나 재판을 지연시키고 기록물을 없애주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경찰 역시 자의적 구금과 체포, 시민들로부터 금품 강탈, 폭행 등 기추행위의 잔인함, 용의자 기소지연 등의 태만함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군인들이 아직까지 범집행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부패나 경찰력 남용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 등을 통해 조사와 구제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현대적 사법제도와 별개로 전통적인 독장제도가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경찰이 개입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갑 제6호증의1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16 - ^{***} 3면, 갑 제6호증의2 위 발해변역문 1면, 을 제4호증 법무부 국가정황자료집 ^{***} 3내지 4면).

진체 개요 : 다른 인권문제에는 사망 혹은 상해를 유발하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 경찰에 의한 강간; 심리 전 구금기간의 연장; 언론인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정부 모든 부처에서의 부패; ...; 민족 차별과 정치적 동기에 의한 폭력; 민족간 살인; 자정단 폭력이 포함된다. 정부는 보안군에게서나 혹은 정부 이디 부처에서든 남용행위를 한 공무원을 기소/처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찰들이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문제로 남아있다.

Section1. 자유를 포함한, 인간의 완전성에 대한 존중

d. 자의적 체포와 구금 : 헌법과 법은 자의적 체포와 구금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지만, 정부는 빈번하게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다.

경찰과 인조기관의 역할 : 내부부에 소속된 경찰은 법과 질서를 지키기 책임이 있으나, 군인들이 아직까지도 범집행에 참여하고 있다 ...경찰은 ^{***}(수도)에 살인, 범죄피해수사, 가정폭력, 인신매매, 비자사기, 마약, 사이버 범죄를 위한 특별 부서를 가지고 있다. 이 와 같은 서비스는 사무실 공간, 운송수단 및 다른 장치의 부족으로 인해 수도 바깥에서

지역에서 ***강원에 대한 염산테러나 폭력사태가 기록된 바 있습니다.

2015년 9월, 로이터 통신은 '세로운 선거인명부를 요구하는 시위에 연루된 ***당원들 포함한 '최소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선거사무소에 출입을 금지한 벌원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출처에 따르면, ***당은 기존의 선거인 명부가 "자격이 없는 투표자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하며 2016년 선거 전에 새로운 '선거인 등 록'을 요구했습니다. ***의 뉴스 웹사이트인 그레빅 온라인은 2016년 3월 당시 대통령

John Dramani Mahama이 참가한 장례식에서 ***와 ***당의 "사나이(machomen) 간의 실망'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출처에서 말하길, "우리 기자의 말에 따르면, 두 집단 간의 세력싸움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문과 디지털 뉴스 매체인 ***브레이킹 뉴스는 2016년 4월, 브롱 마하포의 남쪽지역인 ***에서 "지속적인 등륙세 약방식에 관한 불일치"를 둘러싸고 ***와 ***당 간의 "심각한 분쟁"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당 지지자들이 "주민등록센터에서 ***요원의 손목을 거의 반격해 4명의 *** 사나이"들이 "칼"을 가지고 *** 활동가를 공격했다(강 제8호증의 1 C anada_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2016 1내지 2면, 강 제8호증 의2 위 발췌본면문 1번).

3월, 한 무리가 북부의 Radio Justice 사무실을 공격하여 차와 오토바이를 현장에서 불 태웠는데, 그 이유는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라디오 토크쇼에서 ***당 패널의 물이해진 발언 때문이라고 한다. 지역 경찰은 연루 의혹이 있는 3인을 체포하였다.

범죄적 비행행위나 폭동선동죄에 대한 범인이 2001년 폐지되었으나, *** (수도) 법원은 개인소유 신문인 The Informer와 Daily Guide에게 민간목재가공회사와 *** 사무총장 에 대한 명예 훼손성의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104,000달러와 86,000달러 를 벌금으로 물었다. 서아프리카의 미디어 재단(MGWA:Media Foundation for West Africa)는 범금의 중대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의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성을 지적하였다(강 제9호증의1 제2호증의1 제9호증의1 제2호증의2 위 발췌본면문 1번).

라. 충분한 근거의 존재를 넘어, 매우 높은 정도에 달하는 원고의 피해에 대한 공포

① 이처럼 *** 활동가들(단순히 부표를 한 '지지자들이 아니라)이 받는 박해의 위험은 국제사회에 명확히 알려져 있고, ② *** 정부의 사법제도는 비효율과 부패로 인하여 일반적

으로 신뢰받지 못합니다. 또한 민선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군부의 잔재가 이어져 아직까 지도 군인들이 범집행에 참여하는 등 군과 경찰의 연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1.20. 아버지지가 납치된 후 살해당했고, 남동생도 얼마가지 않아 살해당했습니다. 그 후로도 원 고의 캠페인 범 동료들 중 일부가 계속 죽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무시당했습니다. 원고는 ***를 지지하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의 공포 때문에 인권을 위해 경찰 과 사법제도를 신뢰할 수 없어 6~7명의 사원 경비를 계속해서 두었습니다. 그러다 20**8. 경 원고는 ***의 전신인 P***의 군사분부가 ***으로 생각되는 군인들에 의해 납치되어 죽 을 위기에 처했다가 기가스로 탈출했습니다(당연하게도 납치하는 군인들은 결코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나, **에 의하여 운영되어 ***당원들을 납치, 살해하는 군인들을 ***의 민간인들은 모두 "****"에서 왔다고 부르고, 이는 마치 과거 한국 안기부에서 납치 시 '남산' 에서 왔다고 사람들의 불리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경찰이나 병원을 찾기도하는 경찰이나 ***당원들이 함부로 출입 하지 못하는 독자적 권리와 권한을 지니고 있는 주장 ***의 공전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 기고 은신한 것은 ***의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 너무도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사진)142

▲ ***에 *** 캠프(*** P. 지도에 붉은색 영역)안팎으로 ***등 37 m***라는 이름을 가진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19**년 6월 판에 발행된 ***에 대한 마르크 아체의 기사에 따르면, ***에 있는***캠프 보영은 (***)의 전신인 임시국방위원회(P***)의 군사분부인 *** 병영이 있던 장소인 니다.143

142) 구글 지도

143) Canada-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 Information on Burma Camp barracks, 1 July 1991, CHA9006 <http://www.refworld.org/docid/3ae6ab5c64.html>

에 출생신고를 ***로 했기 때문이라고 최대한 사실대로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 출생지의 출생신고지가 달랐던 것은 19**·9·16. 출생 당시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들 사무소, 병원 등의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특히 ***의 경우는 ** *에서도 토고와 국경 근처에 위치한 마을로 당시 제대로 된 시설이 없어 출생신고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의 수도로 나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했던 것이고, 무슨 '허위'가 아니었습니다.

(면담조사서 캡처)

▲ 을 제2호증 난민면담조사서 2면

또한 피고는 원고와 난민신청서에 ***여성과 동거하여 아들, 딸 2명을 두었음에도 난민 신청서(갑 제5호증)에 뚜렷한 이유 없이 자녀들과 동거녀를 기술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난민면담조사서상으로는 원고에게 실수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주었는지 알 수 없는데, 이러한 불일치는 한국과 ***의 문화적 차이에 때문에 발생한 오해입니다.

(면담조사서 캡처)

▲ 을 제2호증 난민면담조사서 3면

한국 문화와 달리, 아프리카에서는 동거 여성에 대해 별도의 등록 없이 동거 후 자녀를 가지는 일이 많습니다. 서로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따로 법적으로 신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지금은 별거상태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화적 차이로 명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2) 남아공 등 5개국으로 도피하다 한국에 입국하고 나서야 뒤늦게 난민신청을 하였기에 난민지위가 부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난민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처된 핵심내용이 아닌 난민신청이 단순히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막연히 배척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 특히 <제3국에서 난민신청을 했는지 여부>는 '다른 나라에서도 난민신청 한 한 것을 보니, 난민은 아님이 보낸다는 정도'라는 정도의 경위에 관한 당국의 의심의 근거 중 하

3. 피고의 난민인정불허사유의 부당성

가. 피고의 난민인정불허사유 및 피고 제출 답변서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난민대상 난민이 아니라는 처분사유에서, ① 그 근거로 원고가 실제 출생지와 여권상 기재된 신고지가 다르고 과거 동거녀와의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고, ② 20**년 11월부터 남아공 등 5개국으로 도피하며 20**·11·27. 한국에 입국하고 나서 뒤늦게 난민신청을 하였으며, ③ ***당에 의한 아버지와 형의 사망과 피고의 납치 및 중상해에도 병 원이나 경찰에 가지 않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고, 그러한 일이 있고도 1년간 더 마을에 머물렀거나, ④ *** 정부 및 사법당국에 의한 보호가능성이 있다가나, ⑤ 원고가 ***의 다른 x역에 대안적으로 피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고, 피고 제출 답변서에서도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위 ③과 ④는 당시 *** 빌리지가 속한 *** 주의 극단적인 *** 지지지 성향과 ***의 사법제도와 경찰에 만연한 비효율과 부패로 인한 일반적인 낮은 신뢰도, 현대적 제도와 별개로 존속하고 있는 추장의 강한 독재적 권위 등을 근거로 부당함을 앞에서 이미 주장하였으므로, ①과 ②, ⑤에 대하여 반박하겠습니다.

나. 피고가 내세운 난민인정불허사유 및 답변서 주장의 부당성

1) 난민면접 당시 원고의 출생지 진술과 여권상 기재된 신고지가 다르고, 과거 동거녀와의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기에 난민지위가 부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는 "난민면접시 출생지를 불타 주 ***(***) 빌리지라고 진술했으나, 여권상에는 ***(***)로 되어 있어 출생지에 관한 면접 시의 진술과 여권상의 기록이 서로 다른 점, 신청인은 ***여성과 동거하여 아들, 딸 2명을 두었음에도 난민신청서에 뚜렷한 이유 없이 자녀들과 동거녀를 기술하지 않았고"라는 문화적, 역사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상의 오해로 발생한 사소한 불일치를 원고의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난민면접조사 시 출생지를 자세히 말하라는 난민심사관의 질문에 원고는 *** 주 *** 빌리지 AX16 이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여권상 기재된 ***와 다른 이유를 묻는 추가 질문

나가 될 수 있을 뿐,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난민요소의 박해의 위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 경위는 수긍할 만한 것이, 원고가 피신하여왔던 국가들이 ***140)은 난민 제도가 있으나 사실상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렵고, ***은 난민협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난민제도가 없고, ***는 킬링필드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국가로서 사실상 난민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데, 이같은 곳에서 난민신청을 하지 못하고, 단계별 부하면서 다른 곳을 계속해서 떠돌았다는 사정만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임이나.

또한 <국내의 난민신청 지연>에 대해서도 이미 6개월씩 진세계를 떠돌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던 원고는 - 무슨 원고가 해외여행을 통하여서 5개월씩 5개국이나 다닌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단계제류가 가능한 곳을 계속 떠돌았던 것임이나 - 납치, 고문 등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리불안과 공포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웠습니다. 20**· 11. 27. 한국에 입국해서도 같은 이유로 오랜 시간 난민 신청을 하지 못했고, 145) 난민법이 시행되어 절차가 마련된 이후에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마주친 친구로부터 난민신청에 관해서 듣게 되어 20**· 5. 27. 난민신청을 하게 된 것이며, 특히 이와 같은 경위를 고려할 때, 난민신청이 늦었다고 하여 박해의 위험의 부존재가 입증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3) 원고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어서 난민지위가 부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와 그 답변서는 구체적인 ***의 상황은 고려치 않은 채, ***의 법과 정책은 거주지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자국 내에서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 재정착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답변서에도 법무부 국가정황자료점을 근거로 ***의 현범은 자국 내에서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 권리를 실제로 존중하며, 위험을 피하여 자국 내 다른 지역으로 안전한 재정착이 가능함이다"라고만 주장하는바, 이는 마치 대외적 국내피신(internal flight or relocation alternative)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난민신청자에 대한 박해의 위험이 한 국가 내 일부지역에만 제한되어 있어서 그 지역 바깥에서는 그가 두려워하는 해인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난민신청인이 국적국 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그곳에서 국거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국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처분청이 무차별적으로 남벌하는 위 이론은 난민협약의 난민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규정하므로 위 요건을 추가적으로 협회되고 있습니다. 즉, (요건1)'난민신청자가 박해의 위험 없이 대안으로 제시된 곳으로 갈 수 있는가?' (요건2)'난민신청자가 그곳에서 과도한 어려움 없이 정착해 보통의 삶을 사는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가?' (요건3)'난민신청자가 대안이라고 제시된 곳에 갔을 때 외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었을 때 받게 될 난민협약상의 보호를 그곳에서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에 있어야 하는 것이며, 입증책임은 대안적 국내 피신의 가능하므로 난민지위인정을 부정코자 하는 처분청이 부담해야 합니다.146) 왜냐하면, 이는 주장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146) 유엔난민기구(UNHCR)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 '난민법' 1A(2)의 상황에서 국내 피신(internal flight) 내지 대안적 재정착(internal relocation alternative)에서는, 난민신청인이 풀이거더라도 보호될 수 있는 대안적인 지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난민사무를 결정하는 기관이 부담합니다.

"34. 이러한 기초 위에서, 난민사무를 결정하는 기관이 특정된 사건에서 대안적 피신이 합리적으로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 만약 합리적이고 고려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증명하는 당사자가 국내피신으로 재정착된 지역을 특정하고, 그 지역이 관련된 개인에게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34. On this basis, the decision-maker bears the burden of proof of establishing that an analysis of relocation is relevant to the particular case. If considered relevant, it is up to the party asserting this to identify the proposed area of relocation and provide evidence establishing that it is a reasonable alternative for the individual concerned)'(갑 제10호증 UNHCR 가이드라인) 위 가이드라인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같은 국가 내의 다른 지역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기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난민 신청인의 신청에서 과도한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하더라도 하더라도 대안적 보호 지역이라고 제시된 곳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 신청인(생)을 유지하고 주거를 얻기가 어렵고, 외리적인 보호가 제공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지역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대안적 보호에 관한 Michigan Guideline 역시 '국내의 대안적 보호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위 지역에서 난민신청자에게 의미 있는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데 위 지역으로 되돌려 보내진 난민이 그곳에서 난민협약상의 의무에도 미치지 않는다면, 기관이나 직원 등으로 인해 다시 박해를 받았던 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다면, 위 지역은 국내의 대안적 보호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국내의 대안적 보호 지역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난민사무 결정청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갑 제11호증 위 미션인 가이드라인 및 갑 제11호증외 위 번역본).

또한 UNHCR의 <난민사무판정(Refugee Status Determination) study module>의 '대안적 국내 피신

144) <http://www.unhcr.org/protection/basic/3b73b0d63/states-parties-1951-convention-tf-1967-protocol.html> 님아영, 캄보디아인이 난민법(미국판)이다.

145) 최근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에 절차적 보장이 잘 이루어졌으나, 그전까지는 난민신청 절차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고, 원고와 같은 불명체류자들은 난민제도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에 대해서만 지국 내 재정착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치적 의견'에 있어서 *** 담원 및 지지자에 대한 박해의 경우 발생하고 있는 충돌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 담원 및 지지자가 이러한 위협을 피하여 다른 지역으로 안전한 재정착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국내의 사례 및 결정례로 인용된 호주의 판례¹⁴⁸⁾는 '신청인이 Kumasi로 도피하였으나 장로들이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였고, ***로 도피하여 생활할 때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였음, 신청인이 *** 어느 지역으로 도피한다고 하더라도 장로들이 찾아와 살해당할 수 있음'이라고 하며 지국 내 재정착 가능성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 담원 및 지지자에 대한 박해가 *** 전 지역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 국가정황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는 *** 국내 어느 곳에서도 박해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대안지역이 어디인지", "대안지역으로의 접근이 가능한지", "그 지역에서 과연 새로운 박해가능성이 없는지"와 같이 대안적 국내 피신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들에 대한 주장 입증에 전혀 없습니다.

4. 결어

심사단계와 법원의 재판단계 모두에서 난민심사는 본디 매우 불충분한 도구를 가지고 매우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은 난민의 정의가 요구하는 박해 가능성에 관한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입증정도로 상당 부분 완화되는 것입니다. 난민 협약이 요구하는 것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에 대해 "심리적 상태이며 주관적 조건인 두려움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난민신청자가 박해를 두려워하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박해가 발생할 확률적 가능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단지 10%의 박해 가능성만 인정되어도 난민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 협약 당사국의 확립된 판례이며, 달리 말하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박해받지 않을 가능성보다 낮더라도

148) 호주 1002062[2010] R174475(10 JUN 2010)

법률요건부분상에 따른 것이기도 하거나, ㉠ 위 주장은 적어도 국내의 한 지역에서는 박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 난민지위를 예외적으로 부정하려면 다른 곳의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의 필요하기 때문이고, ㉢ 그렇지 않을 경우 난민신청에 대해 모든 행정절차는 본국의 국가정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면서도 아무런 입증도 없이 "다른 곳으로 가면 안전하다"라는 무책임한 주장¹⁴⁹⁾으로 난민신청을 무위로 돌리는 기이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내법원에서도 전형적으로 "다만 이러한 국내적 이주 대인의 가능성을 들어 난민보호를 거부할 수 있으면 먼저 신청자가 대안지역에 안전하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하고, 그 지역에서 새로운 박해가능성이 염려되어서는 안 되며, 대안지역에서는 제공되는 보호가 난민협약이 제공하는 수준 이상으로 어느 정도 지속적이어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2. 1.

1. 29. 선고 2012구합4920)라고 하여, 각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포섭을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안지역에 국내피신으로 난민의 지위를 부정할 요건이나 구체적으로 가능한 지역에 대한 입증¹⁴⁷⁾은 피고에 의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는 단지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 재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아무런 입증 없는 주장만 폄하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아가 원고 측 답변서에서 근거로 제시한 법무부 국가정황자료(을 제4호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유 중에서는 어디까지나 '인종'과 '종교'에 관한 것

(internallight or relocation alternative)에서도 "원칙적으로 '대안지역 내 피신'은 박해에 대한 위험이 국가의 광범위를 지배하는 개별적 집단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에서 나온 제한된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우선 출신국 내에서의 피신이 가능하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해당 지역으로 실제로, 안전하게,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신청인이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한 (해당국의 혹은 세력) 박해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지 여부 등과 같은 직접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가 박해의 추세를 확인 하오일 때 국가 관리들이 국내 전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가정 때문에 대안적 국내 피신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대안적 국내 피신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두번째 단계로 관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신청인이 해당 지역에서의 과도한 어려움 없이 장차 보호의 상을 보는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합리적 분석을 할 때에는 피신이라고 하는 이유를 고려하고, 피신지역으로 제시 되는 지역에 어떤 장래에도 대안적인 장소인지 살펴보면서 시간을 두고 심사를 필요로 있다. 실제로 대안적 국내 피신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47) 실제로 해외에서는 처분장이 처분 전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안적 국내 피신을 주장하지 않고, 실제로 출입국관리사무원이 실제로 대안적 국내 피신이 가능한 곳으로의 접근이 가능한가/부타(예컨대, 시리아 북부 지역으로 접근이 가능한가 등) 출장을 통해 확인해본 경우도 있는데,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결국 처분사무의 처분상 입증책임을 명확하게 피고에게 지우지 않아 왔기 때문에 얼마동안 이처럼 무책임한 결정이 처분장에 미해서 생기기 되는 것입니다.

진신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무소장 또는 총징소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행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행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위 '출입국행에서의 난민신청제도'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강화시키고, 난민협약의 취지를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제정한 아시아 최초의 자랑스런 인권법령인 제정난민법¹⁴⁹⁾, 그리고 난민법 중 과거 출입국관리법에서 출입국행에서 난민신청을 받지 않아 난민협약 제3조가 금지하는 강제송환이 왕왕 발생할 수 있었던 기존 난민제도의 제도적 holes에 대한 반성적 고려¹⁵⁰⁾가 임박추진입니다.

즉, 특정 난민신청자의 출입국행에서의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7호)이 아니어서 난민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 - 피고나 난민 여부를 묻지 않고 행해왔던 광범위한 제량이 인정되는 일반적인 과거 입국불허 제량에도 '불구하고' - 해당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 피고로 하여금 '공정하고 효과적인 절차보장' 속에서 난민 인정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진정한 난민'이 공정한 심사를 받지 못하고 송환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입법자의 진취적 의사가 반영된 제도¹⁵¹⁾입니다.¹⁵²⁾

149) 이번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확충 강화되고, 난민신청자, 난민신청자, 난민신청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인권국티셔스의 우르비타의 포괄적 위안이 현충 분야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 제7호중 법무 부부 보도자료 7월 1일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 시행 1만)**

150) **[[출입국행에서의 난민신청제도 신설**
○ 난민법에 따라 공항·항만에서 난민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공항·항만의 대기실에서 난민심사 회부를 위한 사전심사를 받게 됨
※ 현행은 주로 국내 입국 후 체류지 사무소에서 난민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임(간 제7호중 제5단)** **항)과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것도 분명합니다.

151) 물론,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 같은 법익들(헌법 제****조 제****항)과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것도 분명합니다.

152) 헌법, 이와 같은 결론은 난민법의 해석에서도 도출할 수 있지만, 헌법 난민협약에 대한 국제법적인 해석으로 도출하지 않습니다. 난민에 대한 소위 국경에서의 거부 (Rejection at the Border) 즉, '공정한 난민인정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내리친 '입국거부도 난민법 제****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위반'이라는 것은 ******g****년** 이래로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이하 ExCom)의 일관된 관행일 뿐 아니라 국제법 학계에서도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고 질문을 받을 경우 함께 왔다고 하지 말라고 말한 후 헤어져서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후 환승구역에서 음식을 사먹었던 원고는 위조여권을 소지한 것이 들롱날까 두려웠고, 브로커가 알려준 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여 위조여권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후 Service Center에 가서 난민신청을 하겠다고 말하자, 두 명의 공무원이 얼마 지나지 않아 송환대기실로 옮겨지고 이후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적 개선이 시급하나, 난민법 제6조의 불확부결정은 구두로 통지되고, 실무상 처벌서 교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피고는 소가 제기되지 않은 한 아무런 범형상 근거도 없이 관련 서류의 정보공개도 거부하고 있어서 통상 단편서 제출과 함께 불확부결정의 정화한 일시, 최분사유 및 근거법령, 난민면담조사, 난민회부심사보고서 등을 재판부에 읍호중의 형태로 제출하여 왔는바 이를 신속히 제출할 것을 석명하여 주실 것을 구합니다.]

(사진)

- ▲ ****년 **월 ****일 점전 당시의 원고의 상황. 당시 원고는 운수업자가 아제부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동안 송환대기실에서 굶는 상태였습니다.

3. 난민법상 난민인정심사불확부결정의 한계

가. 난민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난민인정심사불확부결정 제도의 임박추진

이 사건 처분은 입국심사를 받지 전까지 출입국행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영토이지만, 구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당국의 독단적 주장에 따라 종전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규율에서는 구법적 공배상대처법 운영되었던 '입국 前 난민신청서 접수'에 관하여 2013. 7. 1.자로 새롭게 시행된 난민법 제6조(출입국행에서 하는 신청)에 의해 규율되 는 결정입니다.

난민법

제6조(출입국행에서 하는 신청) ①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행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총징소장에게 난민인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7호 사유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의 부존재

가. 원고에 대한 명백한 박해의 위험

처분서가 없고, 처분사유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긴 하나,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제7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의 위세는 매우 강렬할 뿐 아니라 사실상 정부의 통 제력이 매우 미약한 *** 내에서 정부로부터의 보호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① 원고는 근본주의자 ***이 증오하는 영화상영을 적극적으로 행한 사람일 뿐 아니라, ② 체포 후 썬프를 탈출한 자로서 ***에 돌아갈 경우 살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정식적인 심사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이에 난민인정신청이 결코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1) 난민법 제5조 제7호의 해석

난민법 시행령에 보충적인 사유로 규정한 제5조 제7호의 요건도 ㉠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중 ㉠, ㉡은 일의적으로 적용할 경우 제3호와 마찬가지로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위반하게 될 소지가 높습니다.

㉢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다든 것은 ‘난민이 아닌 경제적 이주민’을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사실 난민신청의 동기에 경제적 이유가 있다는 것은 박해의 위험의 존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피난 「난민제 판의 이해(개정판)」에서도, 난민여부를 심사하는 ‘본안’에서마저도, “난민인지의 여부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나”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난민신청자일지라도 생존을 위하여 경제적 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소간의 경제적 동기는 항상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난민신청자가 경제적 목적과 관련된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경제적 이주민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난민제판의 이해 제121~122면)라고 하고 있는바, ‘사적심사’ 단계에서 위 요건으로 불허

나. 현행 판례의 태도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 판례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각호의 처분사유의 존재의 요충핵인을 처분청에게 지우고, 외종집도를 강화하여 “불회부결정의 처분사유의 존재가 명백성의 정도”에 이르지 않아서, 난민일 가능성이 있어서 난민신청자의 지위를 부여해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내리진 불회부결정은 위법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의 주장 내용이 명백하게 난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난민제도를 악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단 채류하며 난민인정 여부를 심사할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4) 따라서 출입국행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은, 간소한 심사 절차를 통해서도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사 불회부 사유에 해당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신청자가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내려져야 할 것이고, 위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다소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를 난민법 제8조에 의한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해 위 법이 허용하는 절차적 보호 하에 그 지위를 신중히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5누52093)

결국 불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피고의 재량은 “출입국행에서의 판단만으로도 / 난민일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남용적인 난민신청”인 경우로만 축소되고,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 난민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난민인정절차에 회부하여 정식적인 절차를 통한 심리를 해야 하므로, 피고에게 난민법 시행령 제5조 각호 사유를 매우 협소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제한이 주어지는 것이며,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라는 처분사유에 관해서는, 상반되는 주장이 있다는 통상적인 상터 자체가 “명백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같이 통상적인 상태와 어긋나는 특수한 상태 즉, “명백함”이란 특수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부결정을 내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㉔은 '의도'와 관련된 요건이어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박해의 위협과는 무관한 것(5. 나.1.)이고, 결국 그나마 적용이 가능하게 남은 것은 ㉔ '난민신청 신청이 명백히 이윤 없는 경우'밖에 없게 되며, 이를 적용할 때에도 난민협약 제33조에 위배되어 위협한 처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분담판단처럼 '난민요건'을 판단하여 "간략히" 심사를 해보니 난민이 명백히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 분담심사가 필요 없는 것 즉, "간략히" 심사를 해보니 난민신청 신청이 이윤있는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라고 해석하여 신중을 기해야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난민인지 여부를 난민협약 제33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입국장에서 공정하게 심사할 수가 없기 때문이며, 난민법 제6조의 소사는 '난민신청자'의 지위를 줄 것인지를 심사하는 것이지 '난민'의 지위를 확인할 것인지를 심사하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153)

2) 원고의 경우 -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이 아니라, 오히려 심사를 거치면 난민으로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은 '명백히 이유 있는 난민신청'

가) ***

(사진)

▲ *** 자료사진 (감 제***호증의*** BBC ***년 ***월 ***일 뉴스 및 감 제***호증의*** 번역본)

'창년 전사 운동'의 뜻을 가진 ***은 ***의 테러 무장단체입니다. ***는 ***. ***년 당시 대통령 *** 축출 이후, ***여년간 내전을 치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적 질서 회복을 가치로 두고 ***이 출범하였는데, ***은 이 단체에 부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과 도정부, 유엔평화유지군, 우엔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념적으로는 극단적인 이슬

153) 실제로 난민요건을 불충부결정 단계에서 심사하고, 또 이를 이 사건 소처럼 사법부의 심사를 받게 되면,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결국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신청자'의 지위를 얻는 것에 불과하며, 마치 소송과정에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의 소에서와 같이 신빙성 문제를 계속 다루어하는 기간만 결과에 상관이 없고, 만약 이 사건 소에서 승소할 경우더라도 판결문에서 신빙성 여부에 대해 판단한 이유 명시부분도 통이하게 되어 그 이유 부분이 향후 난민신청사과정에서 출생을 일으킬 수 있는 등 부당한 문자가 생겨나게 되기도 합니다.

람 경전 해석을 따라가고, ***는 해당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감 제***호증의*** BBC 뉴스 ***은 누구인가 및 감 제***호증의*** 위 번역본).

(사진)

▲ *** 접거지역 (감 제***호증의*** BBC ***년 ***월 ***일 뉴스 및 감 제***호증의*** 번역본)

은 ***.년 ***월까지 ***의 수도인 ***를 장악하고 있었으나 이후 현재는 *** 정부군이 수복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감 제***호증의*** 휴먼라이트워치 *** 보고서 및 감 제***호증의*** 위 발제번역본). *** 중남부에 세력을 두고 있는 이 단체는 ***에서 정부군과 매일 전투를 벌이고 ***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공개 처형 등 인권 유린 사태가 심각합니다. 무력 단계인 ***은 포적 사살을 해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에서 기독교인들을 제거하겠다고 공표하는등 기독교로 밝혀진 사람들은 자주 즉각적으로 살해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슬람 사리아 법을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하며 시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합니다.

0년 동안, ***의 활동은 증가되었고, 종종 다른 무장집단과의 충돌로도 나타났는데, 그런 충돌은 그들이 활발히 활동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보고된다. ***의 활동이 증가하는 것은 시민들과 민사적 사고들에 관련된 충돌에서도 나타난다. ***은 ***에서 죄 부근에 의해 가장 위험히 수비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불법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보유하고 있다. 즉, *** 정부 빌딩은 ***0***년에 두 번에 걸친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고, ***0***년 ***월에 있었던 가장 최근의 공격에서는 ***의 부대원들이 빌딩을 휩쓸었다. 공격은 의회와 같은 정부기관들에서도 계속 발생하며,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들의 사망으로 나타난다. 표적살인도 계속 진행된다. 매년 라마단 기간에 ***의 ***를 향한 공격은 거세진다. ***0***년 ***월 라마단 기간에는 암살사도가, ***이 ***의 대부분을 장악했던 ***0***0년 이래로 최고도로 달랐다.

은 여전히 남부와 중부 ***의 넓은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 ***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이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 통제지역에서는 일정한 사리아 율법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한다. 예를 들면, 여성에게 허장을 쓰게 하거나 축구, 음악창출등과 같은 레저활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0년 ***월에 ***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용되는 약한 암배타

민 성분이 있는 기초식품인 카트(Khat)를 운반하던 버스 기사를 살해하고 버스를 불태웠다. ***0***년 ***월 ***일 한 여성은 ***와 ***지역을 여행하다가 살해당했는데, 그녀는 카트를 정부군에게 팔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은 정규적으로 그들의 사티아 율법에 이끄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한다. 예를 들 의, ***년 6월에 한 남성은 한 여성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체포질을 당했고, 한 남성은 도둑질 혐의로 손을 절단당했다. 수천 명이 '경범죄' 혐의 - 예를 들면, 흡연, 음악청취 등 패적활동 - 로 인해 구금되어 있다고 한다. 고민이나, 석살, 공공장소에서의 체포, 손절단 등은 규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치벌'로서 종종 이루어진다. 보고서들에 따르면 침수형, 고문, 다양한 가호행위가 ***0년부터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감 제***호중의***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0***년 보고서 및 감 제***호중의*** 위 발췌본역문)

은 시민들의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 무력을 많이 사용합니다. 인터넷 사용, 영화관 출입, 축구, 음악 감상, 텔레비전 시청 등의 여가활동을 반이슬람적이라고 해석을 하고, 금지합니다(감 제호중의*** 뉴스데이즈맨 기사 및 감 제***호중의*** 위 발췌본역문). ***의 이슬람교 해석을 반하는 사람에게는 공개적 태형, 석살, 신체적 절단 등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반이슬람적이라고 해석이 되는 서부의 영향도 금지되고 있어 새해 기념 행사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은 이 사건 난민신청자와 같이 그 단체의 범명을 어기거나 이슬람으로부터 개종을 하는 경우 또는 그런 의심이 가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죽이곤 합니다.

통제지역에서 ***은 영화, TV, 음악, 인터넷, 그리고 스포츠경기 관람을 금지시킨다. 카트(Khat)와 마약 기호식품, 흡연, 그리고 이슬람적이지 않은 모든 것, 예를 들어 수염을 깎는 것까지 금지시킨다. ***은 또 여성에게 허장을 완전히 쓰게 할 것을 강요한다(감 제***호중의*** 미국 국무부 종교의 자유 보고서 및 감 제***호중의*** 위 발췌본역문) 최근 몇 년간, ***의 *** 무장집단은 흡연, 축구, 영화관람, 브래지어 착용 등 서구와 연결이 있는 모든 것을 금지시켰다. 이제, 알카에다와 연관이 있는 위 그룹은 다른 세계에서도 가장 열반적인 것으로 남아있는 - 인터넷 - 깃머지 표적으로 하고 있다.

성명서 - 인터넷에 공개된, 물론 - 에 따르면 위 집단은 인터넷의 사용, 자신들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금지시키고, 복종하는 때까지 ***일 동안 전화 등 소통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보복이 뒤따를 것이다.

(...중략...)

*** 사람들이 하여금 현대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것들 - 예를 들어 음악, 핸드폰 벨소리, 현금결제 서비스 - 을 금지시키려는 종전의 노력은 실패했다. 그러나, ***은 아직도 자신들의 최면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한다. ***0***0년에 ***은 우간다의 수도인 캄팔라에서 월드킥을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에겐 폭탄을 터뜨려서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더 최근엔 ***은 ***에서 가장 큰 은행 밖에 폭탄을 터뜨렸는데, 그 은행이 *** 통제구역 내에서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거부한 직후였다(감 제***호중의*** 영국 인터넨트 뉴스 기사 및 감 제***호중의*** 위 발췌본역문).

또한, 국제적인 난민인권단체 NOAS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 강제로 징집을 일삼으며, 징집했다가 탈주한 사람들에 대한 박해도 가혹합니다.

자료들에 따르면 ***은 무력으로 징집을 하는데, 종종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수단도 사용한다. 징집을 할 때 얼마나 강제적인 무력이 동원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여러 자료들에 따르면 그들은 강제징집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 규모와 무력의 정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 강제징집을 한다고 한다. 이것은 상호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의 형태도 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소수부족은 ***의 도움을 토지분쟁에서 받을 수 있고, 그 대신 병사를 공급한다. 엠네스티는 ***이 학교나 마을에서 사람들을 박해한 뒤서 강제로 징집하는 것을 언급한다.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엠네스티는 박해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 부족 지도자와 ING(A)는 ***이 푸안 학교에서 아동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일시적인 시간동안 새롭게 세뇌시킨다고 한다(감 제***호중의*** NOAS 보고서 및 감 제***호중의*** 위 발췌본역문).

자료들에 따르면 ***은 일반적으로 탈주자들(defectors)을 공격하는데, 정부에게 지면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탈주자들을 공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배신자들을 처벌하고, ***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한 메시지로 보여주기 위해서다. 거기에 더해, 자료들에 따르면 ***은 탈주자들로부터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도 두려워한다.

자료들에 따르면 직업이 낮은 탈주자들 - 징집되지 않거나 징집되지 않았던 사람들 포함 - 마저도 ***에 의한 박해의 위험을 받는다라고 한다. 자료들은 그 위험의 정도에 대해서는 약간씩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고위 직급 탈주자들에 비해, 직급이 낮은 탈주자

나) 확인된 원고의 *** 유엔난민기구 난민신청 사실과 신원

한편, ① 난민신청자는 *** 유엔난민기구에서도 난민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던 점, ② 핸드폰을 통해 이미 난민신청사 당시 출생증명서 등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원도 사실상 확인된 것이나 다툼 없습니니다(신원에 대한 공권적 확인이 필요할 경우 국가가 비혜의 주체가 아닌 점을 고려하여 *** 대사관(중국, 일본) 등에 대한 신원 확인도 비록 장기간이 걸리거나 회신이 늦을 수 있으나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소송진행 관련 요청사항

원고는 이미 ① 장기간 열악한 구금상태에서, ② 매일 똑같이 지금되는 버거와 물라 등의 식사, ③ 공식적으로 사위시간 등이 제한되고 세면도구도 지급되지 않는 실정 ④ 많은 담요하나만 지급되어 수면케하는 실정 등으로 인해 송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간혀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기상태가 위험한 구금상태까지 고려하면, 소송기간이 지연될수록 이 같은 위법상태가 장기화될 것이 예상되고, 이미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피고로서도 신속히 응답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하니, 가능하면 즉시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주셔서 원고가 난민신청자의 지위를 부여받고 정식 심사를 받고, 송환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 **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지방법원 귀중

2) 제***호 처분사유의 부존재

한편, 명백히 처분사유를 현재 다 알수는 없으나, 난민신청자가 '위조 여권'을 훼손하여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음을 근거로 제2호 처분사유로 포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드나, 제2호에는 결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 '거짓서류의 제출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불해당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입국심사를 받은 적도, 난민신청사사 과정에서도 거짓서류 등을 적극적으로 당국에 행사하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스스로 자인하였듯, 브로커가 만들어 준 위조된 여권을 훼손하였을 뿐입니다.

만약 원고가 만약 '진정한 여권'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위조여권'을 오히려 당국에 행사하기 전에 훼손한 것은 출입국심사와 비행경로의 파악 등에 저해가 될 여지가 있어, 결코 장려될 수는 없는 사정임은 분명하나, ① 설명 위조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벌을 부과하지 않고 난민신청사사에 이를 고치지 않을 것을 명하여 출입국심사와 난민보호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법률로서 제2호의 사실상의 근거가 된 난민협약 제31조154a를 고려하면, ② 심사의 책임이 있는 난민심사관을 오인해 빠뜨리기 위해 기만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거나 한 일이 전혀 없이, 심사 전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증거가치가 기재내용만으로 전혀 없는 위조된 여권을 훼손한 것 자체는 난민신청사사에 결코 고려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원고는, ① 브로커로부터 위조된 여권을 건네받은 사실, ② 그 여권으로 ***에서 탑승한 사실 등 일체의 사실을 스스로 자진해서 설명하고 있어서 결코 사실을 은폐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두려움으로 인해 위조여권을 훼손한 행위에 관한 그같은 경위는 원고의 항공기 탐승 이력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있고, 설명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매우 보수적으로 하게 되더라도 이미 자진해서 그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단서 조항에도 명백히 포섭되므로, 결코 위 처분사유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154) 난민지위제한이란 협의 제31조 제1항, 제44항은 이 협의 제1조와 같은 의미로 그들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 받는 영역에서 직접 탈출해 온 난민에게, 그들이 불법적으로 자국 영역 내에 귀국하고 또는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방을 관여하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난민이 자해없이 국가관에 출두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입국 또는 체재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별첨6 보호일시해제청구 의견서

[별지 제118호서식]

보호일시해제청구서 APPLICATION FOR PERMISSION OF TEMPORARY RELEASE			
1. 성명 Name in Full	***	성별 Sex	M
2.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	3. 국적 Nationality	***
4. 대한민국내 주소 Address in Korea	***		
5. 직업 Occupation	무직		
보호명령서 Detention Order	명령서발부일자 Date of Issue	명령서번호 No. of the Order	
청구사유 Reason for application	***		
붙임서류 Documents Attached	1. 의견서, 2. 탄원서 등		
위 사항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hereby apply for permission of temporary release of the above-mentioned person.			
신청인 Applicant	국적 Nationality	대한민국	
성명 Name in Full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		
주소 Address in Korea	***		
관계 Relationship	변호인		
	***년 **월 **일 Date	***년 **월 **일 Date	***일 **일 Date
	신청인 서명 Signature of Applicant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출장소			
To : Chief, Incheon Immigration Office			
공용란 Remarks	공용란 Remarks	결과 Result	가·부 Remarks

53256-17111 원
59.1.2.2 용인
2109*297#
인용용(대독) 706#

<붙임1>

의견서

1. 이 사건 피보호자의 보호경위

가. 난민신청과 관계된 경위사실 - 제도를 병용하는 외국인인 아닌 진정한 난민임
***, *** 경부터 현재까지 약 ***개월 동안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피보호자 ***(*
** 국적, ***세 ***, ***, ***, ***, ***, ***, ***, ***)의 개종과 '적극적인 진도
활동', *** 대사관의 지득을 이유로 박해의 위험이 명백한 <체재 중 난민>입니다.

특히, 국가정황정보상 지금 현재 ***에서의 개종자*에 대한 박해의 위험은 이미 명확하
게 잘 알려져 있으므로, 현재 국내의 난민인정절차에서는 국가정황정보 자체보다는, '개종
의 진실성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실제로 개종을 원인으로 체
재중 난민의 지위를 주장하는 많은 ***인 국제 난민신청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어서 일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 <개종의 진정성과 이미 ***들을 개종시킨 열정적인 신앙활동>에 관하여는
1) <***의 본 변호인은, 실제 미등록체류가 10년 정도에 이르는 ***인 개종자 난민에 대
한 승소확정판결도 받아 본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개종을 이유로 한 난민지위신
청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들도 많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개종자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2) <위 ***의 출석교회인 '***교회'는 '***교회'와 함께
***인 ***사역자가 실제로 활동하고 있고 통상적인 ***들이 외국인인 왔다고 반기며 세례를
신속히 하는 것과 달리, 개종증서만을 받아 난민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랜기간 동안 **
*공부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그 신앙활동을 검증한 후에야 세례를 주고 교인으로 받아들여
는 예외적인 곳이고, ***인 개종자가 난민신청을 한 후 경계 될 어려움들을 잘 이해하고 있
어서 난민신청을 권유하지도 않는 곳이며, 3) 실제 ***외국인보호소에서 <변호인의 재변준
거의 함께 실제로 인터뷰를 가진 결과 개종사실은 분명하고, 4) <***외국인보호소의 난민
심사관>이 실시한 면접조사 후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사유도 개종 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은 하지 않고, 개종은 전제하되 박해의 위험이 아마 없을 것이라는 가정적 평가를

2.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피보호자의 범법사실·연령·품성·조서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패턴
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의2)

보호일시해제업무처리규정은 위 사유에 의거하되, 결정권자에 따라 일반해제 및 특별해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 송환될 경우 비핵의 위험이 존재함(결코 남용적 난민신청자가 아님)

이 사건 난민신청자는 통상적 난민소송 경과와 달리 모든 증거를 고려해볼 때, 결코 남용적인 난민신청자로서 계도를 남용하는 외국인으로서의 엄정한 범집행의 철의를 끝장 못아야할 대상이 전혀 아니며, 이는 많은 난민소송을 공익적 목적에서 대리하고 한국의 난민제도의 운영과정들을 살펴보고 있는 신청대리인으로서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나. 1호 및 제5호 해당성

는 이미 ***개월 이상 보호되어 있어서, 앞에서 진술하였듯 보호명령의 적법한 한계를 사실상 일탈한 여지가 높은 형태로 장기보호된 사람으로서 그 자체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호의 한계 여부에 대한 적정적 판단이 실무적으로 어려울 수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주문인 ‘심신의 회복을 위해 허가한다’라는 주문으로 일시해제를 허가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입국체류’ 등의 소송과 달리 ***는 이의 신청 등 후속절차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거의 희망이 없는 것이기에 앞으로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본국에서 증거를 수집해야하고 다투어야 할 필요(가 진정한 난민일 결론을 행사하며 생사를 결정할 마지막 기회인 항소심을 정상적으로 대비할 수 없습니까)가 크므로 ‘후속 난민신청절차의 대비’ 역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2호 및 3호의 해당성

불법체류사실만으로 보호된 것으로서, ***가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의 위해를 가할 여지는 전혀 없으며(2호) ***보호소에 확인할 수 있지만, ‘담당’들에 의하면 배자

라. 현행 실무례 - 구체적 판단

현행 실무례는, 남용적인 난민신청자들의 집행회피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은 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보호를 해제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보호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거나, 질병 등의 문제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보호를 계속함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보호일시해제를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허가하고 있고,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일선 실무기관의 행정상 필요는 일용 수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 소결

결국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기간은 즉시 집행이 가능하여 집행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사실상 제한되고,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1년 이상을 상정하기 어렵고, 남용적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제재적 의미 및 실질적인 퇴거집행의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일정한 한계를 설정해야 하고, 현행법에 따르면에도 ‘남용적 난민임이 명백하지 않은 한’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위법하고, 결국 위법함이 확인되면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한편입니다.

제도의 취지상 난민신청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퇴거집행’이 불가능한데, 퇴거집행의 확보를 위한 보호명목으로 계속해서 장기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난민신청자들의 보호가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난민일 가능성이 있고, 남용적 난민신청자가 아니며, 장기보호된 난민들의 경우’ 구체적 판단에 따라 보호가 해제되어야 하고 사안에 따라 일시해제의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이 사건 난민신청자 - * - 에 대한 일반해제의 해당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의2는 보호일시해제 심사기준으로 다음의 사유를 들고 있고,

1. 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타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드는 매우 모범적인 성행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벌준수 자세에 따라 마지막 기회인 난민소송 항소심을 대비하고, 벌준수를 위한 모범적인 성행을 고려하여 ***개월 동안의 장기보호(이차)도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1년 이상 퇴거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에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행이 좋지 않고, 단식등으로 인한 경우는 일시해제가 허가되고,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경우는 일시해제가 허가되지 않는다면 부담할 것이입니다.

라. 4호의 해당성

도주가능성의 경우 모든 보호외국인의 경우 다 도주가능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보통적이지 않아서 진실로 이후 난민신청절차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난민신청자인 이 사건 ***와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 절차 등 잔여 난민신청절차를 수행하는 동안에 갑자기 사무소의 연락을 두절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범죄사실을 숨기는 경우'는 동안에 소심 및 기타 소송진행과정 중에 갑자기 도주를 선택해야 할 아무런 유인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위험적일 여지가 있는' 현재의 난민신청자 장기보호 문제를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보호일시해제요건도 해소해야 하는 행정적 필요와 보호일시해제제도의 존재의미가 없게 됩니다. 결국 출석에 대한 담보는, 출석을 담보할 보증금 및 매1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기타 일시해제에 대한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음

가. 보증금 납부가능성

한편 ***의 경우 당연하게도, 현재 보호외국인으로서 자력이 많지는 않으나, 자신의 소지한 금액 및 주변의 도움을 통해 일정한 이상의 보증금의 납부가 가능합니다. 출석을 담보하는 것이 보증금만은 아니지만, 최소액을 상회하며, 이를 포기하면서까지의 도주를 상상키 어려운 일정 정도의 보증금은 납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 출석 ***에서의 신앙생활 및 ***외국인보호소에서 지근거리에 있는 거주지

***의 경우 출석 ***에서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미 400여 명 이상의 ***성

도들이 그의 신앙과 활동들을 보증하며 돕고 있듯이(이의신청 사건 제출 타임서) 출석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단속되어 보호되었던 ***의 거주지 역시 ***보호소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며, 실제 로 보호된 이후에도 그곳에 계속해서 원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곳에 거주할 수밖에 없으며, 보호일시해제 이후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석 등의 행태의 조건으로도 출석담보가 가능하며, 보호일시해제를 취소해야 할 예외적인 상황이 생길 경우 거주지 또는 ***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므로 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석협조가 쉽게 가능합니다.

4. 결어

이상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이 사건 난민신청자 - *** - 에게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개월 이상 보호가 된 외국인으로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귀 행정청의 시혜적인 조치를 구하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의 2016년 결정, 이미 제류된 개정안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일시해제 제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코 남용적이지 않은 이 사건 난민신청자의 사정을 살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잔여 난민신청절차를 분인이 직접 준비하며, 장기보호로 인한 심신의 피해를 잠시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

난민신청자의 대리인(변호인)

변호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중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 발행인** 회장 이 찬 희
- 발행일** 2018. 10.
- 발행처** 서울지방변호사회
06595,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
(서초동, 변호사회관)
- 전 화** 02) 6200-6200
- 홈페이지** <https://www.seoulbar.or.kr>
- 인쇄처** 경성문화사 (02-786-2999)

* 비매품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서울지방변호사회
Seoul Bar Association